

2017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II

2017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 8.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에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18. 8. 8.)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총수입 430.6조원, 총지출 406.6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4.0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18.5조원 적자를 기록하여 2017년 추정 전망보다 각각 11.0조원, 10.4조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의무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 경직성이 심화되고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결산 심사 과정을 지원하고자 「2017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16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결산 분석 종합」 등 총 2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12대 분야, 재정건전성 등 14건의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거시적인 분석을 하는 한편, 일자리정책,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47건의 주요 재정 정책 사업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부처 소관 개별 사업별로 집행 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의 집행결과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16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수록하였으며,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해 성인지 결산서를 양성평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양성평등 제고효과를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분석 보고서가 국회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 춘 순

차 례

CONTENTS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I. 결산 개요 / 1

- 1. 현 황 1
- 2.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9
- 3. 2017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1

II. 주요 현안 분석 / 13

- 1. 재외 한국문화원의 인력 운영 부적정 13
 - 1-1. 재외 한국문화원장 개방형 직위 운영 원칙 준수 필요 15
 - 1-2. 재외문화원의 문화홍보 전문인력 비율 저조 19

III. 개별 사업 분석 / 22

- 1. 완성보증계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22
- 2. 단막극 제작역량 및 제작지원에 있어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25
- 3.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사업 추진실적 부진 27
- 4.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조속한 결정 필요 29
- 5.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의 집행실적 제고 필요 31

CONTENTS

6. 관광기업 육성펀드 정부출자의 효율성 제고 필요	35
7. 체육문화예술사업 지원 시 지원사업 내용 및 지원범위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	38
8.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사업 추진실적 제고 필요	42
9. 태권도 프리미엄 산업생태계 조성의 구체적 사업내용 정비 필요	45
10. 스포노믹스 육성 및 스포츠산업펀드 조성 관련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필요	49
11. 일반수용비를 활용한 연례적·우회적 업무추진비 집행	54
12. 국회 감액 사업(대통령순방 프레스센터 설치·운영)의 증액집행 등	58
13. 국회 감액 업무추진비의 증액집행	62
14. 관서운영경비 집행 시 목적 외 사용	65
15. 총액인건비 지침을 준수한 운영경비 편성·집행 필요	70
16. 우회적으로 기본경비 증액 집행 부적정	73
17. 국회에서 감액된 업무추진비의 내역변경 등을 통한 증액 집행 부적정	76
18. 정동극장 공익사업 축소 및 사업수입실적 악화	78
19.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이월 규정 준수 필요	83
20.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간 문화상품 개발 기능조정 효과 저조 문제	89
21. 국제방송교류재단 경영악화 및 관리·감독 이원화 문제 분석	96
21-1. 국제방송교류재단의 경영악화 대처 필요	96
21-2.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주관부처-예산지원부처간 불일치 구조 해소 필요	102
22. 세종학당재단의 회계연도 내 보조금 집행 제고 및 이월 최소화 필요	106
23. 예술의전당 실적부진 대책 마련 필요	110

CONTENTS

24. 국악방송 지원 사업 문제점	116
24-1. 국악방송 전국화 사업의 한계 분석	116
24-2. 국악방송의 연말 자산취득 집행 부적정	119
25. 태권도진흥재단의 상징지구 조성사업 집행 부진	124
26. 한국관광공사의 코리아둘레길 조성사업의 추진 방식 개선 필요	129
27. 한국관광공사의 지침에 부합하는 관광안내소 안내원 피복비 집행 필요	136
28. 한국관광공사의 고유사업과 관련성 낮은 인터넷전문은행 투자사업 검토 필요 ..	139
29. 한국관광공사의 장기보유 재고자산의 매각과 투자부동산 수익률 개선 노력 필요 ..	144
30. 한국관광공사의 지분투자사업의 수익률 저조	149
31. 한국관광공사의 직원콘도사용료를 지급수수료에서 복리후생비로 계정재분류 검토 필요 ..	153
32.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관리구역비 및 임차료 집행 부적정	155
33. 한국문학번역원 수행 사업의 이월 최소화 필요	160
34.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업무 수행 부적정	166
3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무기계약직 인건비 편성 부적정	170
3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 개선 필요	174
3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보조금 집행 처리 미흡	179
38.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여유자금운용규모의 과다계상 개선 필요 ..	185
39.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한시적 K-Arts디지털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 추진 미흡 ..	192
4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아시아문화원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등 기관 운영 체계 개선 필요 ..	195
41.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사업의 지자체 사업 간 연계 필요	202
42.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관서운영경비 집행 부적정	206
43.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결산잉여금 과다	210
44.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수익계약 체결 적정성 검토	216

CONTENTS

45. 그랜드코리아레저(주)의 여유자금 운용 방안 마련 필요	220
46.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인문독서예술캠프 추진 필요성 검토	227

[문화재청]

I. 결산 개요 / 235

1. 현 황	235
2.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42
3. 2017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43

II. 개별 사업 분석 / 244

1. 입장료 수입의 안정적 징수기반 마련 필요	244
2.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방식 개선 필요	247
3. 국외문화재 환수실적 제고노력 필요	252
4.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사업의 추진실적 저조	256
5. 문화유산 조사연구사업 시험연구비 예산집행 부적절	258
6.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의 적절성 제고 필요	261
7. 한국문화재재단 수탁시설 관리 예산 집행 및 수지차 예산편성 적정성 검토	264
7-1. 수탁시설 공연사업에서 시설관리 또는 보수 성격의 사업을 집행한 문제	264
7-2. 수탁시설의 수입지출을 수지차 예산에 포함한 것의 부적정성 개선 필요	267



문화체육관광부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7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562억 8,000만원(5.8%)이 증가한 2조 8,616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5,404억 700만원(23.3%)이 증가하였다.

[2017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결산(A)	2017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80,349	60,157	60,157	102,624	42,467	22,275
기금	2,240,860	2,645,179	2,645,179	2,758,992	113,813	518,132
합계	2,321,209	2,705,336	2,705,336	2,861,616	156,280	540,40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7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831억 4,500만원(1.4%)이 감소한 5조 7,575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852억 3,500만원(3.3%)이 증가하였다.

[2017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결산(A)	2017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2,801,702	2,905,508	2,954,931	2,945,174	△9,757	143,472
기금	2,770,588	2,791,594	2,885,768	2,812,351	△73,417	41,763
합계	5,572,290	5,697,103	5,840,670	5,757,525	△83,145	185,23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세입·세출 결산

2017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311억 1,400만원이며, 2,024억 6,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9.5%인 1,811억 3,900만원을 수납하고 204억 8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9억 1,9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17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49,080	49,080	49,080	76,211	63,900	11,393	919	83.8
지역발전특별회계	10,436	10,436	10,436	39,400	30,472	8,928	0	77.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특별회계	71,598	71,598	71,598	86,855	86,768	87	0	99.9
합계	131,114	131,114	131,114	202,466	181,139	20,408	919	89.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7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조 1,579억 7,000만원이며, 이 중 95.6%인 3조 203억 900만원을 지출하고 507억 6,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68억 9,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7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087,636	2,137,059	2,169,300	2,053,268	49,971	66,062	94.7
지역발전특별회계	821,417	821,417	908,957	889,667	0	19,291	97.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특별회계	71,491	71,597	79,713	77,374	798	1,540	97.1
합계	2,980,543	3,030,073	3,157,970	3,020,309	50,769	86,892	95.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다. 기금 결산

2017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4조 43억 7,900만원이며, 4조 4,814억 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8%인 4조 4,723억 2,500만원을 수납하고 90억 8,0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17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문화예술진흥기금	540,207	540,207	540,207	532,127	532,127	0	0	100.0
영화발전기금	327,374	327,374	327,374	317,695	311,602	6,093	0	98.1
지역신문발전기금	9,696	9,696	9,696	10,103	10,103	0	0	100.0
언론진흥기금	35,736	35,736	35,736	26,511	26,471	40	0	99.8
관광진흥개발기금	1,423,431	1,493,556	1,493,556	1,590,096	1,588,453	1,643	0	99.9
국민체육진흥기금	1,597,810	1,597,810	1,597,810	2,004,873	2,003,569	1,304	0	99.9
합계	3,934,254	4,004,379	4,004,379	4,481,405	4,472,325	9,080	0	99.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7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액은 4조 43억 7,900만원이며, 이 중 111.5%인 4조 4,723억 2,500만원을 지출하고 60억 7,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51억 8,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7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문화예술진흥기금	540,207	540,207	540,748	532,127	744	7,877	98.4
영화발전기금	327,374	327,374	328,018	311,602	1,019	3,561	95.0
지역신문발전기금	9,696	9,696	9,696	10,103	0	415	104.2
언론진흥기금	35,736	35,736	35,736	26,471	0	1,009	74.1
관광진흥개발기금	1,423,431	1,493,556	1,494,803	1,588,453	2,179	13,371	106.3
국민체육진흥기금	1,597,810	1,597,810	1,602,165	2,003,569	2,129	48,955	125.1
합계	3,934,254	4,004,379	4,011,166	4,472,325	6,072	75,189	111.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라. 재무 결산

2017회계연도 말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산은 11조 5,597억 7,100만원, 부채는 9,168억 5,800만원으로 순자산은 10조 6,429억 1,3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2조 1,651억 5,900만원, 투자자산 3조 6,643억 4,300만원, 일반유형자산 5조 6,410억 2,900만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전기 대비 5,969억 700만원 (5.4%) 증가한 것으로 된다. 이는 투자자산 5,565억 800만원, 일반유형자산 752억 3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215억 200만원, 정기차입부채 8,335억 9,7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538억 3,700만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전기 대비 1,981억 5,000만원(27.6%) 증가한 것이다. 이는 장기차입부채 2,189억 3,800만원, 장기충당부채 8억 1,6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17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11,559,771	10,962,864	596,907	5.4
Ⅰ. 유동자산	2,165,159	2,187,868	△22,709	△1.0
Ⅱ. 투자자산	3,664,343	3,107,835	556,508	17.9
Ⅲ. 일반유형자산	5,641,029	5,565,826	75,203	1.4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
Ⅴ. 무형자산	79,123	90,743	△11,620	△12.8
Ⅵ. 기타비유동자산	10,117	10,593	△476	△4.5
부 채	916,858	718,708	198,150	27.6
Ⅰ. 유동부채	21,502	42,913	△21,411	△49.9
Ⅱ. 장기차입부채	833,597	614,659	218,938	35.6
Ⅲ. 장기충당부채	7,923	7,107	816	11.5
Ⅳ. 기타비유동부채	53,837	54,029	△192	△0.4
순 자 산	10,642,913	10,244,156	398,757	3.9
Ⅰ. 기본순자산	5,585,840	5,584,645	1,195	0.02
Ⅱ. 적립금 및 잉여금	3,163,140	2,830,619	332,521	11.8
Ⅲ. 순자산 조정	1,893,932	1,828,891	65,041	3.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2조 5,926억 5,4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4조 7,809억 500만원, 관리운영비 3,248억 2,100만원, 비배분비용 629억 5,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2,082억 7,400만원, 비배분수익 1,695억 5,300만원, 비교환수익 2조 1,982억 200만원 등 2조 5,760억 2,9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765억 5,500만원(3.8%) 증가한 4조 7,908억 5,500만원이며, 이는 비배분수익이 전년도 대비 1,134억 6,600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34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관광진흥기반확충 프로그램(6,257억 4,800만원)과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프로그램(5,771억 2,5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2,104억 2,400만원과 경비 1,143억 9,7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이자비용 142억 100만원과 기타비용 435억 2,1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4,572,631	4,497,815	74,816	1.7
가. 프로그램 총원가	4,780,905	4,571,559	209,346	4.6
나. 프로그램 수익	208,274	73,744	134,530	182.4
II. 관리운영비	324,821	309,284	15,537	5.0
III. 비배분비용	62,956	90,220	△27,264	△30.2
IV. 비배분수익	169,553	283,019	△113,466	△40.1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4,790,855	4,614,300	176,555	3.8
VI. 비교환수익 등	2,198,202	2,041,006	157,196	7.7
VII. 재정운영결과(V - VI)	2,592,654	2,573,294	19,360	0.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도 기초순자산은 10조 2441억 5,6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0조 6,429억 1,300만원으로 기초 대비 3,987억 5,700만원(3.9%) 증가하였는데, 이는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193억 6,000만원 증가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2,865억 4,900만원으로 감소하였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1,301억 9,5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7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3조 1,076억 6,7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1,812억 9,8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136억 1,000만원, 자산재평가이익 514억 3,1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17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10,244,156	9,669,686	574,470	5.9
II. 재정운영결과	2,592,654	2,573,294	19,360	0.8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2,926,369	2,796,174	130,195	4.7
IV. 조정항목	65,041	351,590	△286,549	△81.5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10,642,913	10,244,156	398,757	3.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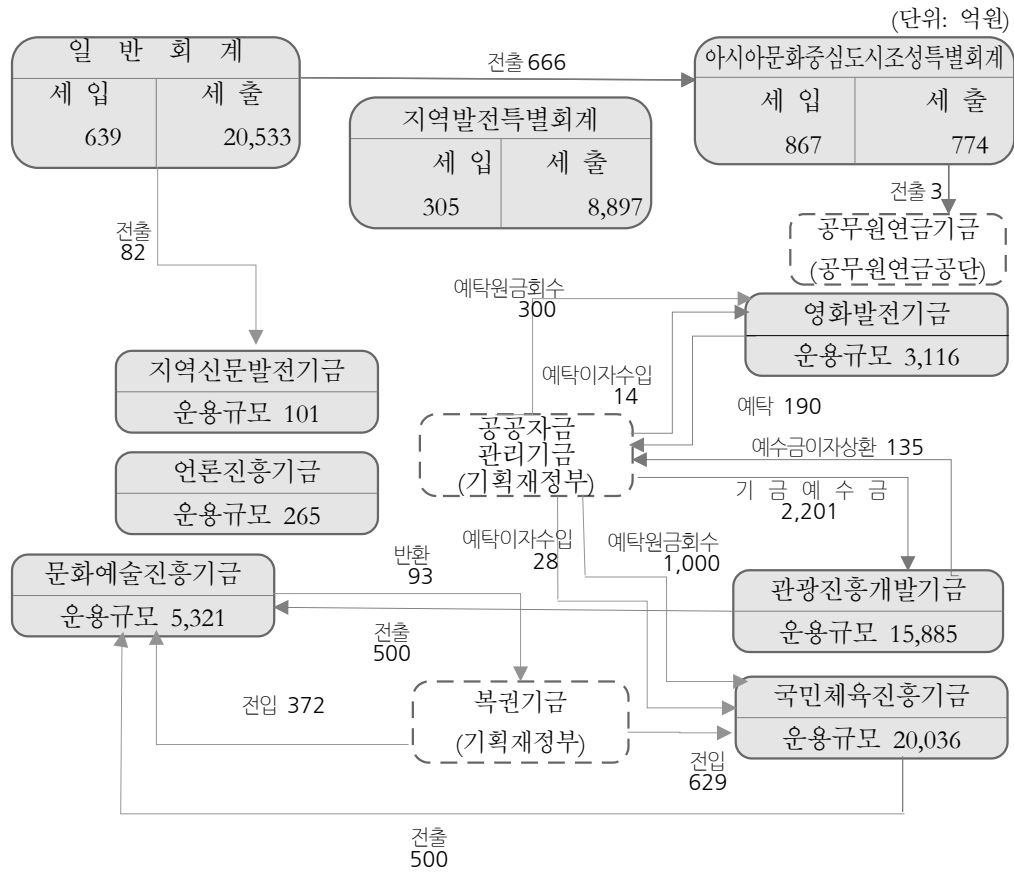
마. 재정 구조

2017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의 회계·기금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로 666억원 전출되었고,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82억원 전출되었다.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부터 500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500억원, 복권기금으로부터 372억원 전입 받고 복권기금으로 93억원을 반환하였다. 영화발전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190억원을 예탁하고 예탁이자수입 14억원을 받았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기금예수금 2,201억원을 받아 예수금이자 135억원을 상환하였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 1,000억원을 회수하고 28억원의 예탁이자수입을 받았다.

[2017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주: 1. 총계기준
2. 결산액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사업, ②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 ③ 스포츠산업 융자 사업 등이 있다.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사업은 융합콘텐츠분야 출자 270억원이 감액(800억원→530억원)되었고,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은 문화창조벤처단지 구축과 문화창조아카데미 조성운영 및 콘텐츠 개발 등에서 780억원이 감액(1,278억원→499억원)되었다. 스포츠산업 융자사업은 융자실적 저조로 인하여 100억원이 감액(484억원→384억원)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평창문화올림픽지원 사업, ② 동학농민혁명정신선양 사업 등이 있다.

평창문화올림픽지원 사업은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등을 위하여 97억원이 증액(291억원→387억원)되었고, 동학농민혁명정신선양 사업은 동학기념공원조성을 위하여 25억원이 증액(9억 2,900만원→34억 2,900만원)되었다.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① 문화창조융합벨트구축사업, ② 뉴미디어진흥사업 등이 있다. 문화창조융합벨트구축사업은 “문화창조융합벨트의 향후 추진 또는 대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이와 연계하여 한국관광공사 구 사옥의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뉴미디어진흥사업은 “뉴스트러스트위원회 구성 시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 ① 국제체육교류협력 사업, ② 평창문화올림픽지원 사업 등이 있다.

국제체육교류협력사업은 평창동계올림픽 국내외 홍보를 위하여 230억원이 증액되었다. 평창문화올림픽지원사업의 경우 평창동계올림픽 붐업을 위하여 153억원이 증액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① 문화융성 체감확산을 통한 삶의 질 제고, ② 융·복합 문화콘텐츠를 통한 창조산업 고도화, ③ 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과 고품격 한국관광 실현, ④ 체육 저변확대 및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2017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7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문화콘텐츠활성화사업의 완성보증계정 출연사업은 보증공급액이 방송/드라마, 공연 등 특정 장르에 집중 지원되었으나 이들 장르의 보증사고율이 급증하고 있어, 보증대상 장르의 다변화와 더불어 제작자의 신용평가 및 콘텐츠평가를 개선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송영상콘텐츠제작역량 강화사업에서 추진하는 단막극 제작역량 및 제작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지연으로 2017년 예산인 본편제작비와 이의 홍보 마케팅비가 집행되지 못하고 있어 「국가재정법」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바, 사업진도 관리와 더불어 교부된 민간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집행관리가 요구된다.

셋째,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사업은 출자금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펀드 결성이 지연되어 기업투자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출자금 규모의 적절성 검토와 더불어 예비창업단계의 관광기업과 관광벤처기업을 위한 투지실적 제고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추진된 스포노믹스 육성사업은 사전계획 미흡으로 국비교부가 지연됨으로써 사업추진이 지체되고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있는바, 신규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으로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태권도 진흥사업에서 2017년 신규로 추진된 태권도 프리미엄 산업생태계 조성사업은 사전계획 부실로 사업비 대부분이 불용되어 구체적인 사업내용의 정비가 필요하고, 일부 사업비는 예산이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II

주요 현안 분석

1

재외 한국문화원의 인력 운영 부적정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¹⁾은 한국문화를 해외에 소개하고 국제문화교류 증진 및 문화·관광·체육 등 콘텐츠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외 한국문화원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액 864억 6,900만원 중 781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7회계연도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재외한국문화원 운영	86,469	86,469	3,910	△514	89,865	78,113	7,914	3,83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재외 한국문화원(이하 “재외문화원”이라 한다)은 2018년 4월 기준으로 아시아·태평양 8개국 11개소, 구주 11개국 11개소, 미주 5개국 7개소, 아프리카·중동 3개국 3개소 등 총 27개국 32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재외문화원 현황(2018년 4월 기준)]

아시아·태평양 (8개국 11개소)	구 주 (11개국 11개소)	미 주 (5개국 7개소)	아프리카·중동 (3개국 3개소)
○ 일 본 - 동 경 - 오사카	○ 영 국 ○ 프랑스 ○ 독 일 ○ 러시아	○ 미 국 - 워싱턴 - 뉴 욕 - L A	○ 이집트 ○ 나이지리아 ○ UAE

김려진 예산분석관(wls423@assembly.go.kr, 788-4638)

1) 코드명: 일반회계 4331-300

아시아·태평양 (8개국 11개소)	구 주 (11개국 11개소)	미 주 (5개국 7개소)	아프리카·중동 (3개국 3개소)
○ 중 국 - 북 경 - 상 해 - 홍 콩 ○ 태 국 ○ 인 도 ○ 베트남 ○ 인도네시아 ○ 필리핀 ○ 호주	○ 스페인 ○ 폴란드 ○ 벨기에 ○ 헝가리 ○ 카자흐스탄 ○ 터 키 ○ 이탈리아	○ 아르헨티나 ○ 멕시코 ○ 브라질 ○ 캐나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1-1. 재외 한국문화원장 개방형 직위 운영 원칙 준수 필요

가. 현 황

재외문화원은 총 32개소 중 일본(동경), 중국(북경),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뉴욕, LA) 등 8개소의 재외문화원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24개소는 직위공모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다. 32개소 중 원장 원소속기관이 문체부인 경우는 21개소로 65.6%이다.

[재외문화원장 직위 지정·운영 현황]

(단위: 명, %)

연번	재외문화원	채용 형태	원장 원소속기관	연번	재외문화원	채용 형태	원장 원소속기관
1	일본(동경) 문화원	개방형	문체부	17	아르헨티나	공모형	문체부
2	중국(북경) 문화원	개방형	문체부	18	인도네시아	공모형	행안부
3	영국 문화원	개방형	문체부	19	터키	공모형	산자부
4	프랑스 문화원	개방형	민간	20	멕시코	공모형	국조실
5	독일 문화원	개방형	민간	21	필리핀	공모형	행복청
6	러시아 문화원	개방형	문체부	22	벨기에	공모형	문체부
7	미국(뉴욕) 문화원	개방형	민간	23	상파울루	공모형	국조실
8	미국(LA) 문화원	개방형	문체부	24	스페인	공모형	문체부
9	태국	공모형	문체부	25	헝가리	공모형	문체부
10	카자흐스탄 문화원	공모형	행안부	26	이집트	공모형	국조실
11	일본(오사카) 문화원	공모형	문체부	27	폴란드	공모형	문체부
12	호주(시드니) 문화원	공모형	문체부	28	인도	공모형	문체부
13	미국(워싱턴) 문화원	공모형	문체부	29	UAE	공모형	문체부
14	나이지리아 문화원	공모형	문체부	30	캐나다	공모형	문체부
15	베트남 문화원	공모형	문체부	31	이탈리아	공모형	문체부
16	중국(상해)	공모형	특허청	32	중국(홍콩)	공모형	문체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재외 한국문화원장을 원칙적으로 개방형직위로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²⁾에 따르면 일반적인 주재관의 선발·임용(직위공모 방식)³⁾과 달리, 재외문화원장의 경우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06년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개정⁴⁾에 따라 도입·시행된 것으로, 재외문화원장의 경우 문화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직무전문성을 높이고 정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러나 개방형 직위 지정·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문화원장 운영 원칙과 달리, 2018년 5월 현재 32개 재외문화원장 중 개방형직위로 지정·운영하는 직위는 8개(2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⁵⁾

또한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8개 직위의 경우에도 2018년 현재 민간전문가가 문화원장인 경우는 프랑스, 독일, 미국(뉴욕) 3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5개소의 원장

2)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8조(개방형 직위의 지정·운영 등) 외교부장관은 문화원장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제3조(주재관의 선발·임용) ①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외교통상 업무 및 영사 업무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부 각 부·처·청·위원회 등(이하 "관계부처"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의 업무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 내용 및 직무수행 요건 등을 정하여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 중 주재관을 직위공모 방식에 따라 선발한다.

4) 2006.7.1. 시행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대통령령 제19603호, 2006.6.30., 전부개정] 개정이유

바. 개방형직위의 지정·운영 등(영 제18조)

(1) 재외공관 문화원장 직위에 공직 내부뿐만 아니라 문화 분야의 민간전문가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외교통상부장관은 문화원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국정홍보분야 주재관의 심사선발과 관련된 사항은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함.
(3) 문화원장 직위를 공직내외에 개방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높이고 정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5) 32개 재외문화원장 중 과장급 직위가 24개, 국장급 직위가 9개이다. 국장급 직위 중 8개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장급 직위 1개(워싱턴)는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있지 않고, 과장급 직위(24개) 중에는 개방형직위로 운영하는 사례가 없다.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8조는 개정 당시에는 국장급 문화원장만 있었으므로 동 규정을 국장급 문화원장을 개방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해석하여, 과장급 문화원장의 경우 개방형직위가 아닌 공모직위로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러한 해석은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의 당시 개정이유나 해당 조문으로는 유추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은 원소속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인 공무원으로, 문화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지정한 취지에 부합하게 개방형 직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재외문화원장 개방형직위 지정 및 운영현황]

구분(임용방식)	직위수	문화원	원장 원소속기관
개방형 직위	8개(25%)	일본(동경), 중국(북경), 영국, 러시아, 미국(LA)	문화체육관광부
		프랑스, 독일, 미국(뉴욕)	민간
직위공모	24개(75%)		
합 계	32개(1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8개 개방형직위에 대하여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2006년부터 현재까지 현황을 살펴보면, 총 26명의 문화원장 중 9명을 제외한 17명(65.4%)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원소속기관인 공무원이었다. 특히, 일본(동경), 영국, 미국(LA)은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후 한 번도 민간전문가가 임용된 적이 없었다.⁶⁾

[역대(06~18년) 재외문화원장 개방형직위 운용 현황]

(단위: 명)

	일본 (동경)	중국 (북경)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 (뉴욕)	미국 (LA)	계
문체부	3	2	3	1	2	2	1	3	17
민간	0	1	0	3	1	2	2	0	9

주: 2018년 5월 현재 일본(동경), 영국, 미국(LA) 및 중국(북경), 러시아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원소속기관) 공무원이 문화원장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6)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전문가 유치 관련해서 현재 8개 개방형 직위 중 2개 직위는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운영상 전문성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직위에 대해서는 외교부 및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민간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한국문화의 글로벌 확산 전략(2018~2022)」에서 한류 확산을 위해 재외문화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문화원장의 역할 강화 및 직무전문성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외문화원장 직위 개방을 원칙으로 하여 민간전문가 활용을 통해 직무전문성 및 정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취지에 부합하도록 외교부와 협의하여 재외문화원장 인력 운영 방법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1-2. 재외문화원의 문화홍보 전문인력 비율 저조

가. 현 황

재외문화원의 인력구조를 보면, 문화원별로 원장(1인) 및 행정직원을 포함하여 7~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2개 문화원의 총정원은 257명이며 현원은 이를 일부 초과한 272명이다.

[재외문화원 인력 현황]

(단위: 명)

연번	기관명	정원	현원	연번	기관명	정원	현원
1	LA	9	10	17	오사카	8	8
2	UAE	7	7	18	워싱턴	9	9
3	나이지리아	7	9	19	이집트	7	7
4	뉴욕	9	10	20	이탈리아	7	7
5	독일	9	9	21	인도	8	11
6	동경	9	12	22	인도네시아	8	9
7	러시아	9	9	23	카자흐스탄	7	7
8	멕시코	8	8	24	캐나다	7	7
9	베트남	8	9	25	태국	7	8
10	벨기에	7	7	26	터키	8	8
11	북경	9	12	27	폴란드	8	8
12	브라질	7	7	28	프랑스	9	10
13	상해	9	10	29	필리핀	8	8
14	스페인	8	7	30	헝가리	8	8
15	아르헨티나	8	7	31	호주	9	8
16	영국	9	9	32	홍콩	7	7
합 계						257	272

주: 2017년 12월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재외문화원에 공연·전시 업무 담당자가 문화원마다 1명씩 있으나 실제 공연·전시 등을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므로, 향후 행정인력 채용 시 공연·전시 전문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재외문화원은 한국문화의 해외 홍보, 해외 문화 홍보 정책, 문화예술 활동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⁷⁾

그러나 현재 재외문화원은 정원 대비 현원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전시·공연 등을 기획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문화원별로 1명 수준으로 문화사업 기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재외문화원 행정인력 중 공연전시 관련 전문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2017	
	전체 개소	개소별
행정인력 현황(A)	261	8.7
공연전시 관련 전문인력(B)	31	1
전문인력 비율(B/A)	12%	

주: 2018년 개관한 홍콩문화원 제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재외문화원의 행정직원⁸⁾ 운영현황을 보면 일반적인 행정업무나 차량운행, 원장 비서, 시설관리, 행사지원 등을 주로 수행하는 인력을 채용·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전문적인 문화예술 활동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7)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921호, 2018.5.29., 일부개정] 제50조(직무)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문화의 해외 홍보, 해외 문화홍보 정책, 재외공관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지원·협의, 해외언론 협력 및 국가이미지 제고 등 해외홍보 전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8)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행정직원’이란 「재외한국문화원장·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에 따라 채용되어 재외한국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재외문화원 인력 현황(사례)]

연번	국적	주요업무	연번	국적	주요업무
1	한국	행정, 회계, 인사, 총무	7	현지	도서관, 영화
2	한국	프로그램, 행사	8	현지	대외협력, CSR
3	한국	대외홍보, 언론	9	현지	학교 문화교류프로그램
4	현지	원장비서, 사무실 행정지원	10	현지	프로그램 운영지원
5	현지	안내 데스크, 강좌 및 회원관리	11	현지	예술전시
6	현지	공용운전사, 우편·파우치 관리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4월 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3대 전략을 발표하면서, 전시·공연을 기획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비율을 현재 총 12%(31명)에서 2022년 3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파악한 공연·전시 관련 전문인력(31명)은 재외문화원의 공연·전시 업무 담당자이긴 하나, 대부분이 실제 공연·전시 등을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여 문화행사를 기획한 사례가 미미하고 행정지원 업무 등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의 해외홍보라는 재외문화원의 본연의 기능을 고려하여, 행정직원 채용·운영 시 정원 내에서 공연·전시 전문인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완성보증계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의 내역사업인 완성보증계정 출연사업¹⁾은 「문화산업진흥법」 제10조의 2)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의 완성보증계정에 자금을 출연하여 콘텐츠 관련 기업이 대출을 통하여 문화콘텐츠 제작자금을 조달하고 해당 콘텐츠 완성 후 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 예산현액은 50억원으로 전액 출연되었다.

[2017회계연도 완성보증계정 출연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6,332	6,332	0	0	6,332	6,332	0	0
완성보증계정 출연	5,000	5,000	0	0	5,000	5,000	0	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보증사고율 급증으로 완성보증계정의 안정적 운영이 저해되고 있어 이의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강상규 예산분석관(skang@assembly.go.kr, 788-4635)

1) 코드명: 일반회계 1231-306의 내역사업

2) 「문화산업진흥법」

제10조의2(완성보증계정의 설치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제작 및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완성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에 완성보증계정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완성보증출연사업은 콘텐츠 제작자와 배급사간 선판매계약 또는 투자계약을 전제로 대출이 진행되는 관계로 계약이 파기되어 보증을 받은 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이 대출은행에 변제하게 되어 있다.

2017년 완성보증계정 운영현황을 보면, 보증사고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27.3%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116억 7,000만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완성보증계정 기본재산이 2016년 130억 6,000만원에서 49억 4,000만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기본재산 대비 보증잔액을 의미하는 운용배수가 기술보증기금 실무 기준 상 최대배수인 5배를 초과하는 8.3배에 달하고 있어 완성보증계정 운영의 안정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완성보증계정 운영 현황]

(단위: 억원, 배, %)

구분	2014	2015	2016	2017
정부출연	20	50	50	50
사고순증(A)	16.7	18.9	32.3	112.6
대위변제	16.9	16.9	27.4	116.7
보증잔액(B)	237	251	446	412
기본재산(C)	92.1	122.1	130.6	49.4
운용배수(B/C)	2.6	2.1	3.4	8.3
사고율(A/B)	7.1	7.5	7.2	27.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러한 보증사고율 급증의 원인은 2016년 기본재산이 130억 6,000만원에 불과하였으나 한류콘텐츠 및 고부가 콘텐츠에 지원한도를 50억원까지 그리고 방송/드라마는 30억원까지 설정 운영하고, 2017년 보증공급액의 55.2%를 방송/드라마 그리고 25.1%를 공연 장르에 집중 지원³⁾하였으나, 사드배치 등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로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이들 방송/드라마, 공연 장르의 보증사고율이 각각 24.3%와 16.2%에 이르게 된 데 있다고 하겠다.

3) [완성보증 보증대상(장르별) 사고율]

[2017년 신규보증기준 장르별 보증공급액]

(단위: 개, 억원, %)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드라마	영화	디지털 콘텐츠	공연	캐릭터	음악	만화	합 계
건수	10	10	85	9	6	48	4	0	0	172
(비중)	(5.8)	(5.8)	(49.4)	(5.2)	(3.5)	(27.9)	(2.3)	(0.0)	(0.0)	(100.0)
금액	43	26	566	47	72	258	14	0	0	1,026
(비중)	(4.2)	(2.6)	(55.2)	(4.6)	(7.0)	(25.1)	(1.4)	(0.0)	(0.0)	(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러한 완성보증계정의 사고율을 감안할 때, 정부 출연금의 확대만으로 기본재산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완성보증계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당 보증한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보증 대상 장르도 방송/드라마와 공연 위주에서 다양한 장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송/드라마의 수출대상도 중국 위주에서 다양한 국가로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제작자의 신용평가 및 콘텐츠평가를 개선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단위: 억원, 배, %)

	게임	애니	방송/드라마	영화	디지털 콘텐츠	공연	캐릭터	음악	만화	합계
보증잔액	140.8	84.3	284.0	69.1	63.3	177.1	28.8	9.6	3.3	860.3
사고순증	62.0	0.0	69.0	4.8	4.8	29.4	0.0	0.0	0.0	170.0
사고율	44.0	0.0	24.3	6.9	7.7	16.6	0.0	0.0	0.0	19.8

주. 완성보증 보증대상(장르별) 사고율은 국고로 운용되는 완성보증계정과 금융기관 출연금으로 운용되는 일반계정을 일괄로 통계를 관리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가. 현 황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역량 강화의 내역사업인 단막극 제작역량 및 제작지원¹⁾은 단막극 우수기획안을 발굴·완성하고 완성된 기획안의 본편 제작과 홍보·마케팅을 위하여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사업비를 공모를 통해 정액 보조하는 사업이다. 2017년 예산현액은 10억 5,000만원이며 전액 사업시행주체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교부되었다.

[2017회계연도 단막극 제작역량 및 제작 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7,818	7,818	0	0	7,818	7,816	0	2
단막극 제작역량 및 제작 지원	1,050	1,050	0	0	1,050	1,050	0	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단막극 제작역량 및 제작지원 사업추진방식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막극 제작역량 및 제작지원사업은 신진 작가, 연출가, 배우 등의 등용 확대를 위하여 이들의 우수기획안의 완성을 지원하고 완성된 기획안의 단막극 제작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2017년 동 사업의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교부된 예산 10억 5,000만원 중 2억 1,400만원이 집행되고 8억 3,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예산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상규 예산분석관(skang@assembly.go.kr, 788-4635)

1) 코드명: 일반회계 1432-300의 내역사업

[단막극 제작역량 및 제작지원 사업의 민간보조사업자 실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부처		민간보조사업자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1,050	1,050	1,050	0	1,050	214	836	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 원인을 보면 2017년 13개 우수기획안이 선정되어 단막극 제작을 위한 기획안 완료율을 위한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계약이 11월에 이루어져 2018년 1월에 사업이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완성된 기획안의 단막극 제작지원 및 이의 홍보 및 마케팅 비용 지원예산이 연도 중 집행되지 못하였다. 즉, 2018년 3월에 13개 완성된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6개 단막극 제작을 위한 계약(예산 6억 4,500만원)이 3월 22일 체결되었으며, 홍보 및 마케팅 비용(예산 1억 9,100만원)은 아직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우수 기획안 발굴·완성지원의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예산액	진행경과
13개 단막극 프리프로덕션 과제	405	완료(2017. 11. 1. ~2018. 1. 31.)
6개 단막극 제작	645	진행 중(2018. 3. 22~)
홍보 및 마케팅	191	미진행
계	1,05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러한 문제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제3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추진 시 사업진도 관리와 더불어 교부된 민간 보조금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집행관리가 요구된다.

가. 현 황

지역문화진흥의 내역사업인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¹⁾은 2017년 신규 사업으로 민간보조를 통하여 지방문화원이 보유한 지역문화 향토자료 발굴, 발굴된 자료의 DB화, 원천콘텐츠 활용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7년 예산현액은 168억 6,0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다.

[2017회계연도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지역문화진흥	22,773	22,773	0	0	22,773	22,739	0	34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	16,860	16,860	0	0	16,860	16,860	0	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신규 사업 추진 시 연내 사업의 추진가능성과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로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원래 2017년 단년도 사업으로 향토자료(원천콘텐츠) 발굴, DB시스템 및 홈페이지 개발, 원천콘텐츠 활용기반 구축 등의 사업들이 서로 순차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는 사업이다.

2017년 사업추진과정을 보면, 지방문화원 신규 및 기획 콘텐츠 발굴의 경우, 면밀한 사전계획이 정비되지 못하고 사업이 추진되었다. 즉,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

강상규 예산분석관(skang@assembly.go.kr, 788-4635)

1) 코드명: 일반회계 1533-300의 내역사업

문화원 참여 활성화 방안 및 세부사업 추진방식 등의 결정이 지연되어 5월에 공모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지방문화원 및 사업자 선정이 지체되어 사업기간이 2018년 6월로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발굴된 원천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한 DB시스템 및 홈페이지 개발, 원천콘텐츠 활용기반 구축사업이 연도 중에 완료되지 못하고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사업비는 이월되었다.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지원사업 추진실적]

(단위: 원)

구분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17.2.~'18.6.	16,860,000,000	10,630,814,465	6,229,185,535
지역문화자원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17.3.~11.	285,000,000	285,000,000	0
지역 문화 자원 향토 자료 발굴 지원	시 도 문 화 원	소장자료 전수조사 및 목록화	'17.5.~12.	1,872,000,000	1,871,818,900	181,100
		신규 콘텐츠 개발 (일반, 특화)	'17.5~'18.3.	7,906,000,000	7,906,000,000	0
	기획콘텐츠 개발		'17.9.~'18.6.	3,515,000,000	0	3,515,000,000
디지털화(DB구축)			'17.12~'18.5.	1,000,000,000	0	1,000,000,000
원천콘텐츠 활용기반 구축			'18.2~'18.6.	1,408,000,000	0	1,408,000,000
지역문화 홍보 및 프로모션			'17.3~'18.6.	300,000,000	115,315,000	184,685,000
사업운영관리			'17.2~'18.6.	574,000,000	452,680,565	121,319,43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처럼 면밀한 사전계획 없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사업비를 이월하는 것은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일연도 예산주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사업 추진 시 연내 사업 추진 가능성과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요구된다.

가. 현 황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¹⁾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남한강연수원 일대에 미술 품 전시·유통·소비·교육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미술특구를 조성하여 미술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사업으로, 2017년 예산현액은 2억 5,000만원으로 전액 불용되었다.

[2017회계연도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250	250	0	0	250	0	0	25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2014~2017년간 토지사용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예산의 불용이 반복되고 있어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사업은 2011~2019년간 총사업비 372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남한강연수원 일대 52,575㎡의 부지에 연면적 12,892㎡의 건물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당초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간 협약을 맺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사 소유의 연수원 부지를 활용하여 남한강 예술특구를 조성하기로 함에 따라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2011년 예술특구 조성계획이 마련되고, 2012년 예술특구 조성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 8월에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변경을 완료하였다.

강상규 예산분석관(skang@assembly.go.kr, 788-4635)

1) 코드명: 일반회계 1635-306

그런데 공사착공에 앞서 토지소유자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토지사용 동의를 얻지 못하여 공사가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2014~2017년간 예산 대부분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2017년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사업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14	7,500	0	0	7,500	11	0	7,489
2015	6,550	0	0	6,550	0	0	6,550
2016	1,719	0	0	1,719	0	0	1,719
2017	250	0	0	250	0	0	25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연수원 부지 토지사용 동의지연은 영업 손실을 둘러싼 문화체육관광부와 이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과거 5년간 연수원의 평균 매출액과 공사기간 동안의 매출액 차이를 사후보상해 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의 영업 손실을 예산으로 보상, 특히 현금으로 보상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에 차선택으로 공사기간 동안 연수원 전체시설을 대관하고 대관료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²⁾

이러한 이견이 2014년부터 지속되어 왔고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의 지속적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의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2) 기획재정부도 공사기간 발생이 예상되는 영업 손실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 현 황

핵심관광지 육성¹⁾은 2017년 신규 사업으로 지역별 특색이 있는 10대 관광권역을 선정하여 숙박·식음·볼거리·교통 현황을 관광객들의 동선에 따라 진단하고, 관광요소별로 종합 개선 및 코스화·상품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40억 원이며 전액 집행되었다.

[2017회계연도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핵심관광지 육성	24,000	24,000	0	0	24,000	24,000	0	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동 사업은 2017~2021년간 39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역별 특색에 따라 10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관광시설·관광콘텐츠·이동망·휴먼웨어 및 홍보·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관광개발사업이다.

[핵심관광지 육성 사업 10개 권역 현황]

연번	명칭	선정지역	PM단
1	평화역사이야기여행	인천, 파주, 수원, 화성	관광경영학회
2	드라마틱강원여행	평창, 강릉, 속초, 정선	문화컨설팅 바라
3	선비이야기여행	대구, 안동, 영주, 문경	대구경북연구원
4	남쪽빛감성여행	부산, 거제, 통영, 남해	메타기획 컨설팅
5	해돋이역사기행	울산, 포항, 경주	한국관광개발연구원
6	남도바닷길	여수, 순천, 보성, 광양	공공문화개발센터 유알아트
7	시간여행101	전주, 군산, 부안, 고창	전주대산학협력단
8	남도맛기행	광주, 목포, 담양, 나주	전라도지오그래픽
9	위대한금강역사여행	대전, 공주, 부여, 익산	부여마을문화학교협동조합
10	중부내륙힐링여행	단양, 제천, 충주, 영월	지역활성화센터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강상규 예산분석관(skang@assembly.go.kr, 788-4635)

1) 코드명: 관광진흥개발기금 4163-304

이를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를 통하여 한국관광공사가 지역 관광현황을 진단하여 권역별 실시계획의 수립, 지역별 관광콘텐츠 육성, 온오프라인 홍보, 사업의 평가 및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고의 지원을 받아 권역별 실시계획을 반영하여 관광환경 개선, 관광이동망 확충, 휴먼인프라 보강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2017년도 핵심관광지 육성 부문별 지원항목]

구분	지원항목 및 내용 예시	총액(국비)	권역당 예산
진단	○ 지역관광현황진단 및 현장 컨설팅 ○ 지역별 PM단운영 ○ 사업총괄 및 권역별 협의체 운영 ○ 권역별 중장기계획 수립(진단 포함) ○ 기타관리비	28억원 (민간보조)	2.7억원
관광 환경	○ ICT 접목 안내체계 선진화 * 예: 비콘 접목 안내서비스 환경 조성, 인근 권역 종합 관광안내 키오스크, VR 콘텐츠 체험 등 ○ 관광명소 주변 노후관광시설 개선 * 예: 관광안내소, 역사, 휴게시설, 화장실 등 ○ 관광 게이트웨이 환경 개선 * 예: 역사, 공항, 터미널 등 ○ 경관개선 * 예: 예술가 협업 간판디자인	80억원 (지자체보조)	8억원 (16억×50%)
관광 콘텐츠	○ 관광루트 개발 : 권역 공통 스토리텔링 기반, 주제별 관광 코스개발 및 다양화상품화 ○ 관광콘텐츠 공모사업 ○ 지역특화콘텐츠개발	28억원 (민간보조)	2.8억원
관광 이동망	○ 권역투어버스 운영 ○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 ○ 권역투어패스, 권역안내판 정비 등	36억원 (지자체보조)	3.6억원 (7.2억원 ×50%)
휴먼 웨어	○ 주민 및 관광종사자 대상 교육훈련 : 관광종사자 대상, 지역 관광학과 연계 ○ 프리미엄 해설사 시범 양성	10억원 (지자체보조)	1억원 (2억원×50%)

구분	지원항목 및 내용 예시	총액(국비)	권역당 예산
홍보·마케팅	○ 브랜딩 및 온·오프라인 홍보	52억원 (민간보조)	5.2억원
평가 및 모니터링	○ 지속 모니터링 및 환류(반기) ○ 사업성과 평가(1년) ○ 빅데이터분석 ○ 성과평가 ○ 모니터링단 운영	6.5억원 (민간보조)	0.65억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 저조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된다.

2017년 신규로 추진된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보조사업자 실집행실적을 보면 관광이동망 확충 및 휴먼웨어 보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 집행률 40.4%,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집행률 25.2%, 한국관광공사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률 48%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의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집행주체	‘17년 예산 집행 현황		
		계획액	집행액 (집행률)	실집행액 (집행률)
총 계		24,000	24,000 (100)	9,343 (38.9)
자치단체 경상보조	10개 권역 39개 지자체	4,600	4,600 (100)	1,858 (40.4)
자치단체 자본보조	10개 권역 39개 지자체	8,000	8,000 (100)	2,018 (25.2)
민간경상보조	한국관광공사	11,400	11,400 (100)	5,468 (48.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러한 집행실적 부진의 원인은 동 사업의 추진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의 추진체계를 보면, 권역별 관광환경 현황을 진단하기 위한 권역별 PM단을 구성하여 이들의 진단을 바탕으로 「2017~2021년 권역별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하여 권역별 관광환경 개선 및 이동망 확충 사업의 내용을 결정·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2017년 동 사업의 추진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2017년 3~4월에 PM단이 구성되고, 5월에 권역별 진단과 「2017~2021년 권역별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이 착수되어, 10월에 권역별 진단이 완료되고 「2017~2021년 권역별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되었다.

이렇게 권역별 관광환경 여건 진단과 권역별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이 지연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관광환경 개선, 관광이동망 확충, 휴먼웨어 보강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사업계획 제출 및 선정이 지연되었고 국고보조금의 교부가 2017년 9월에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 추진실적 부진에 따른 사업물량의 다음연도 이월은 다음연도의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데,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이 여타 사업과 달리 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관광시설·관광콘텐츠·이동망·휴먼웨어 및 홍보·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업지연에 따른 집행부진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된다.

가. 현 황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 육성의 내역사업인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¹⁾은 정부가 모태펀드 관광계정에 출자하고, 이로부터 관광기업에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계획현액은 150억원으로 전액 출자되었다.

[2017회계연도 관광기업 펀드 조성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18,750	18,750	0	0	18,750	18,750	0	0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	15,000	15,000	0	0	15,000	15,000	0	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관광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관광기업 육성펀드의 조성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투자가 미흡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5~2017년간 관광기업 육성펀드 운용실태를 보면, 자펀드 결성이 지연되고 있어 정부의 출자금에 기업이 대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해 재정지출의 효과를 저하시키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즉, 2016년 정부출자금 100억원을 기반으로 하는 제2호 펀드는 2016년 11월에 결성되었으며 2017년 정부출자금이 150억원인 제3호 펀드는 연내에 결성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상규 예산분석관(skang@assembly.go.kr, 788-4635)

1) 코드명: 관광진흥개발기금 4264-313의 내역사업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정부출자액	자펀드 결성액			결성일자
			정부출자분	민간출자분	계	
2015	1호펀드	13,000	13,000	9,000	22,000	15.09.30
2016	2호펀드	10,000	10,000	10,000	20,000	16.11.30
2017	3호펀드	15,000	15,000	12,000	27,000	18.01.25
계		38,000	38,000	31,000	69,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따라 2015~2017년간 관광기업 육성펀드의 투자 실적을 보면, 출자금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펀드 결성이 지연되어 기업투자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7년의 경우 창업 초기 단계의 관광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해서 50억 규모의 별도의 소액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수정하여 제3호 펀드로 통합 운용하였고 결성액의 15%를 관광벤처기업²⁾에 투자할 예정이었으나, 자펀드 결성지연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015~2017년 관광기업 육성펀드 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결성액	총 투자액 (a+b)	기업 분류별 투자액		
			관광기업(a)	관광벤처	비관광기업(b)
1호펀드	22,000	18,056	13,306	9,306	4,750
2호펀드	20,000	7,200	4,700	700	2,500
3호펀드	27,000	-	-	-	-
계	69,000	25,256	18,006	10,006	7,25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2) 2017년 한국모태펀드 관광계정 운영 세부지침에 따르면, 관광벤처는 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관광분야 벤처기업, 2) 한국관광공사가 발굴한 관광벤처기업 또는 크라우드 펀딩 유치에 성공한 관광 관련 기업·프로젝트, 3) 융복합 및 혁신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창조)기업 및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이 중 융복합 및 혁신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창조)기업 및 프로젝트는 「관광진흥법」에서 의미하는 관광사업자 이외에 관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범주가 확정된 창조경제 관련 업체를 의미한다. 2015~2016년간 관광벤처 투자는 이들 창조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관광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관광기업 육성펀드 투자 추이를 고려할 때, 관광기업 육성펀드에 대한 출자금 규모의 적절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소액 투자가 절실한 예비창업단계의 관광기업 및 관광벤처기업을 위하여 제3호 펀드의 투자실적 제고와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지원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3호²⁾ 및 동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³⁾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전입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입의 5%를 체육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민간 체육 및 예술단체의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학교 및 직장 운동 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심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체육·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7년 계획현액은 553억원이며, 이 중 528억원이 집행되고 25억원이 불용되었다.

[2017회계연도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체육·문화 예술사업의 지원	55,327	55,327	0	0	55,327	52,828	0	2,49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강상규 예산분석관(skang@assembly.go.kr, 788-4635)

1) 코드명: 국민체육진흥기금 5261-307

2)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가.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학교 및 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심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체육·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국민체육진흥계정의 배분 비율 등)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하며, 지원 대상별 구체적 배분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체육·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100분의 5

나. 분석의견

기존 예산사업과 일부 중복되고 체육·문화 진흥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편성·지원되고 있어 사업 내용 및 지원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총액으로만 국회에 제출되고 내역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국회의 예산심의를 제한하여 왔다.⁴⁾ 이에 따라 2016년도 국회의 결산심사 시 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고,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비중을 늘리고 그 밖에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비중을 줄이도록 지적받았다.⁵⁾

그러나 2017년 동 사업의 결산 현황을 보면 아직 전체 사업비 중 그 밖에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비중(39.5%)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회계연도 체육·문화예술사업의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학교체육활성화	5,139	5,139	0	0	5,139	5,139	0	0
학교 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	10,016	10,016	0	0	10,016	10,016	0	0
심판양성 및 지원	3,551	3,551	0	0	3,551	3,551	0	0
전문인력 양성	8,826	8,826	0	0	8,826	8,375	0	451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	6,069	6,069	0	0	6,069	5,667	0	402
그밖의 체육· 문화예술 진흥	21,726	21,726	0	0	21,726	20,080	0	1,646
계	55,327	55,327	0	0	55,327	52,828	0	2,49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4) 당초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의 일부로 구성된 공익사업지원금을 재원으로 기금 외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운영하던 사업이었는데, 2014년 예산총계주의에 위배된다는 국회 지적에 근거하여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계기로 국민체육진흥기금내 사업으로 편입·추진되고 있다.

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보고서」, 2017. 12.

동 사업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일반회계 예산사업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안 수립을 지원하거나 기존 일반회계 예산사업의 추가중복 지원 그리고 체육 및 예술의 진흥과 관련 없는 사업들에 국민체육기금이 지원된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문화가 있는 날 홍보마케팅 지원은 일반회계 예산사업인 “문화가 있는 날 운영사업”에서 운영하는 18개 기획 프로그램 중 문화가 있는 날 홍보마케팅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추가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지역별 문화창작발전소 사전운영에 대한 기금지원은 2018년부터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창작발전소 조성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⁶⁾ 해당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화공간을 조성·운영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기획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확보하지 못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내역사업 집행사례(예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
문화창작발전소 사전운영(3억원)	문화창작발전소 운영
문화가 있는 날 홍보마케팅(4억원)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문화가 있는 날 홍보마케팅, 8억 7,600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재구성

이외에도 체육 및 예술의 진흥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취지와 관련 없는 사업에 기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보조사업자 회계투명성 강화지원, 보조금 통합시스템 도입에 따른 연계시스템 정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ERP, 문예기금 지원사업 심의·평가 개선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6) 문화창작소 조성사업은 2018~2021년간 총사업비 483억원을 국고로 지원하여 수명이 다된 해당 지역 화력발전소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목적과 적합성이 떨어지는 집행사례]

(단위: 백만원)

사업명	추진주체	예산액	집행액	잔액
기금보조사업자 회계투명성 강화지원	국민체육진흥공단	147	138	9
보조금 통합시스템 도입 에 따른 연계시스템 정비	국민체육진흥공단	650	650	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ERP	대한체육회	219	219	0
문예기금 지원사업 심의·평가 개선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50	0	150

주. 문예기금 지원사업 심의·평가 개선사업은 사업자 미선정으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재구성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일부 내역사업이 기존 일반회계 예산사업과 유사·중복되고 체육·문화의 진흥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은 동 사업이 비록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편입·운영되고 있지만 각 사업의 내용 및 범위를 아직 명확히 정립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사업 내용과 지원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립하여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¹⁾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노후체육시설 개보수,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관련 긴급 개보수 등을 국고로 지원(30~70%)하는 사업²⁾으로, 2017년 계획현액은 1,073억원이며 이 중 1,069억원이 교부되었다.

[2017회계연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의 지원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107,327	107,327	0	0	107,327	106,969	0	35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하여 이의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2015~2017년간 공공체육시설 설치지원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면, 3년간 998개 개소의 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1,972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실적이 각각 60.7%, 47.5%, 33.6%로 지속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상규 예산분석관(skang@assembly.go.kr, 788-4635)

1) 코드명: 국민체육진흥기금 5163-309

2) 10년 이상 노후체육시설 30%, 국민건강·안전관련 긴급 개보수 5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70%로 지원되고 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실적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예산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이월액	불용액
2015	43,489	43,489	0	43,489	26,410	60.7	15,852	1,227
2016	46,444	46,444	15,852	62,296	22,048	47.5	40,248	0
2017	107,327	106,969	40,248	147,217	49,525	33.6	49,525	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특히 2017년의 경우, 우레탄 트랙 및 인조잔디의 안전성 논란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 우레탄트랙 및 인조잔디의 시급한 정비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3조의21항³⁾이 정한 체육진흥투표권 기금전입금 지원 한도 5%를 초과하여 9.2%에 해당하는 1,073억원을 공공체육시설에 지원하고 이 중 680억원을 우레탄트랙 및 인조잔디 교체비용으로 반영하였다.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이러한 증액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레탄 트랙 및 인조잔디 교체비용의 집행실적을 보면 공공체육시설 전체 개보수사업 실적행실적 33.6% 보다 낮은 17.8%의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⁴⁾

3)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에 따라 기금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지원. 이 경우 개수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 중 기금의 지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기금의 배분 비율 등)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하며, 지원 대상별 구체적 배분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위한 지원: 100분의 5

- 4)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말 국가기술표준원의 우레탄 운동장시설 위해성기준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교육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합동 “위해성관리 가이드라인”이 2017년 4월에 수립됨으로써 개보수 대상시설 조사 및 선정이 지연된 것에 비롯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레탄 트랙 및 인공잔디 개보수 실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예산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이월액	불용액
2017	68,000	67,392	0	67,392	11,992	17.8	55,400	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상에서 보듯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매년 지원액 규모가 일정부분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부진이 연례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부진의 원인과 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철저한 집행관리가 요구된다.

가. 현 황

태권도 진흥의 내역사업인 태권도 프리미엄 산업 생태계 조성사업¹⁾은 2017년 신규 사업으로, 민간보조를 통하여 태권도 온라인 플랫폼 및 콘텐츠 개발, 세계태권도 한마당 대회 및 유·청소년단 캠프 개최, 관람형 태권도 산업 육성, 태권도 프리미엄 상품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7년 예산현액은 36억 7,600만원이며 이 중 16억 600만원이 집행되고 20억 7,0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7회계연도 태권도 프리미엄 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태권도 진흥	15,459	15,459	0	0	15,459	13,389	0	2,070
태권도프리미엄 산업 생태계조성	3,676	3,676	0	0	3,676	1,606	0	2,07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2017년 신규로 추진된 태권도 프리미엄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사전계획 부실로 사업비 대부분이 이월 또는 불용 처리되어 구체적 사업내용의 정비 등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된다.

온라인 플랫폼 조성 및 콘텐츠 구축사업은 세계 태권도 도장과 수련인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들이 세계 주요 언어로 태권도 관련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더불어 동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 구축하는 것이다.

강상규 예산분석관(skang@assembly.go.kr, 788-4635)

1) 코드명: 국민체육진흥기금 5361-304

그런데 동 사업은 사전에 사업계획이나 타당성조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됨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사업계획 마련, 사업계획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등이 5월에 이루어지고 플랫폼 조성을 위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이 12월에 완료되었으며 타당성 조사는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온라인 플랫폼 및 콘텐츠 구축사업 예산 20억 7,600만원 중 3억 2,100만원만이 교부되어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비용 1억 9,400만원을 제외한 타당성조사 비용 1억 2,1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17억 5,500만원은 교부되지 못하고 불용되었다.

[온라인 플랫폼 및 콘텐츠 구축사업 실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부처		민간보조사업자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76	321	321	0	321	194	121	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관람형 태권도 산업육성은 기존의 일대일 겨루기 중심의 태권도 경기방식을 전환하여 5인제 태권도 실업리그를 운영하고 이에 대한 TV중계를 지원함으로써 태권도를 산업육성의 일환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2017년 동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실업리그 운영방식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11월에 완료되고 게임방식은 용역을 통하여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예산 7억원 중 마스터플랜 수립비용 5,000만원을 제외한 게임방식 개발 용역비 3억 5,000만원은 이월되고 3억원은 불용되었다.

[관람형 태권도 산업육성 실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부처		민간보조사업자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700	400	400	0	400	50	350	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렇게 신규 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비의 대부분이 이월 또는 불용되는 것은 사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연도 중 사업방향을 수립함으로써 사업기간의 연장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규 사업 추진 시 사업내용과 사업방향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둘째, 태권도 프리미엄 상품개발 예산은 예산이 정한 목적 외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태권도프리미엄 상품개발은 태권도와 명상(힐링), 태권도와 치유(한방·의료), 태권도와 음식 등의 태권도 융복합상품을 개발하고 태권도원과 연계하여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예산 3억원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실제 집행결과를 보면 태권도 프리미엄 상품개발 예산은 2018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기원 명소화사업을 위한 ‘국기원 명소화사업 타당성 조사’와 국정과제인 태권도 진흥을 위한 ‘태권도진흥 2030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비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권도프리미엄 상품개발 실제 집행내역]

계약사업명	주요내용	예산액	계약액	용역수행업체	계약기간
국기원 명소화 사업 타당성 조사	국기원 명소화 사업의 추진 방안 분석, 사업 타당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	200	190	알투코리아 부동산 투자자문(주)	'17.6.14.~ 11.13.
태권도 진흥 2030 중장기 발전 방안	태권도 문화콘텐츠 10대 과제 및 세부추진과제 개발 등	95	95	태권도 진흥재단	'17.8.~12.

「국가재정법」 제45조에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것은 국회가 심의·확정한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정부가 예산에서 계획하지 않은 사업을 임의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의 내역사업인 스포노믹스 육성사업¹⁾은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를 통한 도시브랜드 구축으로 부가가치를 산출하고 유관 스포츠산업을 육성하는 스포츠-도시 동반성장 모델 개발을 국고(50%)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7년 계획현액은 20억원이며 이 중 19억 5,000만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었다.

또한 스포츠산업 펀드 조성사업은 정부가 모태펀드 스포츠계정에 출자하고, 모태펀드는 민간의 자금과 매칭하여 스포츠 분야의 전문 자펀드를 결성하여 개별 스포츠 관련 기업에 대하여 투자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2017년 계획현액은 70억원으로 전액 출자되었다.

[2017회계연도 스포노믹스 육성 및 스포츠산업 펀드조성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스포츠산업활성화	30,107	30,107	14	0	30,121	27,346	938	1,837
스포츠노믹스 육성	2,000	2,000	0	0	2,000	1,950	0	50
스포츠산업 펀드조성	7,000	7,000	0	0	7,000	7,000	0	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스포츠노믹스 육성사업과 스포츠산업 펀드 조성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

강상규 예산분석관(skang@assembly.go.kr, 788-4635)

1) 코드명: 국민체육진흥기금 5365-301의 내역사업

첫째, 신규 사업인 스포노믹스 육성사업 추진 시 사전계획 미흡으로 국비교부가 지연됨으로써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있는바, 신규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으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16~2019년간 스포츠와 도시가 동반성장하는 모델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스포노믹스 육성사업은 강릉시와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각각 빙상스포츠도시 조성 및 글로컬 축구도시 조성을 내용으로 있다.

[스포츠노믹스 육성사업의 주요 내용]

지자체	추진내용
강릉시	○ 사업명 : 빙상스포츠도시 메카 강릉 조성을 위한 스포노믹스 육성사업 ○ 사업내용 - 빙상스포츠메카 조성계획 수립 및 컨설팅, 1교 1빙상스포츠 특기적성사업, 지역 스포츠 활성화, 컬링대회 등 운영
서귀포시	○ 사업명 : 서귀포시 글로컬 축구도시 조성 사업 ○ 사업내용 - 수익사업(축구육성센터 조성, 유소년 축구클럽 활성화 등), 도시브랜드사업(국제 유스축구대회, 한중일 축구대회 등), 공익사업(찾아가는 축구특강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6~2017년간 동 사업의 추진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이 2016년 10월에 수립되고 사업대상 지방자치단체 선정 및 사업비 교부는 12월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예산 교부 지연과 더불어 지방재정투자 심사, 용역과제 심의 및 수정, 시의회 승인 등 행정절차 기간소요 등으로 2016년 계획된 사업은 2017년 11월로 그리고 2017년 계획된 사업은 2018년 10월로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강릉시의 2016년 사업비 10억원 중 4억 300만원은 불용되었고 2017년 사업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

서귀포시의 2016년 교부된 사업비 9억 3,300만원은 2018년 집행되었으나 2017년 사업비 9억 7,500만원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으로 정산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부처		사업시행자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강릉시]								
2016	1,000	596	1,000	0	1,000	596	0	403
2017	975	975	975	0	975	0	0	진행중
[서귀포시]								
2016	1,000	933	933	0	933	933	0	0
2017	975	975	975	0	975	0	0	진행중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러한 사업기간 연장과 사업비 이월은 원칙적으로 「국가재정법」 제3조2)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향후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는 철저한 사전계획 마련과 적기 예산 교부가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펀드 결성 및 투자실적이 부진하여 이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모태펀드 스포츠계정은 2015년에 최초로 출자가 시작되어 지난 3년간 470억 원의 정부출자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375억원의 민간투자를 통해 845억원 규모의 자펀드가 결성되었다.

2)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스포츠산업 펀드 사업 자펀드 결성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펀드명	자펀드 결성액			결성일자
		정부출자분(A)	민간출자분(B)	(C=A+B)	
2015	보광22호 스포츠-IT 융복합 투자조합	10,000	7,000	17,000	2015.6.
	유티씨 스포츠1호 펀드	10,000	11,500	21,500	2015.7.
2016	유티씨 스포츠2호 펀드	10,000	7,000	17,000	2016.9.
	센트럴스포츠펀드	10,000	7,000	17,000	2017.12
2017	보광 25호 펀드	7,000	5,000	12,000	2017.9
합 계		47,000	37,500	84,5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런데 2015~2017년간 자펀드 결성 및 투자현황을 보면 그 실적이 연례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2016년 유티씨 스포츠펀드2호는 결성액 대비 투자액이 29.7%로 아직 투자실적이 미흡하고 센트럴스포츠펀드는 정부 출자분 100억원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민간출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자펀드가 2017년 12월에 결성되었다. 이에 따라 동 자펀드(센트럴스포츠펀드)의 투자실적이 전무하다.

또한 2017년 결성된 보광25호 펀드의 경우에도 자펀드가 9월에 결성된 관계로 타년도에 결성된 자펀드에 비하여 결성액 대비 투자실적이 8.3%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포츠산업 펀드 조성사업 투자 실적]

(단위: 백만원, %)

자펀드 명	결성액 (A)	투자액			B/A
		스포츠 투자액	비스포츠 투자액	합 계 (B)	
보광22호 스포츠-IT 융복합 투자조합	17,000	8,000	3,094	11,094	65.3
유티씨 스포츠1호 펀드	21,500	12,920	3,838	16,758	77.9
유티씨 스포츠2호 펀드	17,000	2,425	2,624	5,049	29.7
센트럴스포츠펀드	17,000	0	0	0	0
보광 25호 펀드	12,000	1,000	0	1,000	8.3
합 계	84,500	24,345	9,556	33,901	40.1

주. 스포츠투자액의 대부분은 스포츠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투자액을 의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펀드의 투자존속기간이 8년 이내이고 투자기간도 4년 이내인 점을 감안할 때, 전체 투자실적을 지금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2016~2017년간 자펀드 결성일자 지연으로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실적도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언론진흥기금¹⁾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설치되었으며, 주로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잡지의 진흥 및 신문·잡지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된다.

언론진흥기금 주요사업(뉴스미디어진흥, 뉴스유통구조개선, 언론공익사업) 및 기금관리비의 최근 5년간 업무추진비 편성 내역을 보면, 주요사업비에는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고, 기금관리비에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2,600만원, 2017년에는 2,40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었다. 2017년 기금관리비의 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의 70.8%인 1,700만원이 집행되었다.

[2013~2017년 언론진흥기금 업무추진비 및 일반수용비 현황]

(단위: 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주요사업비	일반수용비	4,895	4,506	3,738	3,554	3,768	3,597	4,623	4,298	4,637	4,257
	업무추진비	0	0	0	0	0	0	0	0	0	0
기금관리비	일반수용비	451	339	403	231	376	241	320	195	295	202
	업무추진비	26	22	26	24	26	24	26	21	24	17

주: 주요사업비는 여유자금 운용사업인 통화금융기관예치금을 제외한 3개 세부사업 (뉴스미디어진흥, 뉴스유통구조개선, 언론공익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김려진 예산분석관(wls423@assembly.go.kr, 788-4638)

1) 코드명: 언론진흥기금 기금운영비 7279-200, 뉴스미디어진흥 1463-300, 뉴스유통구조개선 1463-301, 언론공익사업 1463-303

나. 분석의견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진흥기금의 일반수용비에서 식음료비를 연례적으로 집행하였고, 2017년에도 언론진흥기금의 4개 사업에서 일반수용비 1억 6,400만원을 식음료비 등으로 집행하였다.

「201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일반수용비는 회의참석사례비, 행정사무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에 지출하고,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및 제 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업무추진비를 특정업무경비, 복리후생비 등과 함께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용 시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업무추진비의 예산 초과지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일반수용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비품 수선비 등 ○ 회의참석사례금,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초빙강사료 등	○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 경비 - 외빈 초청 경비 - 해외출장지원 경비 - 공식 회의 및 행사 경비

자료: 「201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및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그런데 언론진흥기금의 2017년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을 보면,²⁾ 기금운영비에서 1,384만원, 뉴스미디어진흥에서 6,587만원, 뉴스유통구조개선 사업에서 632만원, 언론공익사업에서 7,813만원 등 총 1억 6,417만원을 식음료비로 집행하였다.³⁾

2) 언론진흥기금 5개 세부사업 중 기금 여유자금 운용 성격인 통화금융기관예치금 세부사업(9704-970)을 제외한 4개 세부사업이 모두 해당된다.

3) 일례로 한우정육식당(NIE 프로그램 회의비), OO횃집(뉴스트러스트운영 회의비), OO치킨(조사연구 관련) 등에서 사용되었다.

[2017년도 업무추진비 집행액 및 일반수용비 중 식음료비 지출액 비교]

(단위: 천원, 건)

	업무추진비 (240-02)		일반수용비 중 식음료비 지출액 (210-01)		
	예산	결산	건수	금액	건당 평균액
기금운영비	24,000	17,000	80	13,840	173
뉴스미디어진흥	0	0	504	65,873	131
뉴스유통구조개선	0	0	37	6,323	171
언론공익사업	0	0	201	78,133	389
계	24,000	17,000	822	164,169	216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제출자료 재정리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15년 및 2016년에도 연례적으로 일반수용비를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로 집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금운영주체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업무추진비 편성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요되는 식음료 등의 경비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국가재정법령과 지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업무추진비 예산 외 초과지출이 필요한 경우 전용절차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특히 이와 같이 업무추진 성격의 예산을 우회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2017년 국회 예산 심사 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집행환경 대응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감액의결한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⁴⁾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매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규모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있고, 문화체육부장관은 언론진흥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하며 성과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단에 시정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위와 같이 연례적으로 언론진흥기금 예산을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집행한 사례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을 하지 않았다.

4) 국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한 전 부처의 업무추진비를 감액하면서 “업무추진비가 정부안 대비 5% 미만 감액된 부처는 자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정부안의 95% 이내에서 절감하여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진흥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국가재정법」 및 집행지침을 위반하여 일반수용비를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로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가. 현 황

미디어홍보 사업¹⁾은 대통령 해외 순방 현지 프레스센터 설치·운영 및 홍보를 지원하고, 해외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 관련 취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예산액 57억 6,100만원에서 전용 증액 18억 5,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6억 1,300만원에서 74억 8,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미디어홍보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미디어홍보	5,761	5,761	0	1,852	7,613	7,481	0	132
대통령순방 프레스센터 설치·운영	1,341	1,341	0	1,839	3,180	3,149	0	31
외신 분석 및 오보오류 대응	2,279	2,279	0	13	2,292	2,213	0	79
외신 취재 지원	2,141	2,141	0	0	2,141	2,119	0	2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역사업인 대통령순방 프레스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대통령 해외 순방시 취재지원을 위하여 프레스센터·차량·사무기기 등 임차, 기자단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재외문화원장이 파견인력(3명) 및 현지지원인력(30명 내외) 등을 통해 수행한다.

김려진 예산분석관(wls423@assembly.go.kr, 788-4638)

1) 코드명 일반회계 3131-302

나. 분석의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예산 심사시 감액된 대통령순방 프레스센터 설치운영 사업을 전용 등을 통해 증액 집행하였다.

국회는 2017년도 예산 심사시 동 사업의 예산이 전년 대비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등에 따른 집행 환경의 변화를 예산에 반영하여, 정부예산안 82억 3,000만원 대비 약 30% 규모인 24억 6,900만원을 감액하였다.

[미디어홍보 사업의 국회 심사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	회계	정부안	감액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8,230	△2,469

자료: 국회,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6.12.3.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4/4분기에 예산부족을 이유로 18억 6,200만원을 전용 등을 통해 증액하여 대통령순방 프레스센터 설치운영 등에 집행하는 등 국회가 예산심사 시 제시한 기준과 다르게 집행하였다.

[미디어홍보 사업 이·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전용감액된 세부사업		금액	미디어홍보 사업으로 전용		
	세부사업 명	목-세목 코드		이·전용일시	목-세목	이·전용 사유
전용	국가이미지 홍보	320-01	234	2017.12. 7.	210-01	순방프레스센터 설치운영 예산 부족
		320-01	44	2017.12.14.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420-03	40	2017.12.14.		
자체 전용	국가이미지 홍보	210-14	35	2017. 9.11.	220-02	순방프레스센터 설치운영 현지파견요원 국외여비 부족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210-01	80	2017.10.30.		
	미디어홍보	210-01	10	2017.12.26.		

(단위: 백만원)

구분	전용감액된 세부사업		금액	미디어홍보 사업으로 전용		
	세부사업 명	목-세목 코드		이·전용일시	목-세목	이·전용 사유
내역 변경	국가이미지 홍보	110-03	13	2017. 7. 3.	110-03	한국바로알림서비스 인력 6개월 기간 연장
		210-01	200	2017. 8. 8.		
		210-14	400	2017. 9.11.	210-01	순방프레스센터 설치운영 예산 부족
		210-01	300	2017.11.10.		
	국가이미지 홍보	210-01	50	2017.12.18.	210-01	순방프레스센터 설치운영 예산 부족
		210-14	62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210-01	9	2017.10.31.		
		210-07	380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240-01	5	2017.12.18.	240-0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특히 대통령순방 프레스센터 설치운영의 경우 당초 계획(대통령 행사시 10개소 설치)에 비해 실제 프레스센터 설치 개소수(10개소)가 증가하지 않았는데 예산 집행 규모는 50% 이상 증가하였으며, 사업목적(대통령순방시 프레스센터 설치운영)에 포함되지 않는 총리 순방행사 프레스센터(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²⁾

[대통령순방 프레스센터 설치운영 사업의 계획 및 실제집행]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	실제
대통령순방 프레스센터 설치운영	대통령순방 10개소	대통령순방 10개소 총리순방 2개소
	2,000	3,14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2) 국무총리 해외순방은 예산편성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2013~2017년에도 매년 동 세부사업에서 집행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 시행 근거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 제7항에 따른 해외문화홍보원 외신협력과의 소관업무(「정상외교 및 국민방한 행사 홍보 지원」)에 국무총리 행사 지원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 사업에서 집행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

	2013	2014	2015	2016	2017
대통령	14개소	18개소	19개소	11개소	10개소
국무총리	8개소	6개소	3개소	8개소	2개소

문화체육관광부는 집행환경 변화에 따라 예산을 감액조정한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와 다르게 해당 사업예산을 전용 등을 통해 증액 집행하였으므로,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가. 현 황

기관운영 기본경비¹⁾는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예산현액 29억 4,800만원 중 27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2,400만원을 불용하였다. 이 중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억 6,500만원에 전용 증액 1억 1,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억 7,500만원 중 2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기관운영 기본경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기관운영 기본경비	2,809	2,809	11	129	2,948	2,724	0	224
업무추진비	165	165	0	110	275	269	0	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 심사시 감액된 동 사업의 업무추진비를 전용 등을 통해 증액 집행하였다.

국회는 2017년도 예산 심사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집행 환경의 변화를 예산에 반영하고, 법률 시행을 계기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부처가 대외업무 추진과정에서 지출하는 업무추진비를 감액하기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기본경비 업무추진비의 약 10% 규모인 1억 3,600만원을 감액하였다²⁾³⁾.

김려진 예산분석관(wls423@assembly.go.kr, 788-4638)

1) 코드명: 일반회계 7111-250, 7111-261

이에 따라 기관운영기본경비 사업의 업무추진비는 정부안 1억 8,300만원 대비 10% 수준인 1,800만원을 감액하였다.

[기본경비 사업의 국회 심사 결과]

(단위: 백만원)

소관	회계	목명	정부안 세부사업 (내역사업)	세부사업 감액 (내역사업 감액)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기관운영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2,827 (183)	△18 (△18)

자료: 국회,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6.12.3.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4/4분기에 국민소통실 기본경비(7112-257) 등 21개 세부사업에서 기관운영기본경비 사업으로 업무추진비 1억 1,000만원을 전용·조정 증액하여 장차관 업무추진 간담회 및 출입기자 간담회 등에 집행하였다. 특히, 국회 감액분(1,800만원) 보다 전용증액분(1억 1,000만원)이 6배 이상 많아 당초 국회제출 안(1억 8,300만원) 보다 실제 집행금액(2억 6,900만원)이 많은 수준이다.

2) 일반회계 7개 세부사업(기본경비)에서 업무추진비 감액

3) 또한 “업무추진비가 정부안 대비 5% 미만 감액된 부처는 자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정부안의 95% 이내에서 절감하여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제기하였다.

[기본경비 사업의 이전용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전용 일자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명	목- 세목 코드		세부사업명	목- 세목 코드	이·전용 등 사유
전용	9.5	해외문화홍보원 기본경비	240-02	55	기관운영 기본경비	240-02	기관운영 공통경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부족예산 확보
		국립중앙박물관 기본경비					
		국립현대미술관 기본경비(총액)					
		국립중앙도서관 기본경비					
		국립국악원 기본경비					
		한국정책방송원 기본경비(총액)					
		국립중앙극장 기본경비(총액)					
		한국예술종합학교기본경비					
		국립국어원 기본경비					
		국립민속박물관 기본경비					
		예술원사무국 기본경비					
조정	9.5	국민소통실 기본경비	240-02	48.3	기관운영 기본경비	240-02	부족예산 확보
		종무실 기본경비					
		관광정책관 기본경비					
		문화정책관 기본경비					
		미디어정책관 기본경비					
		국제관광정책관 기본경비					
		저작권정책관 기본경비					
		문화기반정책관 기본경비					
	9.26	국민소통실 기본경비	240-02	8	기관운영 기본경비	240-02	간담회 개최부족분 확보 등
	12.7	종무실 기본경비		0.5	기관운영 기본경비		
	12.7	기관운영 기본경비		(1.8)	체육정책관 기본경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집행환경 대응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감액한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위반하여 해당 사업에서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전용·조정하여 증액 집행하였으므로,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가. 현 황

관서운영경비는 「국고금관리법」상 국고금 지출원칙의 특례로서, 관서를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로 그 성질상 원칙적인 지출절차 규정에 따라 지출시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출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¹⁾.

관서운영경비는 일반적인 지출원칙의 예외이기 때문에 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며²⁾, 집행 가능한 최고금액을 원칙적으로 건당 5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등³⁾ 그 “범위”와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다.

김려진 예산분석관(wls423@assembly.go.kr, 788-4638)

1) 「국고금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지급하는 출납공무원(이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자금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⑥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지급절차 및 정부구매키드의 사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복리후생비, 시험연구비 중 연구개발비, 학교운영비, 위탁사업비는 제외한다)·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2. 외국에 있는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재외공관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3. 여비
4. 그 밖에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 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특별회계상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2. 운영비 중 공과금 및 위원회참석비
3. 특수활동비중 수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나. 분석의견

첫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고금관리법」상 지출원칙의 특례인 관서운영경비 제도를 통하여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한 예산집행을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⁴⁾

콘텐츠정책국의 경우 ①세부사업간 구분 없이 또는 ②여러 세부사업간 예산을 통합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였고, ③콘텐츠정책국 기본경비로 집행하여야 할 부서워크샵·학원수강료·해외출장비 등을 각 세부사업의 예산으로 집행하였다.

[2017년 관서운영경비의 목적외 집행 사례(콘텐츠정책국)]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	일자	건명	금액
① 세부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	문화창조 융합벨트구축	05-15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평가 사례비 지급(4건)	4,023
② 세부사업간 예산 통합사용	문화창조 융합벨트구축	03-08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관련 지문비, 사례비 등	5,000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03-10		
	CT기반조성(R&D)	03-31		
③ 기본경비 성격의 예산집행	문화산업정책개발및평가	05-10	콘텐츠정책관실 워크샵	1,846
		05-10	예산기금 각목명세서 제작	1,463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03-02	어학 수강료 지급	500
		05-16	어학 수강료 지급	500
		07-05	학원 수강료 지급	500
		08-09	학원 수강료 지급	500
	콘텐츠코리아랩운영	12-05	해외출장비 지급	73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 4) 이하에서는 국회의 감사요구(2016.1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에서 주로 문제된 부서(콘텐츠정책국, 체육국, 체육협력관)의 사례를 위주로 분석하였다.

또한 체육국(체육협력관)의 경우 세부사업의 목적과 무관하게 기본경비 성격으로 각종 업무용품 및 사무실 관리 비용을 집행하거나 부서워크숍·교육출장·국내이전비 등으로 집행하였다.

[2017년 관서운영경비의 목적외 집행 사례(체육국)]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	일자	건명	금액
체육국	생활체육정책운영	매월	전산소모품, 사무용품 구입 공기청정기·복사기 등 임대 화분관리비, 휴대폰 통신요금 등	총 50,000
		05-10	체육국 워크숍	1,897
		08-07	교육출장 여비	830
		03-15	국내이전비	490
	국제체육교류협력	매월	체육협력관 과운영비	총 13,884
		05-10	체육협력관 워크숍	1,027
		02-23	전산소모품 구입	4,042
		09-15	체육기자 간담회	891
		07-10	태권도업무	11,092
	스포츠산업육성	04-21	사무기기 임차료 지급 등	5,64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관서운영경비는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지출절차를 예외적으로 간소화하는 제도로서, 「국고금관리법」의 예외라는 점에서 예산 집행이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⁵⁾을 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을 다른 목적의 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전용을 통해서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고금관리법」상 특례인 관서운영경비 제도를 이용하여 일상적으로 과다하게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5)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는 관서운영경비의 건당 집행가능한 최고금액 제한(건당 500만원)을 위반하여 집행하였다.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및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는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을 건당 500만원으로 정하고, 운영비 중 공과금, 위원회참석비, 우편요금 등과 여비 등은 예외적으로 이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관서운영경비 예산과목별 지출용도 및 한도]

예산과목	용도
운영비(210)	건당 500만원이하의 경비 (단, 공과금 및 위원회 참석비, 선거관련 용품제작·인쇄비용·우편요금, 청사임차료,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제한 없음).
여비(220)	전체
업무추진비(24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 (단,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제한 없음)

자료: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별지 제1호 중 일부 발췌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도 업무추진비, 홍보용 물품구입, 대변인 워크숍 만찬 및 다과비 지급 등에 관서운영경비로 500만원 이상씩 지급하였고, 특히 국제체육교류협력 사업에서 태권도 업무에 업무추진비로 1,110만원을 집행하는 등 건당 지출한도를 120% 이상 초과하였다.

[2017년 관서운영경비 지급한도 위반 사례]

(단위: 천원)

세부사업	비목	일자	건 명	금액
홍보협력 및 분석지원	업무 추진비	11-27	2017년 대변인 워크숍 만찬 및 다과비 지급	5,250
국제체육 교류협력	업무 추진비	07-10	태권도 업무	11,092
기관운영 기본경비	일반 수용비	02-10	홍보용 물품구입	6,92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관서운영경비는 「국고금관리법」상 일반적인 지출원칙의 예외이기 때문에 금액 상 한도를 규정하여 과다 집행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그 취지를 고려하여 향후 이러한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정부의 총액인건비 제도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조직·정원, 보수, 예산을 각 기관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앙행정기관인 각 국과 소속기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의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총액 대상 인건비, 기본경비와 비대상 경비를 편성하고 있다.

[지침에 따른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

구분		세부 내역
인건비	공통	인건비 세부사업(사업코드명 : 100~149)으로 편성된 보수(110-01목), 기타직 보수(110-02목), 연가보상비(110-05목)
운영 경비	중앙 행정 기관	기본경비 세부사업(사업코드명 : 200~249)으로 편성된 상용임금(110-03목), 일용임금(110-04목), 특근매식비(210-05목), 일·숙직비(210-06목), 복리후생비(210-12목), 기타운영비(210-16목), 교수보직경비(250-01목), 직책수행경비(250-02목), 특정업무경비(250-03목)
	책임 운영 기관	기본경비 세부사업(세부사업 코드명 : 200~249)으로 편성된 인건비(100목) 중에서 상용임금(110-03목), 일용임금(110-04목), 물건비(200목) 중에서 시험연구비(210-13목), 일반용역비(210-14목), 관리용역비(210-15목), 연구용역비(260목)를 제외한 비목

자료: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 「'17년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 2017. 9

나. 분석의견

문화체육관광부는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경비를 편성하고 연례적으로 운영경비의 세목조정을 통하여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 변경한 문제가 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2015~2017년 동안 인건비, 기본경비의 세목조정을 통하여 총액인건비 대상 사업에서 총액인건비 비대상 비목 예산을 대상 비목 예산으로 세목조정한 경우를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관광정책국 기본경비(7111-219)에서 계약직 인건비 지출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기타직보수(110-02) 비목의 예산 5,200만원을 상용임금(110-03)¹⁾으로 세목 조정하였다.

[총액인건비 지침을 위반한 연도별 운영경비 세목조정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에서		금액	~으로		금액	사유
	세부사업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명		세부사업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명		
2015	관광레저정책관 기본경비 (7111-220)	210-01	3	관광레저정책관 기본경비 (7111-220)	210-05	3	특근매식비 부족
2016	관광정책관 기본경비 (7111-219)	210-01	22	관광정책관 기본경비 (7111-219)	210-05	22	특근매식비 부족
	예술정책관 기본경비 (7111-216)	110-02	3	예술정책관 기본경비 (7111-216)	110-03	3	일용직 채용을 위해 세목 조정
	관광레저정책관 기본경비 (7111-220)	210-01	8	관광레저정책관 기본경비 (7111-220)	210-05	8	국제관광국 신설에 따른 예산 조정
2017	관광정책관 기본경비 (7111-219)	110-02	52	관광정책관 기본경비 (7111-219)	110-03	52	계약직 인건비 지출을 위한 세목조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에도 총액인건비 비대상 경비를 활용하여 관광정책국 기본경비 사업의 특근매식비 2,200만원과 2015년에도 관광레저정책관 기본경비의 특근매식비 300만원 등을 세목조정을 통해 증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연례적으로 총액인건

1)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르면 기본경비 세부사업(사업코드명 : 200~249)으로 편성된 상용임금(110-03목)은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이나 기본경비 사업에 포함된 기타직보수(110-02목)은 비대상 경비이다.

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목 경비를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 세목조정하여 증액·집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총액인건비는 인건비, 운영경비를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되, 총액 규모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 통제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2) 및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의 이·전용과 예비비의 사용 등을 통한 총액인건비 규모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³⁾.

또한, 기획재정부의 「201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⁴⁾에서도 기타 사업비에서 총액인건비 항목으로의 이·전용 등 총액인건비 규모 확대는 엄격히 제한하고, 총액인건비 책임성 강화방안으로 각 기관의 해당 경비 기관운영결과를 조직성과평가 및 다음연도의 총액인건비 편성 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총액인건비 비대상 대상 경비를 활용하여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 규모를 증액하여,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을 위반하고 총액인건비 제도의 취지를 저해하였다.

이처럼 총액인건비 지침의 위반이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총액인건비 대상 사업에 총액인건비로 편성할 수 없는 비목을 편성한 후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 대상 비목으로 세목조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총액인건비 대상과 비대상 비목을 분명히 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총액인건비 비대상 경비를 활용하여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를 증액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을 포함한다)의 경우 중앙행정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안에서 조직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정원의 규정방식 및 배정기준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 ④ (생략)

3) 다만, 환율인상, 긴요한 대규모 인력수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총액인건비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201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28

- 기타 사업비에서 총액인건비 항목으로의 이·전용 등 총액인건비 규모 확대는 엄격히 제한
→ 기관운영결과를 조직성과평가 및 차년도 총액인건비 편성 등에 반영

가. 현 황

정책기획 및 성과관리¹⁾ 사업은 주요정책과제 관리,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통합 성과관리제도 운영, 국제문화교류 및 통상현안 증가 및 해외문화기능 강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의 업무개선을 유도하는 등의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의 2017년 예산현액 11억 2,500만원 중 10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고 6,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정책기획 및 성과관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정책기획 및 성과관리	1,165	1,165	0	△40	1,125	1,061	0	6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반사업인 동 사업을 통하여 기본경비 성격의 승진공무원 교육비 등을 집행하여 우회적으로 기본경비를 증액·집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본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동 사업을 통하여 기본경비 사업과 그 성격이 유사·중복되는 승진공무원 교육비, 소속 공무원 대상 어학 등 교육훈련비, 국과장급 국내외 직무훈련비 등을 집행함으로써 우회적으로 기본경비를 증액하여 집행하고 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명: 일반회계 7132-300

우선, 기획재정부의 「201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기본경비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경비로써 실·국·과 단위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인 기본행정경비, 소규모 전산운영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기본경비 개념]

구분	개 념
기본행정경비	○ 실·국·과 단위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 ○ 인원·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직책수행경비, 과운영비, 급식비 등 기준성 경비 ○ 공무원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교육훈련 경비 ○ 맞춤형 복지 시행에 따른 경비
소규모 전산운영경비	○ 전산소모품, 임차료, 회선사용료 등 전산장비의 유지운영 ○ PC 교체 등 소규모 전산경비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피복비, 교통비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21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의 일반수용비를 활용하여 ‘제47기 7급 신규자 과정 교육훈련비’, ‘제139기 5급 신규자 과정 교육비’, ‘제137기 5급 승진자 과정 교육비’ 등 내부 소속 공무원의 신규임용·승진 교육훈련비를 집행하였으며, ‘제23기 세종국가전략연수과정 연수비’, ‘제10기 글로벌리더십과정 하반기 국외현장학습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제25기 고위정책과정 교육비’ 등 국과장급 직무훈련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설장비유지비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통신시설 유지보수’에, 자산취득비로 ‘기획조정실 캐비닛, 작업용의자 구입’ 등에 집행하였다.

해당 집행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교육훈련 경비, 실·국·과 단위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 등의 경상적 경비 성격이 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반사업인 동 사업을 활용하여 기본경비 성격의 비용을 집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일반사업에서 기본경비 성격의 비용을 집행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예산 통제가 강한 기본경비를 우회적으로 정해진 예산 규모보다 증액 집행하고,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전체 기본경비 예산 규모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동 사업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집행현황 예시]

(단위: 백만원)

비목	2017년 예산현액	2017년 집행액	기본경비 성격의 집행내역
일반수용비 (210-01)	563	543	○ 제47기 7급 신규자 과정 교육훈련비 ○ 제139기 5급 신규자 과정 교육비 ○ 제137기 5급 승진자 과정 교육비 ○ 제23기 세종국가전략연수과정 연수비(국과장급 직무훈련) ○ 제10기 글로벌리더십과정 하반기 국외현장학습비(국과장급 직무훈련)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제25기 고위정책과정 교육비(국과장급 직무훈련) ○ 부처내 어학반 교육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210-09)	82	79	○ 문화체육관광부 통신설비 유지보수 등
자산취득비 (430-01)	20	20	○ 기획조정실 캐비닛, 작업용의자 구입 ○ 당직실 옷장, 장롱 구입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반사업인 정책기획 및 성과관리 사업의 예산을 승진공무원 교육비, 소속 공무원 대상 어학 등 교육훈련비, 국과장급 국내외 직무훈련비 등의 기본경비 성격이 강한 용도로 사용하여, 기본경비를 정해진 예산 규모보다 우회적으로 증액하여 집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체육정책관 기본경비¹⁾ 사업은 체육진흥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체육유공자 지원, 국가대표선수 육성, 체육인 복지, 생활체육 활성화, 전국체육대회 개최 지원, 스포츠 산업 활성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의 기본경비를 편성한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의 2017년 예산현액 3억 1,600만원 중에서 2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000만원을 불용하였다.

[체육정책관 기본경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체육정책관 기본경비	111	111	0	205	316	246	0	70
업무추진비(240)	4	4	0	6	10	10	0	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국회 감액사업인 동 사업을 내역변경·전용 등을 통해 증액·집행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기준과 다르게 집행하였다.

국회는 201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부처별 업무추진비 활용에 한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무분별하고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가 많으므로 업무추진비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동 사업의 업무추진비를 1,600만원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명: 일반회계 7112-261

[체육정책관 기본경비 사업의 2017년 예산 감액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	회계	목명	정부안 세부사업 (비목)	세부사업 감액 (비목 감액)
문화체육관광부	일반	체육정책관 기본경비(업무추진비)	127 (20)	△16 (△16)

자료: 국회,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6. 12. 3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존중하여 국회에서 감액된 동 사업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증액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장관 주재 언론사와의 간담회 개최비 부족’과 ‘기관운영 기본경비 부족분 확보’ 등을 이유로 국민소통실 기본경비, 해외문화홍보원 기본경비 등 사업에서 630만원을 연도말에 내역변경·전용하여 동 사업의 업무추진비를 증액 집행하는 등 국회가 예산심사 시 제시한 기준과 다르게 집행하였다.

[2017년 체육정책관 기본경비(업무추진비) 관련 내역변경·전용을 통한 증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일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내역 변경 (10/30)	국민소통실 기본경비 (7112-257)	240-02	1.5	체육정책관 기본경비 (7112-261)	240-02	장관 주재 언론사 체육부장 간담회 개최 부족액 확보(150만원)
전용 (11/15)	해외문화홍보원 기본경비 (7119-256)	240-02	3.0			체육국 사업추진 간담회 개최 예산 부족분 확보
내역 변경 (12/7)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2-250)	240-02	1.8			기관운영 기본경비 부족분 확보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취지에 반하여 국회 감액 사업을 내역변경·전용 등을 통하여 증액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정동극장 지원 사업은 공연예술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정동극장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사업¹⁾의 내역사업이다. 정동극장은 공연예술진흥사업 및 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발전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이다.

정동극장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교부받은 2017년 예산 43억 9,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17회계연도 정동극장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83,612	83,612	0	0	83,612	83,612	0	0
정동극장 지원	4,390	4,390	0	0	4,390	4,390	0	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 사업의 당초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공연사업비 보조금 19억 6,500만원 중 공익공연사업에 2억원이 반영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동극장은 공연수입 확보 등 원활한 공연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2017년 사업계획 승인 및 예산 변경 절차를 통해 공익공연 국고보조분을 1억 1,400만원(△8,600만원)으로 축소하여 상설공연 등 사업비로 사용하는 등 예산항목을 조정하였다.

윤희호 예산분석관(yoonhh@assembly.go.kr, 788-4683)

1) 코드명: 일반회계 1631-300

[2017년도 정동극장 지원 사업예산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당초(A)	변경(B)	(B-A)
인건비	1,104	1,104	0
경상운영비	1,321	1,321	0
공연사업비	1,965	1,965	0
- 공익공연	200	114	△86
- 그 외 공연사업(상설공연 등)	1,765	1,851	+86
계	4,390	4,390	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및 정동극장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첫째, 2017년 결산 기준 공연사업 수입이 계획 대비 34% 수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25%가 감소하여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다.

2017년 결산 기준으로 정동극장의 공연사업 수입은 5억 9,200만원으로 계획치(17억 3,920만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으며, 전년도 공연사업 수입 실적(7억 9,112만원)에 비교하여도 1억 9,913만원(△25.2%)이 줄어든 실적이다.²⁾

[정동극장 공연사업수입 현황]

(단위: 천원, %)

	2016년		2017년		증감	
	계획	실적(A)	계획	실적(B)	B-A	(B-A)/A
공연사업수입	2,045,300	791,123	1,739,202	591,996	△199,127	△25.2
(달성률)		(38.7)		(34.0)		

자료: 정동극장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연사업 수입의 급감에 대하여 정동극장은 저가 가격정책 등 공연관광시장의 문제점으로 국외관광객이 감소³⁾하였고 2017년 공연사업의 운영 방향을 전통 상설

2) 정동극장은 당초 계획 외 별도 사업으로 수입금마련을 위한 공연사업을 하였으나, 해당 공연사업 수입(5,7907만원)을 포함하여도 공연사업 수입이 6억 4,990만원 수준에 그친다.

극장에서 전통 제작극장으로 전환하는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데, 계획 대비 저조한 수입 실적은 자금 확보를 위한 자체자금 지출 감축과 손실 보전을 위한 정부 국고보조금 의존도의 증가 우려가 있다.

구체적으로 정동극장 전체 수입 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1.0%로 전년(64.0%) 대비 7.0%p 증가하였으며, 전년 대비 인건비가 1억원(△6.4%) 절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비중은 크게 늘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정동극장 수입·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수입					
	계(A)	국고보조금(B)	자체수입	기타수입	수탁사업 수입	국고보조금 비율(B/A)
2016	6,800	4,353	1,780	207	460	64.0
2017	6,182	4,390	1,386	58	349	71.0
연도	지출					
	계(C)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D)	예비비	사업비 비중(D/C)
2016	6,161	1,587	1,559	2,940	75	47.7
2017	6,028	1,486	1,589	2,880	73	47.8

주: 1. 수입항목 중 기타수입은 수입금마련을 위한 공연수입

2. 수입항목 중 수탁사업수입은 고궁역사문화관광상품(관광기금), 예술인턴보조금(문예기금), 꿈다락토요문화학교 등 수탁사업을 통한 수입임

3. 수입금마련을 위한 공연 지출 및 수탁사업 지출은 지출항목 중 사업비에 포함되어 계산함

자료: 정동극장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정동극장은 공연사업수입 증진을 위한 자구노력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동극장의 성과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2017년에 편성된 공연사업비 중 공익공연사업 비중이 미미한 상황임에도 정동극장은 공연수입 확보를 위해 사업예산 변경을 통해 더욱 축소 집행하였다.

3) 2017년 기준 국외관광객 입장객 수는 5,016명으로 2016년 10,998명 대비 △54.4% 감소하였다.

정동극장이 2017년에 추진한 공익공연 프로그램은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소외계층 대상으로 극장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연 수입 없이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정오의 예술마당, 돌담길프로젝트, 찾아가는 정동극장 등이 있다.

소외계층 지원 등 공익성이 높은 해당 공연예산을 축소하고 상설공연 등 다른 공연사업으로 예산을 전환한 것은 정동극장 공연수입의 충분한 확보를 위함이다. 이로 인하여 2017년 결산 기준으로 전체 공연사업비 25억 3,200만원 중 공익공연 사업비(1억 1,600만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4.6% 수준이며, 자체비용을 기준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0.4%(5억 6,700만원 중 200만원)으로 매우 미미하다.

[2017년도 정동극장 공연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			결산		
	계	국고	자체	계	국고	자체
공연사업비	2,660	1,921	739	2,353	1,921	432
- 공익공연	120	114	6	116	114	2
- 기타 공연	2,540	1,807	733	2,237	1,807	430
홍보마케팅	55	44	11	51	44	7
편의시설운영	90	0	90	89	0	89
수입금 마련 공연	0	0	0	38	0	38
계	2,805	1,965	840	2,532	1,965	567

자료: 정동극장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7년도 공익공연사업예산의 축소로 인하여 공연일수, 공연회수, 관객수 등 실질적이 계획 대비 감소하였으며, 전년 대비 비교하여도 관객수의 소폭 증가 외에 공연일수에서 21%, 공연회수와 지출에서 약 45%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도, 2017년도 정동극장 공익공연사업 집행내역]

(단위: 명, 천원)

연도	공연일수	공연회수	관객	지출
2016(A)	33	51	8,580	217,452
2017(B)	26	28	9,061	116,064
(B-A)	△7	△23	481	△101,388
%	△21.2	△45.1	5.6	△46.6

주: 지출금액은 국고부담분과 자체부담의 합임

자료: 정동극장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7년도 정동극장 공익공연사업 계획 대비 실적]

공연명	공연기간	계획		실적			지출 (원)
		공연 일수	공연 회수	공연 일수	공연 회수	관객 (명)	
정오의 예술마당 - 봄	4/7, 14, 21, 28	4	4	4	4	1,304	9,153,590
정오의 예술마당 - 여름	6/2, 9, 16, 23, 30	5	5	5	5	1,345	12,017,080
돌담길 프로젝트 : 봄소풍길	5/15 ~ 20	6	12	6	8	3,240	67,154,320
정오의 예술마당 - 가을,9월	9/1, 8, 15, 22, 29	5	5	5	5	1,628	12,943,710
정오의 예술마당 - 가을,10월	10/13, 20, 27	4	4	3	3	1,142	6,806,550
찾아가는 정동극장	12/4, 9, 23	3	3	3	3	402	7,989,030
소계		24	30	26	28	9,061	116,064,280

주: 지출금액은 국고부담분 1억 1,400만원과 자체부담 206만원의 합임

자료: 정동극장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익공연사업을 축소 집행하고 해당 예산을 공연수입이 발생하는 공연사업에 투자하여 정동극장의 수지를 개선하려는 측면은 이해되나, 이는 당초 예산 편성 취지 및 공연예술의 공공성과는 거리가 있는 예산 계획 변경 및 집행이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사업¹⁾에는 자체등급분류제도²⁾ 확대를 허용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7. 1. 1.)에 따라 민간자율등급분류기관 및 모바일 오픈마켓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윤희호 예산분석관(yoonhh@assembly.go.kr, 788-4683)

1) 코드명: 일반회계 1236-303

2) “자체등급분류제도”란 민간이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여 자율심의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운영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여 지정할 수 있다.

3) “등급분류”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는 것을 말하며, 선진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부적절한 언어, 사행성의 5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등급분류 심사가 이루어진다.

[등급분류 세부기준]

구분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선정성	선정적 내용없음	성적 욕구를 자극하지 않음	가슴과 둔부가 묘사되나 선정적이지 않은 경우	선정적인 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 묘사
폭력성	폭력적 요소 없음	폭력을 주제로 하나 표현이 경미한 경우	폭력을 주제로 하여 선혈, 신체 훼손이 비사실적	폭력을 주제로 하여 선혈, 신체 훼손이 사실적
범죄 및 약물	범죄 및 약물 내용없음	범죄 및 약물 내용이 있으나 표현이 경미	범죄 및 약물 내용이 있으나 표현이 경미	범죄 및 약물 등 행동 조장
언어	저속어, 비속어 없음	저속어, 비속어가 있으나 표현이 경미	저속어, 비속어가 있으나 표현이 경미	언어 표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행성	사행적 요소 없음	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경미한 경우	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경미한 경우	사행성이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

자료: 게임물관리위원회

구체적으로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연계망 구축(인프라),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관리 시스템 업무기능 개발 등의 사업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내역사업에 편성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7년도 해당 내역사업 예산 33억 9,800만원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이 중 26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1,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7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다.

예산의 이월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의 합리화 및 자체등급분류제도 안정성 확보를 사유로 2017년 12월 29일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6개월의 사업계획 연장 승인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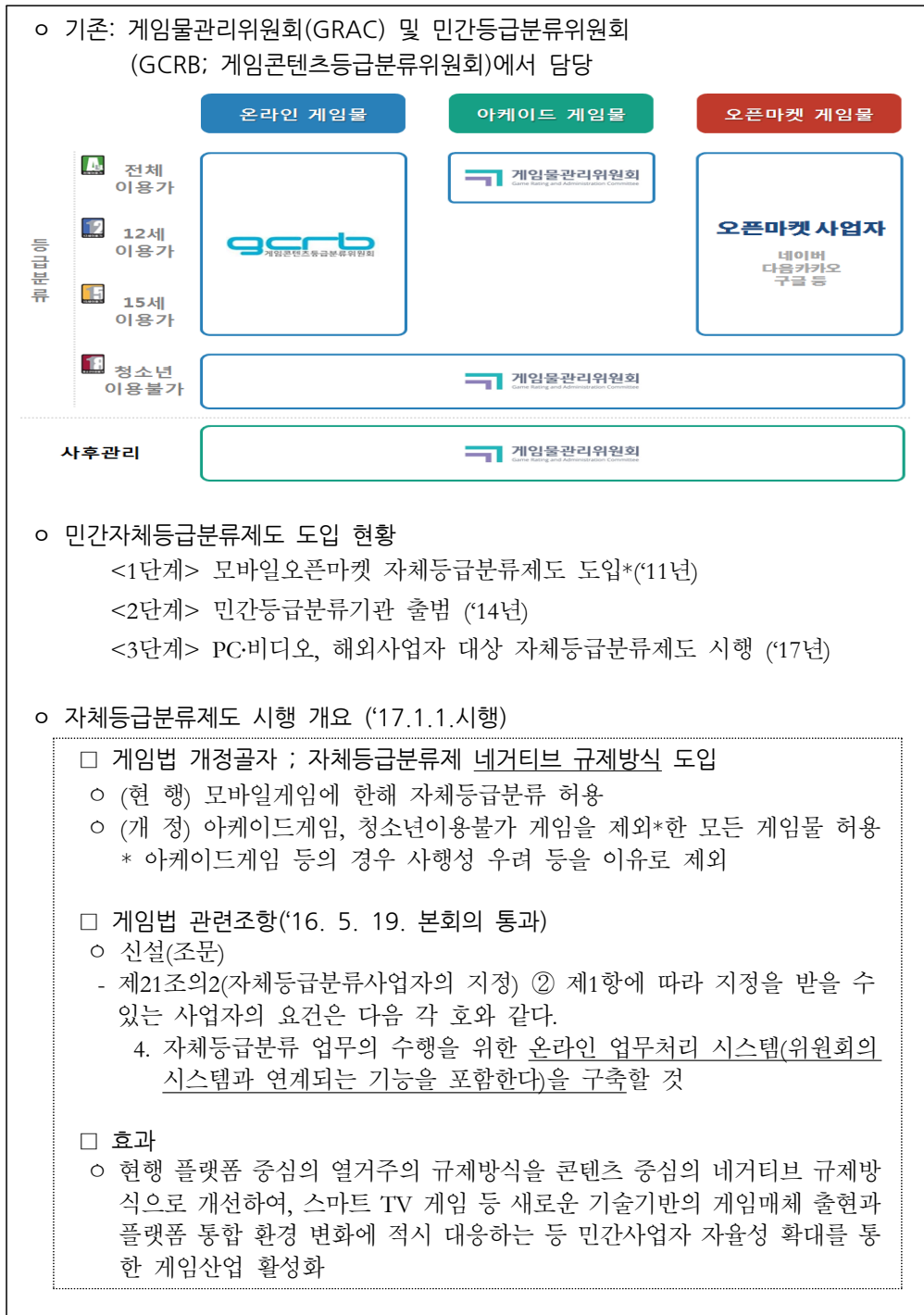
[2017회계연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게임물관리 위원회 지원	9,235	9,561	0	0	9,561	8,642	769	150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3,398	3,398	0	0	3,398	2,604	717	7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참고: 민간 자체등급분류제도 개요]



자료: 게임물관리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자체등급분류제도 추진이 계획 대비 지연되었는데,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이월 처리가 미흡한 문제가 있다.

당초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23억 2,100만원)을 2017년도에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국제등급분류연합(IARC) 가입 협약이 2017년 11월에 이루어진 결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자체등급사업자 선정 절차가 지연되었다.

[자체등급분류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일정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계획	실제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원가계산 용역(약식)수행																		16년 예산 (2,500) (‘16.8.)	16년 예산 (5,450 ¹⁾) (‘16.12.27.)
정보화전략 계획(ISP)수립																		16년 예산 (0원) (‘16.12.19.~)	16년 예산 (0원 ²⁾) (‘17.4.7.)
연계망 (인프라)구축																		17년 예산 (1,927,834) (‘17.12.)	17년 예산 (1,929,353 ³⁾) (‘18.6.30.)
업무시스템 (업무기능)구축																			

주: 1. 원가계산 용역 수행: 계획 예산 부족분은 ‘등급분류 전산시스템 운영사업(자체)’ 예산 사용

2.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등급분류 전산시스템 운영사업(자체)’ 내 사업비 절감을 통해 수행
(1억 3,680만원)하였음

3. 조달청 사전검토 의견에 따른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진행으로 계획 예산 초과 금액 발생

자료: 201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문화체육관광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로 인하여 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등 5개 과제를 11월 10일부터 긴급발주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과제는 계약금 전액을, 그 외 4개 과제는 선급금을 제외한 잔금을 이월 처리하였다.

[자체등급분류 시스템 관련 용역 계약 체결 및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계약건	비목	공고일 (재공고일)	마감일 (계약체결일)	사업기간	집행액 (집행일)	이월액	지급처
(긴급)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업무데이터 연계 지원 용역	연구 개발	17-11-10	17-11-20 (17-12-29)	17-12 ~ 18-3	14,630 (17-12-29)	6,270	S 업체
(긴급)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개발	17-11-24	17-12-7 (17-12-27)	17-12 ~ 18-6	1,046,500 (17-12-29)	448,500	S 업체
(긴급)게임물 통합 사후관리시스템 기본설계 용역	연구 개발	17-12-4	17-12-15 (17-12-27)	17-12 ~ 18-5	188,904 (17-12-29)	80,959	P 업체
(긴급)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감리)	연구 개발	17-12-15	17-12-26 (17-12-28)	17-12 ~ 18-6	56,210 (17-12-29)	24,090	G 업체
(긴급)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관리 용역	17-12-15 (18-1-3)	18-1-15 (18-3-29)	18-3 ~ 18-6	0	108,240	J 업체
계					1,306,244	668,059	

주: 전표일자란 계약금 집행을 위한 전표를 입력한 날, 승인일자란 집행 건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진 날, 발의일자란 해당 계약이 실제 집행(계좌 송금)한 날을 의미함

자료: 게임물관리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이월은 명시이월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국가재정법」 및 「2017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회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위원회는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위 지침과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적용 또는 준용할 수 있다.⁴⁾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에 필요한 국제등급분류연합(IARC) 가입 협약 지연으로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이 지연되어 이월 처리된 측면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관련

4)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일부)]

- ☐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2017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비의 주체, 지급대상, 사용·용도 등 성격상 준용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본 지침을 적용하며, 기타공공기관은 본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시스템 개발과 용역과제 발주가 긴급하게 이루어졌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계획 연장 승인을 2017년 12월 29일에 받는 등 충분한 시간과 간격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점은 향후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의 이월 승인 과정에서 사업 예산 33억 9,800만원 중 6억 4,600만원을 이월 처리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용역과제 및 그 부대비용 지출을 위해 이월 처리한 금액은 7억 1,700만원으로 7,100만원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의 이월 승인 및 처리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비목		세부내역	2017년 예산	이월 승인금액	이월 처리금액
위탁 용역	연구 개발비	자체등급분류 관련 용역비 구축 등	2,328	607	560
	관리 용역비	개인정보영향평가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684	39	157*
	기타(운영비 등)	인건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387	0	0
계			3,398	646	717

주: 1. 관리용역비 이월 처리 금액(1억 5,700만원) =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대금 1억 824만원 +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대금 4,905만원

2. 낙찰 차액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자료: 게임물관리위원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게임물 통합 사후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업무 영향 분석” 용역과제가 관리용역비 비목에서 집행될 예정인데, 국제등급분류연합(IARC) 개인정보 영향분석을 포함하는 과제 난이도상 용역사업자 선정의 난항으로 계약체결이 유찰·지연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이 2017년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추가 이월 처리된 사정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계획 연장 승인에 따른 관리용역비의 이월 범위는 3,900만원이었으며, 위원회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인한 사업의 유찰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이월금을 면밀하게 산정하지 못한 측면은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보조금 회계 처리 과정에서 사업 지연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월 처리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문화상품 창작 등 개발·보급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¹⁾ 문화상품이란, 문화유산과 연계한 공예품·기념품²⁾으로서 재단은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입점한 매장 또는 온라인샵(<http://www.museumshop.or.kr>)에서 개발된 문화상품을 판매하여 자체수입을 확보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재단은 연 400종 수준의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국립중앙박물관, 대한민국국회(헌정기념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의 매장에 판매하였다.

윤희호 예산분석관(yoonhh@assembly.go.kr, 788-4683)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5조(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이용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④ 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문화예술 창작품 개발·보급

2) 「문화상품관리규정」

제2조(정의) ① “문화상품”이라 함은 문화유산 및 문화 활동을 소재로 하여 개발한 문화적 부가가치가 있는 상품으로서 재단이 일반 대중에게 판매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화(문화관련 콘텐츠 및 디지털문화콘텐츠 포함)와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개발상품”이라 함은 재단의 비용 및 인력을 투입하여 직·간접적으로 기획·개발하여 생산하는 상품을 말하며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가. 자체개발상품 : 기획·개발 단계에서 재단의 비용 및 인력을 투입하여 직접 생산되는 상품

나. 협력개발상품 : 기획·개발 단계에서 재단의 비용 및 인력을 투입하여 제 3자와 협력하여 생산되는 상품

다. 발굴기획상품 : 재단이 발굴 또는 기획하고, 제3자가 개발을 담당하여 생산되는 상품

2. “위탁상품”이라 함은 제3자로부터 판매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아 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3. “매입상품”이라 함은 완성된 제품을 제3자로부터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한 상품을 말한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문화상품 개발 실적(2013~2015년)]

년도	개발종수(종)	구분
2013년	416	국립중앙박물관 256종, 대한민국국회 8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6종, 국립경주박물관 34종, 국립민속박물관 92종
2014년	398	국립중앙박물관 112종, 대한민국국회 17종, 국립제주박물관 11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3종, 국립경주박물관 24종, 국립한글박물관 131종, 국립민속박물관 60종, 국립대구박물관 12종, 국립광주박물관 8종
2015년	566	국립중앙박물관 283종, 대한민국국회 15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2종, 국립경주박물관 99종, 국립한글박물관 18종, 국립민속박물관 86종, 대통령기록관 15종, 청주박물관 1종, 불교문화사업단(수익금) 27종

자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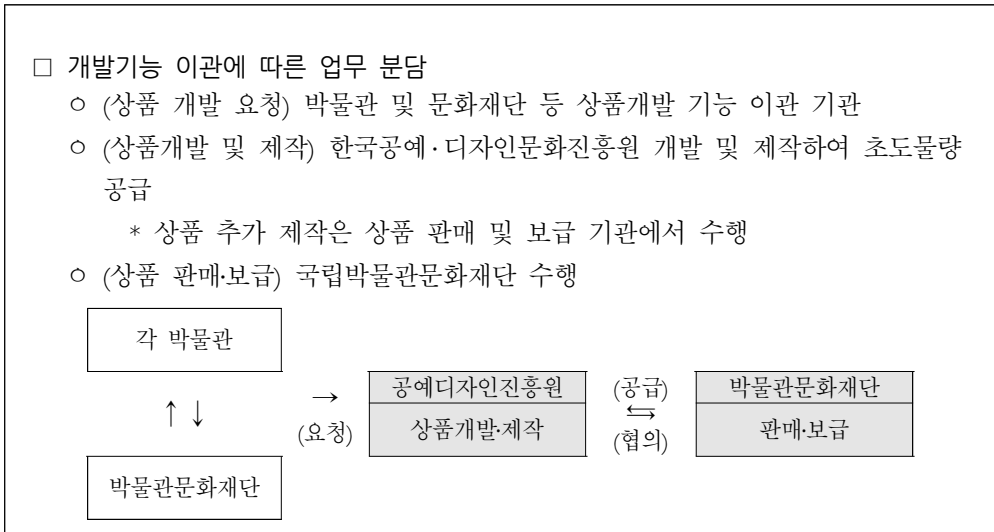
그런데, 2015년에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³⁾이 수립되어 공공부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의 폐지·축소, 기관간 유사·중복 해소 등을 통한 공공기관 기능 재편이 추진되었고, 이 과정에서 재단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문화상품 개발 기능이 진흥원으로 이관·일원화되었다.

이에 따라 재단과 진흥원 간에 「우수문화상품개발을 위한 업무 협력 약정서」가 체결(2016.4.15.)되어 문화상품 개발은 진흥원이 전담하며, 재단은 상품제작 요청 등 협력을 제공하고 개발된 문화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업무 분장이 이루어졌다.

[문화상품 개발기능 이관 현황]

□ 개발기능 이관 주요 사항		
구분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예산(국고)	4억원 이관	4억원 증액
디자인 인력	정원(4인) 이관	정원(3인) 증원
문화상품개발	개발기능 이관	개발기능 일원화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권리 없음	지적재산권 권리 있음
디자인 2차활용	협의 후 활용가능	협의후 제공
판매권	개발생품 유통·판매	상품개발, 초도물량제공

3)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 2015. 5. 27.



자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및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유사중복을 해소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된 기능 조정이 각 공공기관 간 사정과 업무 프로세스로 인하여 오히려 효과가 감소하거나 중복투자만 발생하고 있다.

첫째, 기능조정 이후 문화상품 개발 기능을 전담하는 진흥원의 경우 기능조정 전과 비교하여 상품 개발 실적이 감소하였으며 재단의 상품개발 수요를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기능조정에 따라 예산 및 인력이 진흥원에 이관된 이후 진흥원은 재단에 적시성 있는 다양한 문화상품의 제공 기능이 부족하여 재단의 상품개발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선, 문화상품의 양적 측면에서 재단은 2005년 사업 시작 이래로 매년 약 300~500종의 문화상품을 신규로 개발하였으나, 기능 이관 이후 진흥원의 신규 문화상품 개발 종수는 2016년 35종, 2017년 54종으로 기능조정 이전 대비 10~2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문화상품 공급의 적시성·대응성 측면에서 보면 기능조정 이전에 재단은

연중 수시로 진행되는 특별기획전 등에 시즌별로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전시·공연 행사에 맞는 문화상품을 제작할 수 있었다.⁴⁾ 그러나, 진흥원으로 기능 이관 이후에는 진흥원에서 내부 프로세스에 따라 자체적으로 문화상품을 제작한 후 연 1회(연말) 문화상품을 일괄 제공하고 있어 박물관 소장 문화유산 활용 제품 외에 특별·기획 전시와 관련 문화상품 등 재단의 수시적인 상품 수요에 대응하지 못한다.

[문화상품 개발기능 이관 전후 비교]

구분	이관 전	이관 후
개발종수	- 2015년 566종	- 2016년 35종, 2017년 54종
공급시기	- 연중 수시 개발 및 공급	- 연 1회 공급 · 시즌별, 특별전, 기념일 등 이벤트성 상품 개발 불가
상품개발 프로세스	- 각 기관별 요청을 수렴하여 상품개발 · 특별전·기획전 등 즉시 응대 가능 · 시즌에 맞는 상품 개발 가능 · 기관별 전담 디자이너 지정 수시 협의	- 자체 사례 연구를 통한 일괄 제작 · 3개 기관 통합 문화상품 개발 ·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하나, 전시별 상품개발에는 어려움 있음

자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및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문화상품에 대한 고객 선호도와 판매 실적을 보아도 진흥원이 개발·제공한 문화상품이 재단이 자체 제작한 문화상품보다 매출 순위에서 중간 정도의 순위를 보이고 있어 진흥원이 개발한 문화상품의 선호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2017년 기준 문화상품 판매 수입 순위를 보면, 진흥원에서 개발한 상품은 전체 20위권에서 8위, 11위를 차지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4) [박물관 기획·특별전 전시 현황]

전시명	기간	관람객수(명)
프랑스 장식미술전 <프랑스 근현대 복식, 단추로 풀다>	서울 5.30 ~ 8.15 대구 9.9 ~ 12.3	62,999 17,382
사우디 아라비아 문명전 <아라비아의 길>	서울 5.9 ~ 8.27	126,392
쇠, 철, 강 <철, 세상을 움직인다>	서울 9.19 ~ 11.19	39,064
독일 드레스덴 박물관 연합 명품전<왕이 사랑한 보물>	서울 9.18 ~ 11.26 광주 '17.12.19 ~ '18.4.8	59,484 3,723
에르미타시박물관전	서울 12.19 ~ '18.4.15	8,828

자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진흥원 개발 상품이 판매 수입 순위가 저조한 것은 우선 선호도가 낮다는 데 주된 원인이 있으며, 그 외에도 초도물량이 소진된 이후 제작 단가 협상 등 재제작을 위한 제작 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상품의 지속적인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점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7년 문화상품 판매 순위]

(단위: 천원, 개)

순위	품명	분류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액	비고
1	초충도 에코백-꽃	패션/잡화	25	508	11,771	
2	(아라비아의길) 튜브검	기타	3.5	3,025	10,530	
3	(아라비아의길) 마그넷	문구사무	10	997	9,892	
4	(독일전) 왕관연필-금색	문구사무	1.5	4,999	7,423	
5	(아라비아의길) 유리컵	생활소품	9	797	7,039	
6	제주도박물관-오색클레이 체험키트	문구사무	1.8	3,651	6,571	
7	(아라비아의길)부채-접이식	생활소품	11	591	6,315	
8	화훼도패턴 테이프세트	문구사무	7.5	764	5,567	진흥원
9	(독일전)왕관연필-은색	문구사무	1.5	3,335	4,943	
10	초충도 파우치-수박	패션/잡화	12	425	4,793	
11	화훼도 문구세트	문구사무	17	287	4,639	진흥원
12	(아라비아의길)종이필통-블랙	문구사무	9	512	4,442	
13	초충도 키링-수박	패션/잡화	12	361	4,221	
14	초충도 키링-가지	패션/잡화	12	341	4,022	
15	(아라비아의길)보틀-블랙	생활소품	16	256	3,973	
16	(아라비아의길)보틀-화이트	생활소품	16	250	3,894	
17	(프랑스단추전)티셔츠-흰색	의류	20	198	3,799	
18	(프랑스단추전)꽃무늬단추마그넷세트	문구사무	5	751	3,703	
19	(프랑스단추전)3단자동우산	패션/잡화	36	108	3,699	
20	(프랑스단추전)파란단추마그넷세트	문구사무	5	749	3,682	

주: 외부업체 위탁매입상품, 서적 및 음반류 상품을 제외한 판매순위이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상품은 2016년 개발된 26종의 판매순위임.

자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따라서, 재단의 상품수요에 대응하여 진흥원이 양질의 문화상품을 적시성 있게 개발함으로써 의도하였던 기능조정의 효과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관 간 업무 방식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재단은 진흥원을 통한 문화상품 수요가 해소되지 못하자 자체적으로 상품개발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당초 기능조정 취지에 반하며 기능 중복의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진흥원이 박물관 보유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상품과 연중 특별·기획전에 관련된 문화상품 개발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자, 재단은 위탁 업체를 선정하여 특별·기획전에 문화상품을 자체 개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기능이 이관된 이후에도 2016~2017년 동안 재단은 총 290종의 문화상품을 자체 개발 및 판매하였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자체 상품개발 실적]

(단위: 천원)

연도	관련 공연 등	종	판매실적 (수입)	예산 (지출)
2016	박물관 및 입점기관 유물 연계	45	156,147	92,166
	특별전)신안해저선에서 찾아낸 것들	9	7,443	10,908
	특별전)도시 속 미술	30	15,335	11,249
	‘극장 용’ 공연 연계	3	3,869	2,948
2017	박물관 및 입점기관 유물 연계	22	60,092	61,716
	특별전)아라비아의길	24	69,672	63,063
	특별전)프랑스근현대복식	49	78,346	59,742
	특별전)포이 사랑한 보물-독일드레스덴	32	40,692	53,118
	특별전)쇠철강-철의 문화사	22	28,326	28,437
	특별전)겨울나기	6	1,230	11,080
	특별전)개띠	7	784	18,894
	특별전)겨울궁전에서 온 프랑스 미술	41	14,964	34,799
계		290	476,900	448,120

주: 판매실적(수입)은 해당연도 문화상품 판매에 따른 수입을 의미하고, 예산(지출)은 전체 문화상품 제작에 따른 비용으로서 재고부분을 포함함

자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재단은 고유사업 추진에 따른 총수입(109억 8,500만원) 중 83.4%에 달하는 91억 5,900만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데, 이 중 문화상품 매출 비중이 자체수입의 48.0%(43억 9,600만원)를 차지하는 상황으로 매출 증대 및 자체수입 확충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⁵⁾

[2017년도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문화상품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 입					지 출				
	총액	국고		자체		총액	국고		자체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고유사업 계(A)	10,985	1,826	16.6	9,159	83.4	10,633	1,826	17.2	8,807	82.8
문화상품사업(B)	4,706	310	6.6	4,396	93.4	3,888	310	8.0	3,578	92.0
(B/A)	42.8	17.0	39.6	48.0	-	36.6	17.0	46.4	40.6	-

자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상품개발 기능을 진흥원으로 일원화 시켰으나 재단에서도 여전히 상품을 개발·제작·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며, 2016년, 2017년 신규개발 실적을 보더라도 진흥원 89종에 비해 재단 290종으로 약 3.3배 달해 공공기관 기능조정 취지와 달리 기능 중복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가 있다.

향후 재단·진흥원 및 관할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상품 개발 기능이 진흥원을 통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방식을 개선하거나 상품개발 기능 조정에 대한 재검토 등 비효율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5) 특히, 재단은 문화상품의 보급, 박물관내 문화상품점·공연장 및 기타 편의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교부받는 국고보조금 사업(박물관문화재단 지원, 일반회계 2831-312)이 2018년부터 수지차 보전 방식에 따라 편성되기 때문에 문화상품사업을 통한 재단 수입확충의 극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017회계연도 박물관문화재단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박물관문화재단 지원	1,826	1,826	0	0	1,826	1,826	0	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1-1. 국제방송교류재단의 경영악화 대처 필요

가. 현 황

국제방송교류재단(Arirang TV)은 해외홍보방송 운영주체로서 국가이미지 제고 및 국제사회 이해증진을 위한 해외 위성방송 사업과 주한 외국인의 한국이해 증진 및 내국인 세계화의식 제고를 위한 방송사업 등을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2017년 결산 기준 국제방송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총수입·지출은 555억 300만원이다. 이 중 수입 항목에는 아리랑국제방송지원 사업¹⁾을 통해 지급받는 국고보조금 수입(363억 5,400만원), 국고위탁사업수입(16억 9,900만원) 등 정부지원 수입과 광고료, 수신료, 프로그램판매 및 임대수익 등 기타사업수입 132억 3,2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도 국제방송교류재단 수입·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수입			지출	
합계			합계	
55,503			55,503	
정부 지원	직접 지원 수입	보조금 ¹⁾	사업비	30,054
		36,354	1. TV제작비	16,098
			2. 라디오 제작비	2,648
			3. 위성방송사업비	9,659
정부 지원	간접 지원 수입	위탁수입	4. 채널운영비	1,649
		1,699	고정자산	500
			- TV 방송기자재	500
소계			경상비	18,144
91,857			1. 인건비	12,884
			2. 운영경비	5,260

윤희호 예산분석관(yoonhh@assembly.go.kr, 788-4683)

1) 코드명: 방송통신발전기금 3131-302

(단위: 백만원)

수입			지출	
자체 재원	기타사업수입	13,232	사업비	6,805
			1. TV 제작비	373
			2. 채널운영비	360
			3. 기기운영비	454
	부대수입	380	4. 위성방송 사업비	323
			5. 국제교류 사업비	3
	기타(당기순손실)	△3,838	6. 기타 사업비	5,292

자료: 국제방송교류재단

재단은 2017년말 기준 발생한 당기순손실(38억 3,800만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설립(1999년) 당시 정부로부터 출연받아 보유한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충당하여 왔다. 설립 초기에 조성된 기금재원이 700억원인데 2004년부터 사업추진 및 손실보전을 위하여 전부 사용한 결과 2017년 12월말 기준 잔고는 1억원 수준이었고, 2018년 현재는 고갈된 상태이다.

[국제방송교류재단 보유 자체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자체기금 현황	70,450	66,250	62,550	59,050	53,050	47,150	42,000	36,600
(자체기금 보전)	-	-	-	-	-	-	(650)	-
사용액(기금전입금)	-	4,200	3,700	3,500	6,000	5,900	5,800	5,400
사용액 누계	-	4,200	7,900	11,400	17,400	23,300	28,450	33,850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자체기금 현황	30,700	23,800	20,100	15,600	10,600	4,300	100	100
(자체기금 보전)	-	-	-	-	-	-	-	-
사용액(기금전입금)	5,900	6,900	3,700	4,500	5,000	6,300	4,200	0
사용액 누계	39,750	46,650	50,350	54,850	59,850	66,150	70,350	70,350

자료: 국제방송교류재단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나. 분석의견

국제방송교류재단의 경영악화와 보유기금 고갈로 우려되는 사업규모 축소 및 프로그램 품질 저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재단의 경영 악화는 광고·프로그램 판매 실적 저조 등 사업 부진이 누적적으로 발생되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자체수입은 계획 대비 지속적으로 부진하였다.

2017년 결산 기준 자체수입은 153억 1,100만원으로 계획(172억원) 대비 89.0%로 전년(165억 5,800만원) 대비 12억 4,700만원이 감소(△7.5%)하였다.

이 중 광고료와 프로그램 판매 수입 달성률이 각각 37.3%, 67.4%로 저조한 상황이고, 초과달성률을 기록한 해외광고대행수입(22억 300만원, 253.2%)은 평창동계올림픽 특수로 인한 해외광고대행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서 지속적인 수입 규모 달성이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방송교류재단 자체수입 현황(2015년~2017년)]

(단위: 백만원, %)

구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예산	실적	달성율	예산	실적	달성율	예산	실적	달성율
광고료수입	6,000	2,550	42.5	6,000	2,114	35.2	4,320	1,612	37.3
수신료수입	1,500	1,343	89.5	1,360	1,282	94.3	1,270	1,241	97.7
프로그램판매수입	1,060	1,268	119.6	1,300	1,256	96.6	1,435	967	67.4
일반부대사업수입	360	132	36.7	180	130	72.2	180	171	95.0
임대료수입	2,600	2,560	98.5	2,100	1,788	85.1	1,760	1,852	105.2
협찬금수입	8,700	6,927	79.6	9,000	8,397	93.3	7,200	6,885	95.6
해외광고대행수입	600	770	128.3	700	1,176	168.0	870	2,203	253.2
기금이자수입 등	530	433	81.7	300	416	138.7	165	380	230.3
자체수입(계)	21,350	15,983	74.9	20,940	16,558	79.1	17,200	15,311	89.0

자료: 국제방송교류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상황으로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상승 및 미지급비용(연차수당)의 증가에 기인한 부채비율 증가로 인하여 부채비율도 2012년 7.41%에서 2016년 13.63%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국제방송교류재단 고유사업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자산/ 부채 현황	자산	71,632	64,980	58,697	52,086	45,384
	부채	4,944	4,600	5,032	5,291	5,445
	자본	66,688	60,380	53,665	46,795	39,939
손익 현황	영업이익	△6,913	△6,637	△5,897	△6,550	△7,783
	당기순이익	△6,651	△6,383	△5,710	△6,500	△7,660
주요 경영 지표	유동비율	485	1,113	875	568	363
	부채비율	7.41	7.62	9.38	11.31	13.63
	매출액순이익률	△14.94	△14.43	△13.19	△13.69	△15.71
	자기자본회전율	66.75	73.24	80.65	101.49	122.09

- 주: 1. 유동비율(%) (안정성 지표) = $\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
 2. 부채비율(%) (안정성 지표) = $\frac{\text{부채총계}}{\text{자본총계}} \times 100$
 3. 매출액순이익률(%) (수익성 지표) = $\frac{\text{당기순이익}}{\text{매출액}} \times 100$
 4. 자기자본회전율(%) (활동성 지표) = $\frac{\text{매출액}}{\text{자본총계}} \times 1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공공기관 III」, 2018. 3.

재단은 미흡한 자체 채원과 당기순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보유 기금으로부터 채원을 충당하였으나, 2018년 현재 고갈된 상태로서 더 이상 충당이 불가능하며, 그 동안 기금으로부터 발생된 이자수익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재단은 보유기금 고갈에 대응하여 「비상경영체제 시행계획」을 추진하여 2017년에 16억 7,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하나, 연평균 누적손실규모를 고려할 때 경상경비 절감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 국제방송교류재단의 비상경영체제 긴급 시행방안 및 실적]

(단위: 백만원)

추진 계획	절감 목표	추진 성과
직무활동비 50% 삭감운용	△29	• 직무활동비 △27
(팀장급)통신비지원 중단	△7.5	• 통신비 △30
업무추진비 20% 절감	△26.7	• 업무추진비 △84

(단위: 백만원)

추진 계획	절감 목표	추진 성과
경상경비 감액 운영	△177	• 경상경비 △440
본부장 축소(2인 → 1인 체계)	△110	• 본부장인건비 △110
자체사업비 절감 운영	△210	• 자체사업비 △988
합계	△560	△1,679 달성

자료: 국제방송교류재단

2018년도에는 더 이상 자체기금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경직적으로 편성·집행되는 인건비와 경상경비 대비 사업비 규모·비중의 감소를 초래하였다. 예산 기준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운영경비(인건비, 경상경비) 예산 규모가 175억 1,900만원에서 181억 3,700만원으로 소폭 상승한데 비해 사업비 규모는 430억 3,800만원에서 2018년 344억 8,600만원으로 85억 5,200만원 감소(△19.9%)하였으며, 사업비 비중도 69.5%에서 64.8%로 줄어들었다.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최근 3개년도 예산규모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자체 자금	방통 기금	계	자체 자금	방통 기금	계	자체 자금	방통 기금	계
1. 운영경비	13,719	3,800	17,519	11,951	5,800	17,751	7,337	10,800	18,137
○ 인건비	9,011	3,800	12,811	7,296	5,800	13,096	2,652	10,800	13,452
○ 경상경비	4,708	0	4,708	4,655	0	4,655	4,685	0	4,685
2. 사업비(A)	12,688	30,350	43,038	8,883	30,650	39,533	8,330	26,156	34,486
3. 예비비	465	0	465	320	0	320	320	0	320
4. 자본예산	368	500	868	246	500	746	287	0	287
계(B)	27,240	34,650	61,890	21,400	36,950	58,350	16,274	36,956	53,230
(사업비 비중, A/B, %)	-	-	69.5	-	-	67.8	-	-	64.8

자료: 국제방송교류재단

재단은 축소된 사업비 만큼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으나,²⁾ 2018년 예산의 편성 당시 기획재정부의 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영향으로 정부지원 예산액이 전년 대비 10%(△37억원)이 삭감 편성되었다가 국회 심의를 거쳐 증액된 바 있다.

사업비 감액은 TV·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편수 등 사업성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2018년 성과 목표치도 하향 조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2018년도 아리랑국제방송지원 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	실적 및 목표치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 아리랑국제방송 채널만족도(%)	50	목표	84	84	86.2	87.5	91.3
		실적	84.4	86.1	94.2	94.2	-
■ 제주영어FM라디오방송 청취자만족도(%)		목표	73	75	75.9	75.9	75.9
		실적	74.6	75.3	68.4	76	-
■ TV 프로그램 제작 편수(편)	50	목표	신규	4,801	4,676	4,679	3,812
		실적	-	4,667	4,679	4,679	-
■ Radio프로그램 제작 편수(편)		목표	신규	4,530	4,642	4,366	4,368
		실적	-	4,601	4,642	4,371	-

자료: 국제방송교류재단

- 2) 국제방송교류재단은 세계 각국이 자국의 영향력 확대 및 이익증대를 위하여 자국의 국제방송을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법 제도적 기반 마련은 물론 100%에 가까운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제방송 특성상 수익사업에는 한계가 있으며, 경상경비 및 사업비에 대한 문제부 일반회계 지원 등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요 국가별 국제방송 운영현황]

구분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독일	러시아	한국
채널명	BBC World	VOA	France24	NHK World	CGTN	DW	Russia Today	Anirang TV
예산	3,700억원 ('15년)	2,458억원 ('15년)	3,265억원 ('16년)	2,634억원 ('16년)	2조 7,680억원('13년)	4,222억원 ('15년)	3,407억원 ('15년)	532억원 ('18년)
재원	정부 지원금(92%) 수신료(8%)	정부 지원금 (100%)	시청각 기여금 (99.6%)	정부지원금 (19.6%), 수신료 (80.4%)	국고 (100%) (일부 광고)	정부교부금 (98.3%), 기타수입 (1.7%)	국고 (100%)	방통기금 (69%) 자체자금 (31%)
법적 근거	BBC 칙허장과 협정서	국제 방송법	시청각 커뮤니케이션법·공영방송법	방송법	방송TV 관련규정	DW 설치법	대중 매체법	민법

자료: 국제방송교류재단

향후 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기금 고갈과 경영실적 악화에 대응하여 안정적 재정구조 확립 및 경영개선을 통한 기관 설립 취지 달성을 위해 근본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1-2.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주관부처-예산지원부처간 불일치 구조 해소 필요

가. 현 황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사업³⁾은 국제방송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게 기관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재단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교부받은 2017년도 예산 369억 5,000만원 중 363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9,6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다. 불용액은 해외 경쟁입찰에 따른 사업잔여금과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익으로 구성되어 있다.⁴⁾

[2017회계연도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아리랑 국제방송 지원	36,950	36,950	0	0	36,950	36,354	0	596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재단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민법」 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으로서, 내부 정관에 따라 예산의 편성, 결산서 등의 제출 등 예결산 절차⁵⁾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구성, 성과보고와 운영계획 수립, 기관의 임면, 재산

3) 코드명: 방송통신발전기금 3131-302

4) ○ 집행잔액 : 4.9백만원

- TV제작(1.5백만원), Radio제작(1백만원), 망사용료(1백만원), 방송시설운용(1.4백만원)

○ 환차로 인한 세출감소 : 205.9백만원

- 위성임차운용 사업수행에 있어 위성임차비를 매월 지급일의 환율에 따라 적용하여 외화(USD 및 유로화)로 집행하기에 환차손익이 발생

○ 경쟁입찰로 인한 세출감소 : 310.2백만원

- 영국위성방송과 미국방송송출 사업의 대행사 선정입찰로 잔여금 발생

○ 입찰 지연으로 인한 세출감소 : 75백만원

- 미국라디오 위성방송송출 사업의 대행사 선정 지연으로 잔여금 발생

관리와 처분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⁶⁾

그런데, 재단 수입의 상당 부분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의 아리랑국제방송지원 사업 보조금으로 조성되며, 해당 사업 예산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및 위성방송사업, 방송기자재 구입, 방송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기금의 관리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⁷⁾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와 예산지원부처(방송통신위원회)의 불일치 구조는 2001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전신인 방송발전기금이 설치되면서 재단의 주관부처가 예산지원기관은 방송위원회로, 주관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원화된 데서 비롯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기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 연혁]

구분	2000 이전	2001~2007	2008~2010	2011~2017 현재
재원 (기금관리부처)	공익자금 (공보처)	방송발전기금 (방송위)		방송통신발전기금 (방통위)
주관부처	공보처	문체부(舊 문광부 포함)		

자료: 국제방송교류재단

5) 「국제방송교류재단 정관」

제22조(예산의 편성) ① 사장은 경영목표와 정부의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경영목표가 변경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된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결산서 등의 제출) ② 재단은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산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국제방송교류재단 정관」

제5조(이사회 구성) ③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

제7조(이사회 기능) ③ 이사회는 매년 재단 목적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임면) ①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9조(재산관리와 처분) 재단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와 처분 방법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다만, 기본재산 및 이사회가 특별히 지정하는 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담보제공,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운영계획의 수립) ③ 재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그 회계연도의 운영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예산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7) 2017년 결산 기준으로 재단 총수입 555억 300만원 중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이 363억 5,400만원으로 65.5%를 차지한다.

나. 분석의견

국제방송교류재단을 주관하는 부처(문화체육관광부)와 예산을 편성·지원하는 부처(방송통신위원회)의 불일치로 인한 비효율적인 관리·감독 책임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재단은 보유기금 고갈과 경영실적 악화에 대응하여 안정적 재정구조 확립 및 경영개선을 통한 기관 설립 취지 달성을 위해 근본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상황으로, 재단의 경영개선 노력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크다.

그런데 주관부처와 예산지원부처의 불일치 구조는 예산 집행과 성과관리에 있어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제한할 수 있으며, 부처간 긴밀한 협의가 부재할 경우 이중 심사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감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예산편성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유사 기관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공공기관인 국악방송의 경우는 국악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 사업비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받고,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는 일반회계로부터 집행하고 있다.⁸⁾⁹⁾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도 2016년 결산 및 2108년 예산안 심사에서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시정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¹⁰⁾¹¹⁾

8) [국악방송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재원	사업명	2017년	2018년
일반회계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국악방송 지원	7,746	7,872
방송통신발전기금	국악방송지원	4,908	4,417
자체재원	자체 및 대행사업 등	702	597
	수탁대행사업	569	467
	자체예산운영	133	130
합계		13,356	12,886

자료: 국악방송

9) 기존에는 방송발전기금에서 지원받아왔다가, 2010년부터 방송발전기금에서 프로그램 제작 관련 비용을 지원받고 운영비는 일반회계로 전환되었다.

- 2009년 방송송출운영비(약7억), 프로그램제작비 (약15억) ⇒ 2010년 프로그램 제작비(약17억)

10) 2018회계연도 예산안 국회 부대의견(국제방송교류재단):

(6) 정부는 KTV와 아리랑TV의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검토하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단에 대한 주관 부처의 일원화 등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11) [2016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국제방송교류재단)]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5) 국제방송 교류재단과 언론중재 위원회의 감독기관과 예산지원 기관 불일치 시정필요	관련 사업명	방송통신발전기금 - 아리랑국제방송지원(3131-302), 언론중재위원회지원(3133-304)	시정	방송 통신 위원회
	지적 사항	○ 국제방송교류재단 및 언론중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이지만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의 ‘아리랑국제방송지원’ 및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사업을 통해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 ○ 이처럼 감독기관과 예산지원기관이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있는 감독과 면밀한 성과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		
	시정 요구 사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제방송교류재단과 언론중재위원회의 경우 감독기관과 예산지원기관이 일치하지 않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자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가. 현 황

세종학당재단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한국어 교육을 총괄·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국어기본법」¹⁾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기타공공기관이다.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한글의 가치 확산 사업²⁾ 중 세종학당 지정 및 운영지원, 세종학당재단운영 지원, 한글발전유공자 표창 등 3개의 내역사업에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세종학당 지정 및 운영지원” 사업은 국외 세종학당 지정·운영, 한국어교원해외파견, 세종학당평가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세종학당재단운영 지원” 사업은 재단운영을 위한 인건비·경상경비 등이 편성되어 있다. “한글발전유공자 표창” 사업에는 한글발전유공자를 초청하기 위한 항공비와 문화연수비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에 사업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 215억 8,900만원을 재단에 교부하였으며, 재단은 이 중 212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5,8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다.

윤희호 예산분석관(yoonhh@assembly.go.kr, 788-4683)

1) 「국어기본법」

제19조의2(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① 국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나 강좌를 대상으로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
2. 온라인으로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누리집(누리 세종학당) 개발·운영
3. 세종학당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보급
4.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원 양성, 교육 및 파견 지원
5. 세종학당을 통한 문화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코드명: 일반회계 1532-300

[2017회계연도 세종학당재단 대상 보조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글의 가치 확산	25,145	25,145	162	0	25,307	23,398	1,757	152
세종학당 지정 및 운영지원	18,648	18,648	0	0	18,648	18,648 (18,299)	0	0 (349)
세종학당재단운영 지원	2,886	2,886	0	0	2,886	2,886 (2,878)	0	0 (8)
한글발전유공자 표창	55	55	0	0	55	55 (54)	0	0 (1)
3개 내역사업 계	21,589	21,589	0	0	21,589	21,583 (21,231)	0	0 (35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학당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재단의 세종학당 지정 및 운영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결의일자를 기준으로 2018년에 처리·집행한 예산은 다음과 같이 5억 3,700만원으로, 전체 집행의 2.5%를 해를 넘겨 집행하였다. 2018년 집행 내역이 있는 개별 사업은 대체로 연초에 집행하였는데, 한국어교원 해외 파견 사업의 경우는 집행 마감 시점(제일 마지막에 지출결의가 발생한 품목의 결의시점)이 2018년 2월 27일로 나타났다.

[세종학당재단 보조금 지출 시점]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2017년 예산액	집행액			B/ (A+B)	집행 마감시점
		계 (A+B)	2017년 집행(A)	2018년 집행(B)		
세종학당 지정 및 운영지원	18,648	18,299	17,762	539	2.9	-
- 세종학당 지정 및 운영	8,450	8,230	7,949	281	3.4	18.2.22
- 한국어교원 해외 파견	5,190	5,098	4,937	161	3.2	18.2.27.
- 누라세종학당 구축 및 운영	2,340	2,331	2,234	97	4.2	18.1.1.
계	21,589	21,231	20,694	539	2.5	-

자료: 세종학당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세종학당재단은 사업 추진 지연이나 사업기간 연장 등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 하고는 이월을 최소화하여 2017년 예산을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이월은 명시이월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국가재정법」 및 「2017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회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³⁾ 재단은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위 지침과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적용 또는 준용할 수 있다.⁴⁾

문화체육관광부 및 재단은 협의 및 승인(2017.12.28.) 절차를 거쳐 이 사업 기간을 2018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였다. 그런데, 사업 연장 기간에 맞추어 2017년을 초과한 사업 예산 집행은 이월 처리를 하지 않아 정부 결산서에는 이 사업이 2017년에 이월 처리 없이 전액 집행된 것으로 회계 처리된 미흡함이 있다.

특히, 부처와의 협의 및 승인 절차와 재정 법령에 따른 회계 규정에 따라 이월 처리가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해외 세종학당 교원파견을 위한 비자발급, 학사 일정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년도 이월집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3)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일부)]

- ☐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2017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비의 주체, 지급대상, 사용용도 등 성격상 준용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본 지침을 적용하며, 기타공공기관은 본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세종학당지정 및 운영지원 사업의 경우 상당수 지출이 1일 차이인 2018년 1월 1일에 이루어졌는데, 사업 추진 지연이나 사업기간 연장과 달리 기관에서 연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고유사업은 사전 예측을 통한 조기집행 노력으로 이월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월 처리하지 않는 회계 처리 예시]

(단위: 천원)

세사업명	예산과목	결의일자	지출액	지출사유
세종학당 지정 및 운영지원	시설비	2018/01/01	123,293	거점 학당 시설 사업 관리 용역 비용 지급 등
	국외여비	2018/01/01	2,895	거점 학당 설립 관련 출장 항공권 및 체재비
	연구개발비	2018/01/01	14,950	세종학당 결혼이민자 발전방안 연구용역 잔금 지급
	일반수용비	2018/01/01	16,170	거점 학당 문화 교구 구입
	일반용역비	2018/01/01	77,461	거점 학당 2차 시설 공사 시공 용역 및 설계 사업 등
	연구개발비	2018/02/22	72,600	브랜드 통합에 따른 세종학당 내실화 발전전략 연구용역 잔금 지급
누리- 세종학당 구축 및 운영	연구개발비	2018/01/01	96,683	2017년 세종학당재단 전자문서 결재 시스템 고도화 사업 용역대금 및 조 달수수료 지급 등
한국어교원 해외 파견	일반용역비	2018/01/01	19,900	연장 교원 국내교육 운영 용역비
	일반용역비	2018/01/26	113,732	파견교원 지원을 위한 한국어교재 및 지침서, 전용 외국어 학습 사이트 구축 용역비, 신규 파견 교원 국내 교육 운영 용역비 등 지급
	일반용역비	2018/02/21	21,870	2018년 연장 파견교원대상 해외재교 육운영용역추진에따른용역비정산
	국외여비	2018/02/27	2,263	2017년 해외 파견 한국어교원 하반기 취업비자 발급 비용 정산

자료: 세종학당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재단은 보조금 이월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회계 처리 과정에서 이월 규정을 준수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의전당에 지원하는 예산사업은 예술의전당 지원과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사업이 있다. 예술의전당 지원 사업은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상비 및 사업비를 보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사업¹⁾의 내역사업이다.²⁾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사업³⁾은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예술의전당 내 노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예술의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개 사업을 통해 교부받은 2017년 예산 115억 6,900만원에 전년도이월액 7억원을 더한 예산현액 122억 6,900만원 중 119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5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다. 불용액은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절감액이다.

[2017회계연도 예술의전당 정부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83,612	83,612	0	0	83,612	83,612	0	0
예술의전당 지원	7,069	7,069	0	0	7,069	7,069 (6,778)	0	0 (291)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4,500	4,500	700	0	5,200	5,200 (5,186)	0	0 (14)
계	11,569	11,569	700	0	12,269	12,269 (11,964)	0	0 (30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윤희호 예산분석관(yoonhh@assembly.go.kr, 788-4683)

1) 코드명: 일반회계 1631-300

2) 이 사업은 과목구조개편으로 2018년 예산안부터 문화예술단체운영지원 세부사업(코드명: 일반회계 1631-300)에서 분리되어 예술의전당 지원(1631-304) 세부사업으로 신설되었다.

3) 코드명: 일반회계 1636-301

나. 분석의견

첫째, 공연·전시사업 등 예술사업의 실적 부진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임대 보증금을 전액 소진하여 손실을 충당하였다.

예술의전당의 2017년도 수입·지출 결산 총계 내역을 보면, 당초 국고보조금과 공연사업 등 수입과 운영비 지출의 수지 균형을 달성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국고보조금과 공연사업·대관사업 등 자체사업을 통한 수입액 399억 800만원보다 사업비·운영비 등으로 발생하는 지출액이 432억 7,400만원으로 33억 6,600만원의 결산상 손실이 발생하였다. 결산상 손실은 대부분 공연사업(계획 25억 300만원, 실제 3,000만원)과 전시사업(계획 7억 6,100만원, 실제 △5억 8,000만원)의 실적부진으로 발생한 것이다.

[예술의전당 수입·지출 총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계획			2017년 집행		
	수입(A)	지출(B)	손익(A-B)	수입(A)	지출(B)	손익(A-B)
합 계	49,989	49,989	0	39,908	43,274	△3,366
□ 국고보조금	11,569	0	11,569	11,264	0	11,264
□ 사업	38,420	16,703	21,717	28,645	12,241	16,404
- 공연사업	7,682	5,179	2,503	4,633	4,603	30
- 전시사업	3,315	2,554	761	821	1,401	△580
- 교육사업	3,808	2,358	1,450	3,168	1,805	1,363
- 대관사업	11,527	1,323	10,204	11,292	1,084	10,208
- 부대사업	6,505	5,289	1,216	4,172	3,348	824
- 임대사업수입	4,222	0	4,222	4,264	0	4,264
- 기타수입	1,361	0	1,361	295	0	295
□ 운영비	0	33,286	△33,286	0	31,034	△31,034
- 관리운영비	0	2,553	△2,553	0	2,141	△2,141
- 경상운영비	0	12,691	△12,691	0	11,938	△11,938
- 공간유지비	0	18,006	△18,006	0	16,955	△16,955
□ 예비비	0	36	△36	0	0	0
※ 이월금(국고)	700	700	0	700	700	0

주: 1. 국고보조금 수입은 예술의전당 지원과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2개 사업예산의 합

2. 이월금(국고)은 합계에서 제외

자료: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의 결산상 손실은 전년도(△34억 2,000만원)와 올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전년도에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부대사업 중 식음료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영업손실이 일시적으로 발생⁴⁾한 반면, 2017년에는 공연·전시사업 등 예술사업의 실적 부진이 손실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예술의전당 손실 현황]

(단위: 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당기 결산상이익(손실)	1,920	93	66	△3,420	△3,366
결산잉여금(누적손실)	△2,186	△2,095	△2,029	△5,449	△8,815

자료: 예술의전당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예술의전당은 해당 손실을 사업수익 개선 또는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만회하지 않고 시설 내 매장 또는 부지 임대계약을 통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도 말 기준 예술의전당이 보유한 임대보증금은 76억 2,200만원인데, 해당 자금을 현금화하여 결산잉여금 누적손실분에 모두 충당하여 전액 소진한 상황이다.

임대보증금은 예술의전당이 보유한 부채이자 유동자산으로서 임대계약 만료시 임차인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것이고, 수지 적자를 이유로 해당 자금을 현금으로 전환하여 다른 지출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임대차 재계약 또는 신규계약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증금 시세 하락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필요한 차입도 이루어질 여지가 있으며, 재계약 과정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되어 추가 자금이 확보되더라도 예술의전당의 수지 구조의 근본

4)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식음료사업은 민간위탁하여 철수(2016년 말)하여 현재 야외 식음료 행사만 진행 중이다.

[부대사업 중 식음료사업 수입지출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수입(결산)					지출(결산)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부대사업 계	10,602	9,940	10,136	5,729	4,171	7,139	7,601	8,840	5,441	3,348
- 식음료	6,028	5,599	5,504	1,266	150	5,208	4,845	4,675	1,199	31

자료: 예술의전당

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예술의전당의 적자 보전을 위한 추가적인 국고보조금 집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둘째, 누적손실 만회를 위한 예술의전당 자구계획이 예술의전당의 공익적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예술의전당의 사업은 크게 예술사업(공연·전시·교육사업), 대관사업, 부대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예술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⁵⁾에 따라 예술의전당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공연, 음악, 미술 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고유목적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임대사업은 공연장 5개와 미술관 3개를 민간에 임대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이다.

각 사업의 수입지출현황을 보면, 예술사업은 지출 대비 수입이 연 10억원 내외를 초과하고 있으나, 기관 운영에서 발생하는 운영비(2017년 기준 310억 3,400만원)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다. 반면, 대관사업은 예술사업에 비하여 비용대비 수익 비율(ROI)이 우월하다.

[예술사업의 수입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	구분	수입(결산)					지출(결산)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술사업	공연	1,192	1,309	1,903	1,553	1,641	1,845	1,681	2,079	1,949	2,522
	음악	2,609	2,624	2,368	2,814	2,992	2,474	2,052	1,755	1,929	2,081
	미술	675	1,778	1,517	959	625	318	536	809	924	766
	서예	32	2	14	148	196	44	30	27	702	634
	교육	3,148	3,063	3,046	2,906	3,168	1,694	1,736	1,751	1,885	1,805
합계		6,521	7,727	7,817	7,490	7,471	6,694	6,313	6,685	7,520	8,020

자료: 예술의전당

5) 「문화예술진흥법」

제37조(예술의 전당) ① 문화예술을 창달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술의 전당을 둔다.

② 예술의 전당은 법인으로 한다.

③ 예술의 전당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국가는 예술의 전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예술의 전당에 무상으로 양여(양여)할 수 있다.

⑤ 예술의 전당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관사업의 수입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	구분	수입(결산)					지출(결산)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	2014	2015	2016	2017
대관 사업	음악당	4,313	4,571	4,633	4,522	4,297	396	477	511	478	483
	오페라하우스	3,393	3,388	3,507	3,979	3,635	360	420	443	529	502
	한가람미술관	1,295	1,847	1,912	2,058	2,208	106	64	38	56	49
	디자인미술관	1,053	906	860	433	702	6	10	9	15	20
	서예박물관	213	77	0	112	397	5	4	2	45	30
	기타	0	0	0	0	53	2	0	0	0	0
합계		12,280	12,803	12,927	13,120	13,256	2,886	2,989	3,018	3,139	3,101

자료: 예술의전당

예술사업과 대관사업은 공연장·미술관 공간사용을 두고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에 있다. 예술사업을 줄이고 대관사업을 늘리면 그만큼 수익이 증가하여 결산 손실을 만회할 수 있으나, 문화예술을 창달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설립된 예술의전당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2016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시정조치사항을 보면 기관의 손실발생을 우려하면서도 수익사업 치중에 대하여는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6년도 예술의전당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일부)]

○ 수익사업에 열중하기보다는 공연을 개발하고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예술의전당 현재 경영상황을 진단하고, 손실의 지속적인 발생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자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그럼에도 예술의전당 2018년도 수입계획을 보면, 대관사업의 수입목표를 129억 1,700만원으로 설정하여 2017년(112억 9,200만원)보다 16억 2,500만원을 초과하여 달성하려는 계획이다. 예술사업과 대관사업의 상충성을 고려할 때 대관사업 수입목표의 달성이 예술사업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예술의전당의 2017, 2018년도 수입계획 및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	세부사업	2017년 (예산, A)	2017 (결산)	2018년 (예산, B)	B-A
예술사업	공연기획	3,635	1,641	1,553	△2,082
	음악기획	4,047	2,992	3,095	△952
	미술기획	1,905	625	1,600	△305
	서예기획	1,410	196	80	△1,330
	교육사업	3,808	3,168	3,620	△188
	소계	14,805	8,622	9,948	△4,857
부대사업	식음료	330	150	550	220
	주차	2,982	2,392	2,820	△162
	대표시스템운영	1,194	332	100	△1,094
	회원제	720	640	730	10
	영상화	150	0	100	△50
	후원활성화사업	939	488	610	△329
	아트샵운영	190	169	144	△46
	기타	0	0	10	10
	소계	6,505	4,171	5,064	△1,441
대관사업	음악당 대관	4,908	4,297	4,949	41
	오페라하우스 대관	3,850	3,635	4,683	833
	한가람미술관 대관	2,111	2,208	2,569	458
	디자인미술관 대관	455	702	550	95
	서예박물관 대관	202	397	124	△78
	컨퍼런스홀 대관	0	53	42	42
	소계	11,526	11,292	12,917	1,391

자료: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은 자체수입과 국고보조금에 맞추어 지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비만 무리하게 감축할 경우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기관 고유 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규 수익사업의 발굴 또는 새로운 재원 마련 등 예술의전당의 수지구조 개선 노력과 예술사업 적정투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4-1. 국악방송 전국화 사업의 한계 분석

가. 현 황

국악방송 전국화 사업은 국악방송 가청지역을 확대하여 전 국민에게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악의 대중화와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송망 확장사업으로서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사업¹⁾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된 국악방송 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재단법인 국악방송은 국민을 대상으로 국악 및 한국전통문화예술의 홍보·보급·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설립(2000년 2월 14일)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이 사업 예산 9억 9,200만원을 재단법인 국악방송에 보조금으로 교부하였으며 재단법인 국악방송은 자산취득비 및 임차료 지출을 조정하여 1억 5,200만원을 감액한 예산현액 8억 4,000만원 중 8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다.

[2017회계연도 국악방송 전국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83,612	83,612	0	0	83,612	83,612	0	0
국악방송 지원	7,746	7,746	0	0	7,746	7,746	0	0
국악방송 전국화	992	992	0	0 (△152)	992 (840)	992 (838)	0	0 (2)

주: 괄호 안은 실집행액, 실제 불용액을 의미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윤희호 예산분석관(yoonhh@assembly.go.kr, 788-4683)

1) 코드명: 일반회계 1631-300

국악방송은 지난 2001년 서울/경기를 시작으로 현재 12개 권역에서 송출 중으로 2017년에는 충청권 거점방송국인 대전국악방송을 개국(2017년 7월 14일)하였는데, 주파수 FM 90.5MHz를 확보하여 대전시 일원 세종시 일부 가칭인구수²⁾ 152만 명을 대상으로 방송 송출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가칭인구수는 3,348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약 4,800만 명) 대비 69.7%의 서비스율을 달성하였다.

[국악방송 전국화 실적]

구분	국악 방송	남원 보조국	남도 보조국	경주 보조국	전주 보조국	부산 보조국	강릉 보조국	대구 보조국	광주 국악 방송	제주, 서귀포 보조국	대전 국악 방송	
방송 구역	서울 경기	남원 일원	남도 일원	경주, 포항	전주 일원	부산 일원	강릉 일원	대구 일원	광주 일원	제주 일원	대전 일원	
개국일	'01. 3. 1	'01. 6. 1	'06. 7. 6	'10. 4. 7	'11.1 0.27	'11.1 1.08	'12.1 2.14	'12.1 2.30	'14. 3.26	'15.1 2.29	'17. 7.14.	
가칭 인구 (만명)	2,000	23	47	82	132	336	50	335	130	61	152	
누적 인구 (만명)	2,000	2,023	2,070	2,152	2,284	2,620	2,955	3,005	3,135	3,196	3,348	
서비 스율	55%											
	62.6%											
	65.3%											
	66.5%											
	69.7%											

주: 1. 서비스율 = 누적인구수 ÷ 총인구수(4,800만명)

2. 지상파방송보조국이란, 지상파방송국 방송권역 내 난청해소를 위해 설치하는 중계시설임

자료: 재단법인 국악방송

나. 분석의견

현재 라디오 중심의 국악방송 전국화 사업이 주파수 확보 문제로 한계가 있으므로 가칭인구수 확대를 위하여 방송매체의 다양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가칭인구수란, 송출된 방송 주파수에 대하여 수신·청취가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청취 인구수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재단법인 국악방송이 설립된 이후 12개의 국악방송 및 방송보조국을 설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누적 가청인구수가 3,348만명, 서비스율은 69.7%로 전국화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런데 현재 FM주파수 대역(88~108MHz)은 각 지역별로 대부분 포화상태에 있어 신규 주파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가용주파수가 있더라도 인접채널과의 혼신문제로 광범위한 방송권역에 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악방송은 최근 광주국악방송(2014년 개국) 및 대전국악방송(2017년 개국)의 송신소를 도심지역 고층빌딩으로 지정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주파수를 확보³⁾해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방송 중이며, 2017년 대전국악방송의 경우 인근 지역과의 주파수 혼선 문제로 인하여 가청인구수 확대가 152만명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악방송 방송권역 및 주파수 현황]

구분	국악방송	광주국악방송	대전국악방송	부산 보조국	대구 보조국	전주 보조국	경주 보조국	강릉 보조국	남도 보조국	남원 보조국	제주 보조국	서귀포 보조국
방송권역	서울·경기 일부	광주 일원	대전 일원, 세종시 일부	부산, 김해	대구, 경산, 영천	전주, 익산, 김제	경북 포항, 경주	강릉 일원	전남 진도, 목포	전북 남원 일원	북제주	남제주
주파수	FM 99.1	FM 99.3	FM 90.5	FM 98.5	FM 107.5	FM 95.3	FM 107.9	FM 103.3	FM 94.7	FM 95.9	FM 91.3	FM 106.9

자료: 재단법인 국악방송

3) [방송국 허가절차]

구분	방송국	방송보조국
허가 주무부처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 전파관리소)
사업자	① 사업추진의 타당성검토 (개설에 따른 효과 등 검토) ② 설치환경 검토 (가용주파수, 설치장소 및 예산 등) ③ 허가신청서 작성	① 사업추진의 타당성검토 (개설에 따른 효과 등 검토) ② 설치환경 검토 (가용주파수, 설치장소 및 예산 등) ③ 허가신청서 작성

자료: 재단법인 국악방송

국악방송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공공재적 성질을 고려할 때, FM 가용주파수 고갈이라는 기술적 문제로 전 국민에게 공평한 전통음악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 재단법인 국악방송은 대안으로서 주파수 혼선 등의 위험요소에서 다소 안전한 도심지역 고층 건물에 송신시설을 설치하고 인구밀집지역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국화사업 추진하며, 비가청권역 지역민을 위하여는 인터넷 방송(www.gugakfm.co.kr)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⁴⁾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나, 현재 라디오 중심의 전국화 사업을 통한 가청인구수 확대의 근본적 해결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재단법인 국악방송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방송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 라디오 중심의 국악방송 전국화 사업의 추진 방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⁵⁾

24-2. 국악방송의 연말 자산취득 집행 부적정

가. 현 황

국악방송 지원 사업은 재단법인 국악방송(이하 “국악방송”이라 한다)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사업⁶⁾의 내역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인건비, 경상운영비 외 사업비로 38억 1,500만원⁷⁾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설운영비, 노후장비교체, 인터넷방송서비스, 국악방송 전국화, 국악콘텐츠 영상화, 다목적공개홀 구축 등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사업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방송 장비의 신규 구축이나 교체 등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각각 계상되어 있는데, 재단법인 국악방송은 2017년 해당 사업비에 편성된 자산취득비 비목 예산 18억 200만원 중 17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다.

4) 국악방송 라디오 덩더쿵, 우리악기 톨아보기 등

5) 이에 대하여 재단법인 국악방송은 오디오 서비스인 라디오방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통문화예술전문 영상채널’ 개설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6) 코드명: 일반회계 1631-300

7) 재단법인 국악방송 3차 이사회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승인(2017. 12. 18)을 예산 기준이다.

[2017회계연도 국악방송 지원 사업 중 자산취득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 예산액	자산취득비			
		예산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방송시설운영	1,570	15	15	0	0
노후장비 교체	445	445	442	0	3
인터넷방송 서비스	200	0	0	0	0
국악방송 전국화	840	757	757	0	0
국악콘텐츠 영상화	295	265	264	0	1
다목적 공개홀 구축	465	320	318	0	2
합 계	3,815	1,802	1,796	0	6

자료: 재단법인 국악방송

나. 분석의견

국악방송 지원 사업 중 자산취득비 비목을 통해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자산취득 집행 시점을 보면, 연말 자산취득 집행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자산 취득의 불요불급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자산에 대한 집행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국악방송이 자산취득비 비목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일자별로 보면, 12월 마지막 주인 26일부터 29일 사이에 집행한 예산액은 5억 6,881만원으로 자산취득비 예산액 18억 200만원 대비 31.4%, 집행액 17억 9,526만원 대비 31.7%를 차지하고 있다.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중 12월말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사업명	예산액 (A)	집행액 (B)	12월말 집행액(C)	C/A	C/B
방송시설운영	15,000	14,544	5,066	33.8	34.8
노후장비 교체	445,000	442,455	323,712	72.7	73.2
인터넷방송 서비스	0	0	0	0.0	0.0

(단위: 천원, %)

사업명	예산액 (A)	집행액 (B)	12월말 집행액(C)	C/A	C/B
국악방송 전국화	757,000	756,620	0	0.0	0.0
국악콘텐츠 영상화	265,000	263,699	85,953	32.4	32.6
다목적 공개홀 구축	320,000	317,937	154,074	48.1	48.5
합 계	1,812,000	1,795,255	568,805	31.4	31.7

자료: 재단법인 국악방송

2017년 12월 연말 4일 동안 전체 자산취득비의 3분의 1 수준이 집행된 점에 대하여 국악방송은 5월 전시회 일정에 맞추어 구매자산의 사전기술검토와 입찰, 수입통관 등 사업과정상 일정기간 시일이 소요되어 집행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불가피한 경향이 있으며, 특히 2017년의 경우는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적인 사업비 조정 검토 등의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어 예년보다 지연되었다는 설명이다.⁸⁾⁹⁾

다만, 2017년 예산에 편성된 자산취득비는 원칙적으로 국악방송이 해당 연도 사업 추진과정에 소요되는 방송 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이며, 사실상 구매자산이 2018년에 사용될 것으로서 2018년도 예산으로 집행하여도 무방하다는 점에 비추어 적정한 예산집행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연말 집행비율이 73.2%로 높게 나타난 노후장비 교체 사업은 방송국 및

- 8) 국악방송은 노후장비교체, 전국화, 국악콘텐츠 영상화, 다목적 공개홀 구축은 신규 구축 및 노후된 방송 장비 교체 성격의 사업인데, 국내 방송 산업이 취약하여 취득자산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제작, 수입되어 납품기간이 길고 상당기간 기술검토가 필요하였고, 입찰 기간(약 2개월 정도)과 해외장비의 제작 및 납품기간(1~3개월 정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최소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게 되는 장비의 특성상 급변하는 방송시장에서 충분한 기술적 검토가 수반된 개선된 장비의 도입이 중요하여 5월 전시회를 통해 각종 방송장비에 대한 도입 검토를 하게 되었다는 입장이다.

[방송자산 구매 추진과정]

- 4월~5월 : 국제 및 국내 방송장비전시회 참여
- 6월 : 데모 장비를 통한 성능 테스트 등
- 7월 : 구매 장비 확정 후 순차적 입찰 추진
- 8월~9월 : 사업자 선정 후 발주
- 10월~12월 : 설치 및 운용 검수

자료: 재단법인 국악방송

- 9) 미국에서 매년 4월에 열리는 “국제방송장비 전시회(NAB Show)”에서 신제품 또는 개선된 제품이 전시되고, 이후 국내시장에는 매년 5월 중순경 열리는 “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전시회(KOBA Show)”에서 국내에 소개되고 있다.

송신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주기적인 장비교체(지역국 오디오 파일 시스템 교체, 주조정실 통합감시시스템 도입 등)를 위한 예산인데, 연말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자산 구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악방송은 필요한 자산 구매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연중에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지출하는 등 지출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송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매를 자산취득 비목이 아닌 일반수용비로 집행하는 것은 예산지침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악방송은 내부 규정인 「회계규정」에 따라 예산과 회계를 처리하며, 규정에 의한 시행세칙 및 요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부회계 관계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자산취득비는 건물, 차량, 사무용집기 등 내구성물품 구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목인데, 구체적으로 상용 SW 등 프로그램 구입비도 자산취득비 집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⁰⁾

10) [자산취득비(430-01) 구분]

9. 전산 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비 - 정보시스템구축에 필요한 HW, 상용 SW, NW(네트워크장비) 등 구입비

자료: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p. 344) 일부

[국악방송 지원 사업 중 소프트웨어 구매 내역]

(단위: 원)

사업명	지출내역	일자	집행액	비목
국악콘텐츠 영상화	영상스트리밍 서비스용 소프트웨어 구매	17/02/22	629,200	자산 취득비
	영상제작 및 송출을 위한 오디오, 비디오 통합CMS 소프트웨어 구매	17/12/28	19,800,000	자산 취득비
노후장비교체	재난방송용 문자음성변환 소프트웨어 구매	17/09/27	2,900,000	자산 취득비
인터넷 방송서비스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17/08/01	4,079,680	일반 수용비
	2017년 인터넷 방송을 위한 정품 소프 트웨어 구매	17/12/26	897,600	일반 수용비
	2017년 인터넷 방송을 위한 정품 소프 트웨어 구매	17/12/26	16,473,600	일반 수용비

자료: 재단법인 국악방송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악방송은 인터넷방송 서비스 사업에서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예산 2,157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는데, 이는 예산지침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태권도원 상징지구 조성사업은 태권도원 상징지구(전라북도 무주군 소재)에 태권전과 명인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태권도진흥재단 운영(보조) 지원 사업¹⁾의 내역사업이다. 구체적으로 태권전은 수련생들의 교류장소로서, 명인관은 태권도 고단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공간으로서 조성될 예정이며 태권도진흥재단이 사업시행자로서 추진한다.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태권도공원의 조성·운영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기타공공기관이다.²⁾

[태권도원 상징지구 조성사업 개요]

- 사업명: 태권도원 상징지구 조성
- 기 간: 2018년 3월 ~ 2020년 12월(34개월)
- 장 소: 태권도원 상징지구(태권전, 명인관 부지)
- 면 적: 1,455㎡[태권전 363㎡(110평), 명인관 1,092㎡(331평)]
- 사업예산: 176억원(태권전 기 시공비 22억원 포함)

윤희호 예산분석관(yoonhh@assembly.go.kr, 788-4683)

1) 코드명: 국민체육진흥기금 5361-307

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① 공원의 조성·운영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공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태권도 보존·보급·홍보에 관한 사업
4. 태권도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5. 공원시설 임대에 관한 사업
6. 태권도 용품·콘텐츠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 지원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잔여예산 154억원: 시설비 144억 3,100만원, 설계비 7,100만원,
감리비 8억 6,700만원, 시설부대비 3,100만원
- * 세부내역금액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 시설개요

구분	태권전	명인관																																													
성격	○ 태권도의 철학과 정신세계를 상징적으로 구현 ○ 태권도 관련 의식(儀式) 및 수련생들의 교류장소	○ 고단자들을 위한 수련 및 커뮤니티 공간																																													
주요 시설	○ 한국 전통의 ‘마당’ (체험공간)과 ‘대청마루’(의식 공간)로 구성	○ 고단자 명상 수련실, 고단자 커뮤니티 공간, 연회장 (리셉션 홀), 수련장(야외) 등																																													
	[부지 3,180㎡(964평) / 연면적 363㎡(110평)]	[부지 6,497㎡(1,969평) / 연면적 1,092㎡(331평)]																																													
	<table><tr><th>구분</th><th>연면적(평)</th><th>비 고</th></tr><tr><td>평삼문</td><td>15.84㎡(5평)</td><td></td></tr><tr><td>회랑</td><td>119.52㎡(36평)</td><td></td></tr><tr><td>태권전</td><td>227.52㎡(69평)</td><td>방(36㎡)×2개소, 대청마루</td></tr><tr><td>계</td><td>362.88㎡(110평)</td><td></td></tr><tr><td>기계전기, 발전기실</td><td>346.35㎡(105평)</td><td>연면적 제외</td></tr></table>	구분	연면적(평)	비 고	평삼문	15.84㎡(5평)		회랑	119.52㎡(36평)		태권전	227.52㎡(69평)	방(36㎡)×2개소, 대청마루	계	362.88㎡(110평)		기계전기, 발전기실	346.35㎡(105평)	연면적 제외	<table><tr><th>실 명</th><th>연면적(평)</th><th>비 고</th></tr><tr><td>연회장</td><td>270.00㎡(82평)</td><td></td></tr><tr><td>수련실(A)</td><td>75㎡(15㎡(5평)×5개소)</td><td>개인화장실 포함</td></tr><tr><td>수련실(B)</td><td>163㎡(12㎡(4평)×7개소, 15㎡(5평)×1개소, 64㎡(20평)×1개소)</td><td>공동화장실 사용</td></tr><tr><td>누 각</td><td>109.80㎡(33평)</td><td></td></tr><tr><td>화 장 실 / 샤워 실 / 탈의실</td><td>171.53㎡(52평)</td><td></td></tr><tr><td>커뮤니티실</td><td>131.76㎡(40평)</td><td></td></tr><tr><td>삼문</td><td>19.44㎡(6평)</td><td></td></tr><tr><td>계</td><td>1,091.78㎡(331평)</td><td>복도면적 (156.25㎡) 포함</td></tr></table>	실 명	연면적(평)	비 고	연회장	270.00㎡(82평)		수련실(A)	75㎡(15㎡(5평)×5개소)	개인화장실 포함	수련실(B)	163㎡(12㎡(4평)×7개소, 15㎡(5평)×1개소, 64㎡(20평)×1개소)	공동화장실 사용	누 각	109.80㎡(33평)		화 장 실 / 샤워 실 / 탈의실	171.53㎡(52평)		커뮤니티실	131.76㎡(40평)		삼문	19.44㎡(6평)		계	1,091.78㎡(331평)	복도면적 (156.25㎡) 포함
	구분	연면적(평)	비 고																																												
	평삼문	15.84㎡(5평)																																													
	회랑	119.52㎡(36평)																																													
태권전	227.52㎡(69평)	방(36㎡)×2개소, 대청마루																																													
계	362.88㎡(110평)																																														
기계전기, 발전기실	346.35㎡(105평)	연면적 제외																																													
실 명	연면적(평)	비 고																																													
연회장	270.00㎡(82평)																																														
수련실(A)	75㎡(15㎡(5평)×5개소)	개인화장실 포함																																													
수련실(B)	163㎡(12㎡(4평)×7개소, 15㎡(5평)×1개소, 64㎡(20평)×1개소)	공동화장실 사용																																													
누 각	109.80㎡(33평)																																														
화 장 실 / 샤워 실 / 탈의실	171.53㎡(52평)																																														
커뮤니티실	131.76㎡(40평)																																														
삼문	19.44㎡(6평)																																														
계	1,091.78㎡(331평)	복도면적 (156.25㎡) 포함																																													

자료: 태권도진흥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7년도 결산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권도원 상징지구 조성 사업을 위한 예산액 70억원을 재단에 교부하였는데, 재단을 이를 전액 이월 처리하였다.

[2017회계연도 태권도진흥재단 운영(보조)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태권도진흥재단 운영(보조) 지원	25,239	25,239	0	0	25,239	25,239 (17,683)	0 (7,303)	0 (253)
태권도원 상징지구 조성	7,000	7,000	0	0	7,000	7,000 (0)	0 (7,000)	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태권도원 상징지구 조성사업 예산 전액이 이월 처리되어 집행이 부진하므로,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

2017년 당시 태권도원 상징지구 조성사업비 총 176억원 중 기부금 등으로 확보한 26억원을 제외한 예산 150억원이 필요하였는데, 이 중 70억원이 2017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으로 반영되었으며, 기획재정부는 매칭사업비(지자체 30억원, 태권도단체 50억원)의 확보를 조건으로 하여 해당 사업을 수시배정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였다.

[태권도원 상징지구 조성사업 재원조성 계획]

(단위: 억원)

구분	사업비	국비 지원	국비 지원을 전제로 지원·기부 조건			기부금 (모금액)
			지자체	태권도 단체	소계	
금액	176	70	30	50	80	26

자료: 태권도진흥재단

그러나 지자체, 태권도단체의 매칭사업비 조성이 늦어짐에 따라 연말(12월 29일)에서야 국고보조금이 재단에 교부되었고, 재단은 이를 집행하지 못하여 전액 이월 처리된 것이다.

[태권도원 상징지구 조성사업 추진 및 자원조성 경과사항]

- (상징지구 조성 추진) 2015년 10월, 태권도단체 및 지자체에서 80억원 기부 결정
- (자문회의 및 추진 협의체 운영) 상징지구 사업 추진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 (총 11회, '15.10.~'17.9.)
- (국비 지원 확정) 2016년 12월, 상징지구 사업 예산 국회 승인
 - 태권도 단체 및 지자체 80억원 기부 시 국고 70억원 지원 조건
- (매칭사업비 확보) 2017년 12월 수시배정 요건 해소 완료
 - 전북도·무주군 30억 교부(2017.6.21, 12.4.)
 - 국기원 30억(2017.12.15.), 대한태권도협회 20억(2017.12.20.) 기부 완료
- (국고보조금 교부) 문체부 사업승인(2017.12.22.) 및 국고 70억 교부 (2017.12.29.)

자료: 태권도진흥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매칭사업비 확보와 국고보조금 교부가 지연됨에 따라 건축인허가 및 시공사 선정이 순연되어 2017년 예산으로 편성된 시설공사가 2018년 하반기 이후에 착공 가능하고 준공은 2020년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태권도원 상징지구 조성사업 향후 추진 계획]

가. 2018년도 추진경과

- '18. 3월 2주: 원가계산 및 인허가 용역사(3개사) 선정 계약요청
 - ※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정보통신공사업법 25조에 따른 전기/통신 분리 발주
- '18. 3월 3주: 원가계산 및 인허가 용역사(건축, 전기, 통신) 선정 완료
- '18. 3월 4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원가계산 및 인허가 도서작성 진행(2개월)
- '18. 4월 3주: 경제성검토(설계VE) 업체 선정 완료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총공사비 100억이상 건설공사)
 -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국토부고시제2013-544호)
- '18. 4월 4주: 경제성검토(설계VE) 업체 미팅 및 용역 진행(1개월)
 - ※ 상징지구 활용방안 및 용도에 대한 재단 의견수렴 완료
- '18. 5월 3주: 경제성검토(설계VE) 완료
- '18. 5월 4주: 경제성검토(설계VE)안을 반영한 내역변경 완료

나. 향후 추진계획

- '18. 6월 1주: 건축인허가(무주군) 신청, 감리용역사 및 시공사 선정(조달청) 진행
 - 감리용역사 선정방안(건설, 전기, 통신 분담이행방식)
 - ※ 조달청 계약의뢰(일반경쟁(PQ)입찰 / 적격심사 낙찰제)
 - ※ 건설감리용역(감리원 상주, 감독권한 제외 책임감리)
 - 시공사 선정방안(건설, 전기, 통신 분리발주)
 - ※ 조달청 계약의뢰(적격심사 낙찰제)
- '18. 8월 2주: 건축인허가 완료
- '18. 8월 4주: 감리용역사 및 시공사 선정 완료
- '18. 9월 1주: 공사 착공 및 설계변경(목재 수급기간 내) 진행
- '20. 11월 4주: 준공
- '20. 12월 4주: 사용승인 및 잔손보기 완료

자료: 태권도진흥재단

향후 재단 및 문화체육관광부는 더 이상 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코리아둘레길 조성사업은 동·서·남해안 및 DMZ 접경지역 등 우리나라 외곽의 기존 걷기여행길을 연결하여 구축될 초장거리 걷기여행길(코리아둘레길)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¹⁾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사업 예산 15억원을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보조금으로 교부하였으며, 공사는 이 중 14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4,9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다.

[2017회계연도 코리아둘레길 조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한국형 생태녹색 관광 육성	7,231	7,231	0	0	7,231	6,730	-	501
코리아 둘레길 조성	1,500	1,500	0	0	1,500	1,451	0	49

주: 코리아둘레길 조성 사업은 2017년도 예산에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 지원(4264-309)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2018년도 예산부터는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사업으로 이관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²⁾를 개최하여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9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코리아둘레길을 대한민국 대표콘텐트화하기로 결정하였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 동·서·남해안과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등 약 4,500km의 한반도 둘레를 하나로 잇는 걷기여행길인 “코리아둘레길”을 조성하여 산티아고 순례길과 같은 세계적 명품 걷기여

윤희호 예산분석관(yoonhh@assembly.go.kr, 788-4683)

1) 코드명: 관광진흥개발기금 4161-309

2)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정책, 질적으로 전환한다」, 2016. 6. 17.

행길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코리아둘레길은 정부주도 방식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문화·관광·지역문화·환경·생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향식으로 조성하고, 전통시장과 지역관광명소와 연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코리아 둘레길 추진계획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최근 10년간 국내 걷기여행길의 양적 증가와 걷기를 목적으로 한 새로운 여행 문화 확산으로 장거리 걷기여행길의 수요 증가
 - * 현재 전국적으로 약 600여개 길, 18,000km의 걷기여행길 조성
- 국토를 순환하는 초장거리 걷기여행길 조성으로 국제적인 걷기여행 명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 주요내용

- (코리아둘레길 조성) 동·서·남해안 및 DMZ 접경지역 등 한반도 둘레를 잇는 약 4,500km의 ‘코리아둘레길’ 조성
 - 현재 동해안의 해파랑길, DMZ 지역의 평화누리길, 해안누리길 등을 연결하여 전국 규모의 걷기여행길 네트워크 구축
- (국민참여형 조성·운영) 노선 설정부터 한국 대표 브랜드 정착까지 지역주민, 동호인, 역사·지리전문가 등 국민참여형 프로젝트로 추진
-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특성의 관광콘텐츠 및 스토리 발굴, 주요 루트별 핵심거점 선정 및 관광명소 연계 등 체류형 관광 유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정책, 질적으로 전환한다」(2016. 6. 17.)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에 코리아둘레길 조성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코리아둘레길 기본방향을 수립하면서 당초 2019년까지 3개년 사업에서 20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조정하였다. 2017년도 사업 첫해에는 7월 25일에 코리아둘레길 민간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제1회 회의를 개최³⁾하고, 9월 4일에 명칭 대국민 공모 사업 결과 발표⁴⁾, 11월 3일에 ‘코리아둘레길 브랜드 선포식’과 ‘코리아둘레길 사업에 대한 대국민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11월 4일부터 코리아둘레길 남해안(부산-순천) 유력노선(안) 국민참여모니터링단 모니터링 등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으며, 12월 말 “코리아둘레길 사업 기본방향 수립 및 남해안(부산-순천) 노선 조사 설정” 용역 사업이 완료되었다.

코리아둘레길 사업은 2017년에 코리아둘레길 사업추진 방향성 설정과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 전남 순천까지 약 960km(코리아둘레길 전체 노선의 약 20%에 해당)의 노선(안)이 설정되었다. 전체 구간의 노선조사는 2019년까지 진행되고, 2020년에서 2021년까지는 설정된 노선에 대한 모니터링, 안내체계 구축, 연계 관광 콘텐츠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관리운영체계 구축 등을 진행하며, 2021년에 정식 개통되는 것으로 사업 일정이 수립되어 있다.

나. 분석의견

첫째, 걷기여행길 활성화 사업 및 다른 부처의 유사 걷기여행길 조성사업과 효과적으로 연계·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방안을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이 사업이 속한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사업에는 “걷기여행길 활성화” 내역사업이 편성되어 있으며, 공사는 해당 사업을 통해 2017년 걷기여행축제, 이달의 추천길 등 우리나라 걷기 좋은 길을 추천·선정하거나 전체 걷기여행길을 모니터링 하는 등 걷기여행길 관광콘텐츠화를 위한 기반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다른 부처의 유사 도보거리 조성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산림청, 해양수산

3) 협의회는 걷기, 문화관광, 지역문화, 환경·생태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코리아둘레길 사업의 중요 추진 사항을 심의하는 민간자문기구로서 기능할 예정이다(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코리아둘레길 민간추진협의회 새 출발」, 2017. 7. 25).

4) 한국관광공사, 코리아둘레길 명칭 공모(2017. 9. 7)

부 등 6개 부처가 10개 유형의 5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총 4,70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0,902km를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정 걷기여행길 현황]

(단위: 개, km, 백만원)

부처	길 지정 명칭	사업기간	사업수	연장	총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문체부	문화생태탐방로	09~14	47	1,656	12,226	6,113	6,113
	해파랑길	09~16	1	766	2,594	1,297	1,297
	올림픽아리바우길	15~17	1	132	3,300	1,650	1,650
국토부	누리길	10~17	124	758	77,060	64,378	12,682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10~14	1	329	28,000	14,000	14,000
산림청	숲길	07~16	87	3,087	125,905	63,428	62,477
해수부	해안누리길	10~15	1	505	1,795	1,795	0
행안부	녹색길	11~12	125	1,497	120,400	60,200	60,200
환경부	국가생태탐방로	08~17	121	2,048	82,600	41,300	41,300
	국립공원 둘레길	09~13	3	124	17,030	17,030	0
총계			511	10,902	470,910	271,191	199,719

주: 1. 누리길(국토부), 숲길(산림청), 국가생태탐방로(환경부)는 하나의 길 조성을 여러 단계로 진행함에 따라 사업수와 길수가 상이함
 2. 국립공원 둘레길 중 치악산 둘레길은 2020년 조성완료 예정으로 제외
 3. 부처별 걷기여행길 관련 사업의 성격·내용에 따라 사업비 규모에 차이가 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2017). 「걷기여행길 실태조사 및 효율적 관리운영방안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 중 산림청 숲길과 환경부 국립공원 둘레길은 부처가 직접 조성·관리하며, 대부분의 걷기여행길은 정부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한 후 선정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자체 걷기여행길을 조성 및 관리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걷기여행길은 지자체가 세부구간을 관리하고 한국관광공사, 해양문화재단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광역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부처 길 지정 사업 추진 현황]

부처	길 지정 명칭	사업유형	구성주체	운영주체
문화부	문화생태탐방로	보조	지자체	지자체
	해파랑길	광역체계화/보조	지자체	한국관광공사(광역체계) 지자체(세부구간)
	올림픽아리바우길	보조	지자체	지자체
국토부	누리길	보조	지자체	지자체
	관동팔경 녹색관광길	보조	지자체	지자체
산림청	숲길	직접/보조	산림청/지자체	산림청/지자체
해수부	해안누리길	광역체계화/보조	-	해양문화재단(광역체계) 지자체(세부구간)
행안부	녹색길	보조	지자체	지자체
환경부	국가생태탐방로	보조	지자체	지자체
	국립공원 둘레길	직접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주: 광역체계화 사업유형은 기 조성된 길의 활용 또는 신규 조성을 통해 2개 이상의 광역지역을 연결하거나 테마를 부여하는 사업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2017). 「걷기여행길 실태조사 및 효율적 관리운영방안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조성한 걷기여행길을 더하면 604길, 1,642코스 16,835km에 달하는 상황⁵⁾이므로 걷기여행길의 양적인 측면에서 관리운영의 활성화 등 질적 측면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5) [우리나라 걷기여행길 조성 현황(2016년 기준)]

구분		걷기여행길	코스수	(단위: 개, km) 총연장(km)
중앙부처	문화부	45	247	2,820
	환경부	35	95	1,425
	산림청	40	167	2,011
	국토부	35	81	597
	행안부	77	159	1,329
	해수부	44	52	563
소계		276	801	8,745
지방자치단체		319	791	7,604
기타(민간)		9	50	486
합계		604	1,642	16,83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이러한 관점에서 코리아둘레길 조성 사업은 새롭게 길을 구축하는 양적 확대가 아닌 기존 걷기여행길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전국 단위의 초장거리 걷기여행길 브랜드를 만드는 사업으로서 걷기여행길 환경개선(안내체계 등), 홍보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침체된 기존 걷기여행길을 재활성화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기존 걷기여행길에 대한 관리와 홍보 역할은 그 길을 구축조성한 부처 및 지자체에 있음에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공사가 해당 걷기여행길 중 일부를 선정하여 별도의 걷기여행길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또 다른 중복 투자의 우려는 있다고 보인다. 예를 들면, 산림청의 DMZ트레일길 중 일부를 코리아둘레길로 지정할 경우 동일 걷기여행길에 대한 예산 중복 편성 또는 관리책임의 소재가 모호할 수 있다.

코리아둘레길의 사업범위가 전 국토 걷기여행길에 걸쳐 있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 공사 및 민간추진협의회가 각 노선을 관리하는 다수의 부처 및 지자체 간 조정·연계를 통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코리아둘레길의 브랜드화를 위해 질적 측면에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요 확보를 위한 사업 홍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코리아둘레길 사업은 초장거리 걷기여행길을 구축하려는 것으로서 부분적 코스 소개 이외에 4,500km에 달하는 코리아둘레길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도록 단일의 상징성과 역사·문화 등 콘텐츠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공사는 코리아둘레길을 “산티아고 순례길”과 같은 국가적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산티아고 순례길이 199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종교적·문화적 콘텐츠를 지닌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4,500km에 달하는 코리아둘레길에 대하여 전체 코스를 포괄하는 단일의 문화적 가치나 상징성을 구성하지 못하고, 개별 걷기여행길 코스에 이미 구성된 콘텐츠를 단순 취합하는 것은 사업 효과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코리아 둘레길 조성사업의 특징 중 하나로서 노선 설정부터 한국 대표 브랜드 정착까지 민간추진협의회, 지역협의회가 주도하는 상향식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코리아둘레길 홍보를 블로그 및 페이스북을 통해 코스 이

미지 사진과 함께 대략적인 교통편, 거리, 소요시간, 인근 매점 등 편의시설과 감상 등 개별 코스 소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코리아둘레길이 정식 개통되기 이전인 현 시점부터 일반 여행블로그와의 차별성 확보 및 향후 국제브랜드 형성을 위한 외국어서비스 제공 등 사업홍보와 수요 확충을 위한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코리아 둘레길 소개(예시)]

- 제목(코스명): 비오는날도 좋은 부산 이색여행코스 추천 | 해파랑길 1코스 전 주행
- 걷기 여행 코스: 17.8km
 - 오륙도해맞이공원 ~ (4.8km)동생말 ~ (4.0km)광안리해변 ~ (6.7km)APEC하우스 ~ (2.2km)미포
- 총 소요 시간: 약 6시간
- 난이도: 쉬움
- 교통편: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버스 또는 KTX를 이용, KTX 역부터 출발점까지는 버스 또는 택시를 이용
- 화장실: 오륙도 해파랑길안내소, 어울마당, 광안리해수욕장, 광안리수변공원, 동백섬, 해운대 등 간이화장실
- 편의점: 이기대어울마당, 동생말, 광안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 등

자료: 코리아 둘레길 네이버 블로그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 황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¹⁾ 사업은 신속하고 정확한 관광안내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통역안내전화리플릿·외국어 관광안내표기 등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이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이 사업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7년 예산 28억 9,700만원을 교부받아 이 중 27억 7,900만원을 집행하여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통역안내전화 1330 운영,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및 웹사이트 구축, 관광안내 표준화 및 네트워크 확산, 관광정보리플릿 제작 및 배포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교부받은 보조금 중 공사는 관광안내소 안내원에게 지급할 근무복 비용 지출을 위한 피복비(210-03) 예산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2,9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다.

[2017회계연도 국약방송 전국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6,492	6,492	0	0	6,492	6,492	0	0
(한국관광공사)	2,897	2,897	0	0	2,897	2,897 (2,779)	0	0 (118)
(안내원 피복비)	(30)	(30)	0	0	(30)	(29)	0	(1)

주: 괄호 안은 실집행액, 실제 불용액을 의미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윤희호 예산분석관(yoonhh@assembly.go.kr, 788-4683)

1) 코드명: 관광진흥개발기금 4162-300

나. 분석의견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안내소 안내원 근무복 등을 일반수용비 비목에서도 집행하였는데 예산 집행 지침 규정을 준수하여 피복비 비목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사가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통해 관광안내소 안내원 등에게 필요한 근무복, 방한용품 등의 지출한 세부 내역을 보면 총 3,631만원으로 피복비(210-03) 비목에서 2,878만원, 일반수용비(210-01) 비목에서 753만원을 각각 집행하였다.

[관광안내소 안내원 근무복 등 피복 지출 내역]

(단위: 천원)

지출내역	일자	집행액	비목
관광안내소 안내원 근무복	17-8-17	8,547	피복비
관광안내소 안내원 근무복	17-9-29	8,165	피복비
관광 안내소 안내원 근무복	17-9-30	1,367	피복비
관광안내소 안내원 근무복(평창 신규 채용자)	17-10-31	1,326	피복비
관광안내소 안내원 근무복(부산 신규채용자)	17-10-31	660	피복비
관광안내소 안내원 근무복	17-11-30	1,762	피복비
관광안내소 안내원 방한용품	17-11-30	955	피복비
관광안내소 안내원 근무복(춘천 신규채용자)	17-11-30	1,892	피복비
관광안내소(부산) 안내원 방한용품	17-12-31	690	피복비
관광안내소 근무자 방한용품	17-12-31	917	피복비
관광안내소 안내원 활동물품	17-12-31	1,394	피복비
관광안내소(춘천) 안내원 근무복	17-12-31	1,103	피복비
피복비 집행 계		28,778	
이동형 안내소 운영요원 피복비	17-2-28	595	일반수용비
관광안내소 안내원 근무용 가방	17-7-27	1,760	일반수용비
관광안내소 안내원 근무복(하복) 샘플	17-7-31	266	일반수용비
안내소 신규 채용자 근무용 모자	17-7-31	633	일반수용비
안내소(대구) 근무복 직자수 및 원형패치	17-8-9	699	일반수용비
안내소(부산) 근무복 직자수 및 원형패치	17-8-9	634	일반수용비
관광안내소 안내원(평창) 근무복 직자수	17-8-17	220	일반수용비
관광안내소 안내원(평창) 근무복	17-8-31	326	일반수용비

(단위: 천원)

지출내역	일자	집행액	비목
관광안내소 안내원 근무용 모자	17-9-29	726	일반수용비
관광안내소 근무복 부착용 원형 자수패치	17-9-30	185	일반수용비
관광안내소 근무복 관광안내 로고 인쇄	17-10-13	990	일반수용비
관광안내소(평창) 안내원 방한용품	17-12-31	500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 집행 계		7,534	
계		36,312	

자료: 한국관광공사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다만,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피복비는 ① 상시 착용 근무피복(작업복 포함), ②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③ 근무피복을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등을 위한 비용으로서 안내원에게 제공된 근무복 등 제경비는 모두 피복비 집행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공사는 내부 규정인 「회계규정」에 따라 예산과 회계를 처리하며, 규정에 의한 시행세칙 및 요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부회계 관계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²⁾ 위 지침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753만원을 피복비 집행 대상으로 보면, 전체 피복비 집행액은 사실상 3,631만원으로 당초 예산 편성액(3,000만원)의 21%를 초과 집행한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공사는 안내원 근무복 관련 경비를 피복비 비목으로 집행함으로써 예산 집행지침에 부합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 「회계규정시행세칙」

제6조(정부회계에 필요한 법령, 규칙, 예규의 준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기타법령으로 공사의 회계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와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사의 회계에 관하여는 정부의 회계에 관한 법령, 규칙, 예규를 준용한다.

가. 현 황

한국관광공사는 2016년 케이뱅크은행 설립시에 80억원을 투자한 후 2017년 에 32억원을 추가투자함에 따라 2017년 말 현재 케이뱅크은행의 투자금액은 총 112억 원이다. 케이뱅크은행은 2016년 1월 7일자로 설립되었으며, 설립시 자본금은 160억 원이다. 이후 유상증자를 통하여 2017년 말 현재 자본금은 3,500억원이다.

[케이뱅크은행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주요영업활동	지분율	취득원가	
			2016	2017
케이뱅크은행	인터넷전문금융서비스	3.20	8,000	11,200

자료: 한국관광공사

나. 분석의견

한국관광공사는 고유목적사업과의 연관성이 낮은 부대사업 관련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고유업무와 핵심사업 위주로 사업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케이뱅크은행은 제1금융권의 첫 번째 인터넷전문은행¹⁾으로, 2017년 4월 3일에 영업을 시작하였다. 케이뱅크은행의 영업실적을 살펴보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첫해인 2017년에 당기순손실이 837억 8,300만원 발생하였다. 일반관리비 834억

이은경 예산분석관(cunkylee@assembly.go.kr, 788-4682)

1) 오프라인 점포를 마련하지 않은 채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영업하는 은행이다. 온라인, 현금자동지급기(CD),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영업하기 때문에 점포 운영비, 인건비 등을 최소화하는 대신 기존 일반은행보다 예금 금리를 높이거나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일반은행이 핵심 채널을 지점에 두고 있는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영업망을 구축한다. 영업시간도 연중무휴이며 주로 소액 위주의 금융에 특화된다. 또 실명확인 시 점포를 방문해 대면해야 하는 일반은행과 달리 공인인증서, ARS 전화 등을 통해 실명확인을 할 수 있다.

원을 충당할 수준의 순이자이익과 수수료이익이 발생하지 않음에 기인한다.

케이뱅크은행의 주요주주는 KT(18.0%), 우리은행(13.0%), NH투자증권(10.1%), 한화생명보험(8.1%), GS리테일(8.0%), 다날(6.6%), KG이니시스(KG모빌리언스)(6.6%)이다. 케이뱅크은행은 시중은행과는 다르게 오프라인 영업점을 두지 않고 있지만, 주주사인 GS리테일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GS25에 설치된 ATM을 이용하면 입·출금 수수료가 면제된다. 향후 KT 통신 대리점을 통한 영업망 연계도 예정되어 있다. 2017년 9월 13일부터는 주주사인 우리은행 ATM 이용시에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케이뱅크은행 영업실적]

(단위: 백만원)

	순이자손익	순수수료 손익	일반관리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6	3,106	△7,891	△20,668	△25,452	△25,452
2017	13,428	△8,605	△83,406	△83,743	△83,783

자료: 케이뱅크은행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관광정책 수립 및 관광·금융·ICT 융합서비스 발굴을 통한 내외국인 관광편의 개선을 목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은행 지분투자에 참여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케이뱅크은행에의 지분 참여 및 케이뱅크은행과의 사업 연계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등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을 추구하고자 출자에 참여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동 사업 참여에 따른 기대효과로 ICT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가능, 케이뱅크은행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마케팅의 혁신 가능, 배당수익을 통한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들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케이뱅크은행의 지분 18%를 보유하고 있는 KT('16.5월~'17.12월) 및 케이뱅크('17.12월)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객 이동동선 및 소비행태 파악 등 관광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협력(한국관광100선 후보군 도출, 관광코스 발굴)하고 있다. 향후 관광·금융·ICT 융합서비스 발굴(외국인 선불카드 및 관광특화 금융상품)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2017년에 진행한 빅데이터 활용실적은 총 5건이며, 이 중 4건

은 케이뱅크은행의 주주사인 KT와의 협업사업이며, 1건이 케이뱅크은행의 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그런데, 1.~4.는 KT와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추진한 사업이며, 5.의 경우 시범적으로 케이뱅크은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향후 활용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KT와의 업무협약은 케이뱅크은행에 지분투자를 통한 주주사간의 업무협약 이어야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112억원의 투자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케이뱅크 및 주주사간 협업사업 추진실적]

	기간	주요 추진내용
1. 핵심관광지 선정	2016.10.	한국관광 100선 후보군 도출
2. 내국인 국내여행행태 분석	2017.7~12.	광역·기초지자체 단위/주요관광지점 방문자수 및 소비동향 분석
3. 외국인 국내여행행태 분석	2017.7~10.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부터 출국까지의 국내 이동패턴 분석, 국적별 동선 파악
4. 주요사업 성과분석	2017.7~12	여행주간, 테마여행10선 등 특정기간/지역에 대한 방문자수 및 소비동향 비교분석을 통한 주요사업 성과분석
5. 금융 빅데이터 시범 분석	2017.12~ 2018.2	케이뱅크 금융 빅데이터 시범분석 및 활용계획 수립

자료: 한국관광공사

또한, 한국관광공사는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2017년 동안 총 18회의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활용한 바 있다. 주요 빅데이터 사업추진 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에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관광 이동행태 분석을 실시하였고, 2017년 7~12월 동안 총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단위로는 최초로 통신사카드사 빅데이터(내외국인 방문자수, 유입/유출, 성별/연령별, 당일여행/숙박여행 및 지자체별·카테고리별 관광부문 소비지출액)를 활용하여 여행트렌드를 분석하였다.

[2013~2017년 주요 빅데이터 사업 추진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시기	주요 내용	예산액
빅데이터 활용 문화관광축제 성과분석	2013	2013년 우수 문화관광축제 16개 대상 SKT 이동통신 통화 DB, SKT 제휴사인 현대카드 신용카드 매출정보 등을 활용 유동인구 매출 분석	55
빅데이터 기반 국민관광 이동 행태 분석	2014	2015 국내관광활성화캠페인(관광주간) 연계 유동인구 데이터 및 매출 데이터	160
빅데이터 활용 일본인 방한관광객 행태 조사	2014	야후저팬 포함 일본 주요 여행정보 사이트 15곳 4개년('10~'14) 관광 키워드 분석 (데이터 약 50만건)	49.5
한국관광 관련 SNS 이용자 소셜 데이터 분석	2015	한국관광 글로벌 슈퍼커넥터 발굴을 위한 Visitkorea SNS 회원 및 기타 한국관련 SNS 사이트 사용자의 소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55
빅데이터 활용 음식관광 현황조사 연구	2016	한국음식관광 트렌드 및 특성 분석, 콘텐츠 발굴 및 홍보전략 수립	49.5
빅데이터 활용 여행트렌드 분석	2017	전국단위 최초 월별 통신사·카드사 빅데이터 분석	120
해외지사 소셜미디어 마케팅 성과 분석	2017	지사운영 SNS 등재 포스트, 댓글 관련 정량, 정성 분석 및 국내여행지 관련 주요 키워드에 대한 국가별 주요 SNS 버즈량 조사	54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편, 「한국관광공사법」과 한국관광공사의 「정관」에서는 고유사업을 ①국제관광진흥사업, ② 국민관광 진흥사업, ③관광자원 개발사업, ④관광사업의 연구·개발사업, ⑤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훈련사업, ⑥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⑥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에는 법인에 대한 투자사업, 재산의 임대사업, 물품의 수출·입업, 기타 이사회가 의결한 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부대사업 중 법인에 대한 투자사업을 근거로 케이뱅크은행 출자에 참여하고 있다.

2018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는 기관 고유업무와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신규 투자사업·자본출자 예산은 관계법령상 기관의

고유목적사업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협업과 구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대사업 명목으로 112억원의 지분투자를 실시한 것은 고유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한국관광공사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출자사업을 재검토하고, 공사의 고유 핵심사업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정부는 1988년에 호남지역의 섬을 활용한 호남권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남해안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1992년에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를 지정하고 개발사업에 착수하였다. 오시아노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1조 1,809 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오시아노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 말 현재 총 1,866억 5,100만원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총자산 6,911억 7,200만원의 27.01%에 해당한다. 용도별로 자산을 분류하면, 분양용 재고자산이 1,103억 9,700만원, 유형자산이 355억 4,500만원, 투자부동산이 407억 900만원이다. 분양용 재고자산은 2013년 1,106억 100만원 이후 거의 변동이 없는데, 이는 최소 5년 동안 재고자산의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유형자산 중 토지부분은 2013년 790억 3,100만원 중 151억 2,997만원을 2012년과 2013년에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일부는 투자부동산으로 전환시킴에 따라 2017년 말에 396억 7,500만으로 감소되었다.

[한국관광공사의 오시아노 관광단지 관련 자산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재고자산(a)			110,601	110,601	110,372	110,372	111,397
유형 자산	토지	취득원가	79,031	79,031	78,868	78,868	39,675
		장부가액	63,901	63,901	63,738	63,738	24,545
	건물	취득원가	7,916	8,977	9,031	9,031	7,239
		장부가액	6,715	7,509	7,263	6,961	5,160
	기타	취득원가	7,559	8,323	8,338	8,380	8,550
		장부가액	6,261	6,772	6,456	6,143	5,840

이은경 예산분석관(cunkylee@assembly.go.kr, 788-4682)

(단위: 백만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소 계(b)		76,877	78,182	77,457	76,842	35,545
투자 부동산	토지	취득원가	0	0	0	0	39,211
	건물	취득원가	0	0	0	0	1,804
		장부가액	0	0	0	0	1,498
		소 계(c)		0	0	0	0
합계(d=a+b+c)			187,478	188,784	187,828	187,214	186,651
총자산(e)			798,610	763,136	714,262	676,347	691,172
비중(d/e)			23.48	24.74	26.30	27.68	27.01

자료: 한국관광공사

나. 분석의견

한국관광공사는 보유 중인 오시아노 관광단지 재고자산의 매각 및 투자부동산 활용도를 높여 유동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오시아노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1조 1,809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한국관광공사가 토지매입, 기반시설공사 등에 2,445억원, 정부가 단지 진입도로, 상수도 등의 건설에 1,058억원을 투자하고, 민자유치(8,306억원)를 통하여 숙박시설, 상가, 운동오락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한 사업비보다 투자실적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먼저, 정부 및 지자체 지원액 규모와 민자유치가 계획 대비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 지원계획 중 단지 진입도로 공사와 상수도 설치 등은 완료가 되었지만, 마리나, 하수처리 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당초 하수처리 기반시설은 전남도가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환경부(구, 환경처)가 동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를 통보함에 있어 오수처리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도록 제시함에 따라 이후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관광공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조성을 완료하였지만, 분양용 용지의 매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자유치부문에서 골프장사업에 725억원을

투자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자유치부문은 계획 대비 투자실적률이 8.7%에 그치고 있다.

[오시아노 관광단지 부문별 투자비 계획 대비 실적 현황]

(단위: 억원, %)

부 문	시행주체	사업비		
		계획	투자실적	집행률
단지 진입도로, 상수도, 하수처리 기반시설, 마리나 등	정부 및 지자체 지원 (국토해양부, 전남도, 해남군)	1,058	271	25.6
토지매입, 기반시설공사 등	한국관광공사	2,445	2,228	91.1
숙박, 상가, 운동오락시설 등	민자 유치	8,306	725	8.7
합 계		11,809	3,224	27.3

자료: 한국관광공사

이와 같이 정부 및 지자체 지원과 민간유치의 부진으로 인하여 한국관광공사는 조성을 완료한 분양용지 투자비 1,103억 9,700만원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고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총 194만 8,400㎡의 분양용지 중 분양을 완료한 용지는 운동·오락시설 중 83만 4,800㎡에 그치고 있다. 분양단가가 높은 숙박시설과 상가시설 등에서는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오시아노 관광단지 조성현황]

(단위: 천㎡)

	숙박시설	상가시설	휴양·문화 시설	공공지원 시설	기타시설	녹지	운동·오락 시설	합계
분양용(a)	348.5	145.8	271.5	4.9	0.0	0.0	1,177.8	1,948.4
(분양실적)	0.0	0.0	0.0	0.0	0.0	0.0	834.8	834.8
자체사용(b)	0.0	0.0	255.0	412.8	99.7	1,746.3	611.1	3,125.0
조성면적 (a+b)	348.5	145.8	526.5	417.7	99.7	1,746.3	1,788.9	5,073.4

자료: 한국관광공사

또한, 한국관광공사는 조성을 완료한 토지 중 일부를 자체사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재고자산(분양용지)에서 유형자산으로 2011년에 전환시켰으며, 공사가 인식한 투자가액은 929억 4,900만원이다. 2017년에는 골프장부분을 투자부동산으로 전환시켰다.

한국관광공사는 오시아노 관광단지와 관련하여 2017년 말 현재 유형자산으로 355억 4,500만원, 투자부동산으로 407억 9,000만원 등 총 762억 5,400만원의 자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2011년 투자비 929억 4,900만원에 비하여 166억 9,500만원 감소한 규모이다. 이는 한국관광공사가 오시아노 관광단지와 관련한 유형자산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여 2012년에 89억 9,471만원, 2013년에 61억 3,526만원 등 총 151억 2,997만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한국관광공사가 개발한 오시아노 관광단지 중 일부를 자산화(유형자산, 투자부동산)시켜 발생시킨 수익은 2011~2017년 동안 총 60억 3,1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골프장과 캠핑장 임대를 통하여 발생한 수익이다.

[한국관광공사의 오시아노 관광단지 중 자체보유분 수익률 현황]

(단위: 백만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유형자산	92,949	83,501	76,877	78,183	77,456	76,842	35,546
투자부동산	0	0	0	0	0	0	40,709
관련 수익	95	1,153	376	916	1,842	781	868
수익률	0.10	1.24	0.41	0.99	1.98	0.84	0.93

주: 수익률은 매년도 수익을 최초 투자비인 929억 4,900만원으로 나누어 산출함.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는 오시아노 관광단지를 개발한 후 관광단지의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지를 관리하고 있다. 오시아노 관광단지와 관련된 손익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한국관광공사는 보유 중인 골프장(투자부동산)과 캠핑장을 임대하여 발생시키는 임대료 수익으로 각종 부대비용인 인건비, 시설관리비, 세금과 공과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손실을 입고 있다. 손실의 규모는 점차 감소하는 수준이지만, 2017년에도 여전히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그 규모는 20억 9,300만원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오시아노 관광단지과 관련하여 누적적으로 인식한 손실은 보유 자산 평가손실 162억 1,800만원과 토지조성 이후 2017년까지 관광단지 운영으로 인한 손실 198억 4,300만원 등 총 360억 6,100만원에 이른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103억 9,700만의 분양용 재고자산이 판매되지 못하고 있으며, 355억 4,500만원의 유형자산과 407억 900만원의 투자부동산에서는 음의 수익률이 기록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오시아노 관광단지 관련 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매출	골프장임대료, 캠핑장임대료 등	95	1,153	376	916	1,842	781	868	6,031
비용	인건비	825	622	573	673	298	840	812	4,643
	시설관리비	797	799	669	1,143	2,454	674	659	7,195
	감가상각비	567	568	595	641	644	657	648	4,320
	세금과공과	185	305	215	873	797	766	842	3,983
	이자비용	2,039	1,624	875	656	539	0	0	5,733
	평가손실	174	8,994	7,050	0	0	0	0	16,218
	합계	4,587	12,912	9,977	3,986	4,732	2,937	2,961	42,092
손익		△4,492	△11,759	△9,601	△3,070	△2,890	△2,156	△2,093	△36,061

주: 평가손실은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유형자산손상차손으로 구성됨

자료: 한국관광공사

따라서, 한국관광공사는 장기간 매각하지 못하고 보유 중인 오시아노 관광단지 분양용지의 매각과 투자부동산 활용도를 높여 유동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한국관광공사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서남해안레저(주)에 각각 290억 2,500만원과 89억 9,000만원 등 총 380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15.55%, 19.97%의 지분을 취득하고 있다. 서남해안레저(주) 투자비는 전액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여 투자하였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가 직접 투자비를 조달하지는 않았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서남해안레저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회사명	주요영업활동	지분율	취득원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국제회의업운영 등	15.55	29,025
서남해안레저	관광레저형기업도시개발	19.97	8,990
합 계			38,015

주: 2017년 말 기준임

자료: 한국관광공사

나. 분석의견

한국관광공사가 총 38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서남해안레저(주)에서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므로, 수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지분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먼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한 투자수익률을 검토하였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설립시 자본금은 528억원이었으나, 수차례의 유상증자를 거쳐 2017년 12월 31일 현재 납입자본금은 1,866억원이다. 이 중 한국관광공사는 토지를 현물출자하였으며, 투자금액은 290억 2,500만원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발행주식은 제주특별자치도가 61.63%, 한국관광공사가 15.39%, (주)부영이 3.09% 각각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법인 및 개인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다.

이은경 예산분석관(cunkylee@assembly.go.kr, 788-4682)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지분율 현황]

(단위: %)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관광공사	(주)부영	기타	합계
지분율	61.63	15.55	3.09	20.00	100.0

자료: 한국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물은 총 7층으로, 1~2층은 회의 및 전시시설, 판매 및 위락시설, 주차장이고, 3~7층은 최대 4,300석 규모의 회의시설과 식음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 말 현재 임직원은 임원 2명, 직원 32명 등 총 34명이다.

최근 5년간 영업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이 매년 확대되고 있지만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충당하는 수준으로 유지되지 못하여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없었다면 당기순이익은 당기순손실로 전환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누적된 경영손실로 인하여 결손금이 2017년 말 현재 165억 3,5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영업실적]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매출액	10,054	10,902	11,942	12,380	15,211
매출원가	11,525	12,269	12,684	13,564	15,210
매출총이익	△1,470	△1,367	△742	△1184	1
판매비와일반관리비	1,544	1,426	1,322	1,393	1,214
영업이익(손실)	△3,015	△2,793	△2,064	△2,577	△1,213
민간경상보조금	1,538	1,776	1,478	1,978	2,179
당기순이익	△1,922	△1,398	774	864	680
결손금	△13,797	△15,340	△16,287	△17,197	△16,535

자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영업보고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행사개최 수가 2013~2016년 동안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3.3% 증가하는데 그쳐, 매출이 각종 운영비 등을

충당할 수준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제주국제 컨벤션센터의 설립시점인 1997년부터 토지현물출자로 총 290억원을 투자하였지만, 누적된 결손으로 인하여 투자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행사개최 현황]

(단위: 건)

	2013	2014	2015	2016	2017
국제행사	33	27	36	36	37
국내행사	186	196	196	198	204
기업행사	34	23	15	8	12
공연/전시	14	18	18	27	25
합계	267	264	265	269	278

자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영업보고서

다음으로, 서남해안레저(주)에 대한 투자수익률을 검토하였다. 한국관광공사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89.9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서남해안레저(주)는 2005년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¹⁾의 사업시행자로 2007년 9월 18일에 설립되었다.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일원 약 8.7km²(262만평)의 부지에 친환경 관광·레저형 복합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며, 부지조성 후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육상 및 수상 레저시설과 문화시설을 갖춘 관광 단지, 신재생에너지단지, 은퇴자 등을 위한 주거 단지, 건강 및 휴양 단지, 상업 단지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남해안레저(주)는 2013년 12월 30일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영산강Ⅲ지구 영암·해남 관광레저형기업도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삼호지구의 공유수면 매립권리·의무 양도·양수하는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매립권은 계약금을 지급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권리질권을 설정하는 시점인 2014년 3월 13일에 양수 완료되어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하였다. 건설중인 자산은 2017년 말 현재 1,069억 9,800만원으로 전체 자산 1,092억 3,261만원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1)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개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09년 10월에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받았으며, 2014년 5월에 “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포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었다.

[서남해안레저(주) 건설중인자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건설중인자산	4,464	92,723	100,343	103,777	106,998

자료: 서남해안레저(주) 감사보고서

서남해안레저(주)는 2017년까지 부지 확보 등에 자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매출 없이 비용만 발생시키고 있어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지속되고 있다. 서남해안레저(주)는 2007년에 설립된 이후 2017년까지도 매출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의 진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매출을 통한 순이익의 실현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공사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정부는 투자금 대비 수익이 저조하며 투자원금의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서남해안레저(주) 영업실적]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매출액	0	0	0	0	0
매출원가	0	0	0	0	0
매출총이익	0	0	0	0	0
판매비와일반관리비	1,515	1,947	2,138	2,352	2,115
영업이익(손실)	△1,515	△1,947	△2,138	△2,352	△2,115
당기순이익	△443	△1,177	△1,691	△2,042	△1,981
결손금	△1,143	△2,320	△4,010	△6,052	△8,033

자료: 서남해안레저(주)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한국관광공사의 직원콘도사용료를 지급수수료에서 복리후생비로 계정재분류 검토 필요

가. 현 황

한국관광공사는 2017년 말 현재 총 6개 콘도회사의 60구좌에 이르는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7년 말 현재 자산가액은 16억 2,000만원이다. 한국관광공사는 복지규정¹⁾ 및 단체협약²⁾에 근거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공사가 회원권을 보유 중인 콘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2017년부터 6박의 범위 내에서 콘도시설이용료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2016년까지는 전액을 지원하였다.

[연도별 콘도미니엄 회원권 보유 현황]

(단위: 백만원)

	구좌수	2013	2014	2015	2016	2017
한화콘도	경주 보문단지 콘도 미니엄 회원권(10구좌)	237	237	255	255	255
코레스코	치악산 콘도미니엄 회원권 (15구좌)	222	222	222	222	222
대명콘도	콘도미니엄 회원권 (10구좌 연장구입)	199	199	356	356	356
대명콘도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대금 지불(7구좌)	233	233	233	233	233
대명콘도	콘도미니엄 회원권 (잔여 4구좌)	116	116	116	116	116
한국콘도	콘도미니엄 회원권(10구좌)	174	174	174	174	174

이은경 예산분석관(cunkylee@assembly.go.kr, 788-4682)

1) 「복지규정」

제11조의 2(복리후생비) 직원의 복리증진과 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시토록 한다. ...2. 복리비가.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복리후생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단체협약」

제65조(복지시설 운영) 공사는 체력단련실, 여직원 휴게실, 성수기 휴양소, 콘도미니엄 및 건강관리에 관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단, 콘도관리비는 공사가 부담하되 그 운영방법 및 기준은 노사협의로 정한다.

(단위: 백만원)

	구좌수	2013	2014	2015	2016	2017
용평리조트	콘도미니엄 회원권구입대금 지불(3구좌)	144	144	144	144	144
서브원콘도 (곤지암)	콘도미니엄 회원권구입대금 지불(1구좌)	121	121	121	121	121
합 계(60구좌)		1,444	1,444	1,620	1,620	1,620

자료: 한국관광공사

나. 분석의견

한국관광공사는 직원에게 지원하는 콘도시설이용료를 지급수수료계정에서 복리후생비계정으로 재분류하여 복리후생비 금액의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직원들이 공사의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콘도시설 이용 수수료 중 공사부담분(2016년까지 100%, 2017년부터 70%)을 지급수수료 계정에서 처리하고 있다. 2013~2017년 동안 연간 94백만원~1억 6,000만원의 지급수수료가 직원의 콘도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

[연도별 지급수수료 중 직원 콘도시설 이용수수료 해당액]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직원 콘도시설 이용수수료 해당액	106	105	97	107	94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가 직원부담분(2016년 이전 전액 지원, 2017년 이후 70% 지원) 콘도시설이용료를 지급수수료로 계상한 사유는 직원이 콘도시설 이용시에 공사가 이용수수료 전액(100%)을 콘도회사에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직원부담분(2017년부터 30%)을 급여에서 차감하기 때문이다.

공사는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불한 콘도시설이용료를 직원 근로소득에 포함시키고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집행하였으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직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콘도시설이용료를 지급수수료가 아닌 급여성복리후생비로 계상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공예디자인진흥원 지원 사업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기관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사업¹⁾의 내역사업이다. 진흥원은 창의적인 공예문화와 디자인문화의 확산과 진흥을 통하여 한국공예 및 디자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구)한국공예문화진흥원, (구)한국디자인문화재단이 통합되어 설립(2010년 3월)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이다.

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교부받은 2017년 이 사업 예산현액 55억 3,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17회계연도 공예디자인진흥원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문화예술단체운영 지원	83,612	83,612	0	0	83,612	83,612	0	0
공예디자인진흥원 지원	5,533	5,533	0	0	5,533	5,533	0	0

주: 괄호 안은 실집행액, 실제 불용액을 의미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첫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사무용 소프트웨어 등 구매를 자산취득 비목이 아닌 관리용역비로 연말에 집행하는 것은 예산지침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윤희호 예산분석관(yoonhh@assembly.go.kr, 788-4683)

1) 코드명: 일반회계 1631-300

진흥원은 내부 규정인 「회계규정」에 따라 예산과 회계를 처리하며, 규정에 의한 시행세칙 및 요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부회계 관계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다.²⁾

이에 따라 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세부 비목(인건비, 경상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에 대하여 정부회계 규정에 따라 편성하고 있으며,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자산취득비는 건물, 차량, 사무용집기 등 내구성물품 구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목인데, 구체적으로 하드웨어 또는 상용소프트웨어(사무용, 소프트웨어 개발용, 업무지원용) 구입비는 자산취득비 집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³⁾

그런데, 진흥원은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예산 1,955만원을 관리용역비로 집행하였는데, 관리용역비는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으로서, 소프트웨어 구입을 관리용역비로 집행하는 것은 예산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회계규정」

제2조(회계처리의 기준)

- ① 진흥원의 예산과 회계처리는 관련 법령에 따로 정하여져 있는 것 외에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이 규정과 이 규정에 의한 시행세칙 및 요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부 회계관계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3) [자산취득비(430-01) 구분]

9. 전산 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비

- 정보시스템구축에 필요한 HW, 상용 SW, NW(네트워크장비) 등 구입비

자료: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p. 344) 일부

[공예디자인진흥원 지원 사업 중 HW, SW 구매 내역]

(단위: 원, %)

지출내역	일자	집행액	비목
스팸메일차단솔루션 HW 구매	17/04/07	2,200,000	관리용역비
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PC스캔 서버용 라이선스) 구매	17/06/13	3,379,200	관리용역비
보안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17/12/20	1,640,000	관리용역비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17/12/22	2,574,000	관리용역비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17/12/28	5,348,320	관리용역비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17/12/28	2,325,120	관리용역비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17/12/28	2,080,270	관리용역비
계		19,546,910	

자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진흥원은 소프트웨어 등을 대부분 12월 28일에 집중 구입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구매 자산이 2018년에 활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2018년도 예산으로 집행하여도 무방하다는 측면에서 걱정한 예산집행이라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는 등 비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시급한 재정소요인지 예산불용을 회피하기 위한 집행행위인지를 예산집행의 불요불급성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둘째, 진흥원은 사무실 및 기관차량 임차에 필요한 비용만큼 정확한 금액을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다.

진흥원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창고를 위한 임차 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해영회관 2개 층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경기도 하남시에 공예품 채고 보관 등을 목적으로 형성물류창고 2개를 임차하고 있다.

또한, 진흥원은 기관 차량 2대(그랜저, 카니발)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진흥원이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임차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의 임차대상 현황]

임차대상	월 임차료(원)	이전 임차계약기간	최신 임차계약기간
사무실 2개층 - 해영회관5층501호(413.22㎡) - 해영회관2층201호(485.83㎡)	25,297,800 (11,550,000) (13,747,800)	17.02.01. ~ 18.01.31.	18.02.01. ~ 19.01.31.
창고(경기하남,20피트*2개)	540,000	17.03.09. ~ 18.03.08.	18.03.09. ~ 19.03.08.
기관차량(그랜저)	905,000	-	17.06.28. ~ 20.06.28.
기관차량(카니발)	1,000,000	-	15.12.29. ~ 18.12.28.

자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이에 계약에 따라 진흥원이 지급하여야 할 임차료는 각 임차대상에 대한 12개월치 임차료 금액이 될 것인데, 결산 회계처리 과정에서 임차대상 중 사무실과 기관차량(카니발)에 대하여 진흥원은 2개월치 임차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의 임차료 집행 내역(사무실, 카니발)]

(단위: 천원)

임차대상	월 임차료	연 임차료 계획액(A)	임차료 집행액(B)	초과집행 (B-A)
사무실 2개층	25,298	303,574	354,169	50,596
기관차량(카니발)	1,000	12,000	14,000	2,000
계	26,298	315,574	368,169	52,596

자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하여 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8년도 예산 교부가 1월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를 감안한 것이며,⁴⁾ 초과 집행 처리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 불승

4) 2018년도 예산 교부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자료 보완, 업무협의 및 사업 계획 조정으로 시간이 지체되었기에 2018년도 예산이 1월에 교부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2개월치 임차료를 확보할 목적이었고, 집행하였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흥원은 2018년도 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월 말에 교부받았다.

인 및 반납 처리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2017년에 편성된 임차료 예산은 임대계약에 따라 해당 연도에 지출되는 사무실, 기관차량, 창고 임차 금액만큼을 편성·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2018년도 사무실 등 임차료로 집행할 경우 「국가재정법」에 규정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⁵⁾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흥원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부합하도록 해당 초과 지출 금액에 대한 정정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향후 사무실과 차량 임차에 따른 소요 금액을 정확하게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5)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가. 현 황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사업은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과 해외출간, 해외문학과 국내문학의 교류, 한국문학 전문번역가 양성을 통한 한국문학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에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으로서 예술창작활동 지원 사업¹⁾의 내역사업이다.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은 한국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해외홍보·교류를 목적으로 「문학진흥법」²⁾에 따라 설립(1996년 5월 6일)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이 사업 예산 90억 700만원을 번역원에 교부하였으며, 번역원은 이 중 89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4,6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다.

[2017회계연도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예술창작활동 지원	11,146	11,146	0	0	11,146	10,337	0	809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9,007	9,007	0	0	9,007	9,007 (8,961)	0	0 (46)

주: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사업은 2018년 예산부터 별도 세부사업(한국문학번역원 지원, 1633-307)으로 분리 편성되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편, 번역원은 기관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사업³⁾ 외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민간경상보조금을 교부받아 한국문학

윤희호 예산분석관(yoonhh@assembly.go.kr, 788-4683)

1) 코드명: 일반회계 1633-300

2) 「문학진흥법」

제13조(한국문학번역원) ① 체계적인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둔다.

3) 코드명: 일반회계 1633-300의 내역사업

전문번역가 재교육사업, 디아스포라 문학교류 활성화사업 등 사업을 수탁 추진하고 있다.

2017년 기준 4개 수탁사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 5억 6,500만원 중 한국문학 전문번역가 재교육 사업에 1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그 외 남은 잔액 4억 3,600만원은 모두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되었다(집행률 29.6%).

특히 디아스포라 문학교류 활성화 사업 등 3개 사업 예산의 집행이 전무한 것은 해당 사업 추진 및 예산 교부가 연말에 이루어진 것에 기인한다.

[2017년 한국문학번역원의 이월 처리된 수탁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관련 세부사업(코드)	사업비	집행	이월	사업 기간
1	한국문학 전문번역가 재교육 사업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체육기금, 5161-307)	150	129	21	17. 4. ~ 18. 3.
2	디아스포라 문학교류 활성화 사업	예술창작활동지원 (일반, 1633-300)	200	0	200	17. 12. ~ 18. 7.
3	문학실태조사 사업	예술창작활동지원 (일반, 1633-300)	150	0	150	17. 12. ~ 18. 7.
4	평창동계올림픽 한국문학홍보 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일반, 1633-300)	65	0	65	17. 12. ~ 18. 2.
소 계			565	129	436	

자료: 한국문학번역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참고: 2017년 한국문학번역원의 이월 처리된 수탁사업 개요]

1. 한국문학 전문번역가 재교육사업 ○ (사업목적) 잠재력 있는 원어민 신진번역가 발굴, 해외 원어민 번역가 및 관계자들의 재교육기회 제공 ○ (사업기간) 2017. 4. ~ 2018. 3.(12개월) ○ (세부내용) 한국문학 전문번역가 재교육사업, 번역 연구 활동 지원, 예비번역가 초청 연수

2. 디아스포라 문학교류 활성화사업

- (사업목적) 디아스포라 문학에 대한 전문 연구용역 수행, 독후감대회 개최를 통해 한민족 문학의 정체성 수립 및 발전
- (사업기간) 2017. 12. ~ 2018. 7.(8개월)
- (세부내용) 디아스포라 문학교류 활성화 방안 전문가 정책연구용역 수행, 디아스포라 문학 국내독자 대상 독후감대회 개최

3. 문학실태조사 사업

- (사업목적) 문학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문학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 수집
- (사업근거) 「문학진흥법」(2016. 8. 4. 시행) 제6조(실태조사)에 따라 문학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학 창작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
- (사업기간) 2017. 12. ~ 2018. 7.(8개월)
- (세부내용) 문학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통계 자료의 획득 및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 주기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국 문학인 실태조사’, ‘국민 문학 향유 실태조사’, ‘전국 문학관 실태조사’의 3개 조사로 구성

4. 평창 동계올림픽 한국문학 홍보사업

- (사업목적) 평창동계올림픽 방문 해외 언론인 6,000명이 머무는 미디어촌 내 한국문학 홍보 전시 개최
- (사업기간) 2017. 12. ~ 2018. 2. (3개월)
 - *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기간: '18. 2. 9. ~ 2. 25.
 - * 한국문학 홍보 전시 개최기간: '18. 1. 15. ~ 2. 26.
- (주요내용) 북카페(21개 언어 한국문학번역서 165종 4,150권 전시 및 제공) 및 한국문학 고전·현대 작품 전자책 132종 소개 및 이용방법 안내

자료: 한국문학번역원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첫째, 한국문화번역원은 사업 추진 지연이나 사업기간 연장 등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2017년 예산을 연내에 집행하여 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이월은 명시이월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국가재정법」 및 「2017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회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⁴⁾ 번역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위 지침과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적용 또는 준용할 수 있다.⁵⁾

번역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보조사업의 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그런데, 번역원은 일부 용역 제공, 계약 등 지출 건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를 2017년에 하였음에도 회계상 집행을 2018년에 뒤늦게 처리한 경우가 있는데, 2017년을 도과한 지출에 대하여 예산의 이월 처리 없이 집행하여 회계 처리상 미흡함이 있었다.

특히, 번역사업의 지연이나 사업기간 연장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상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이월집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으므로 연말 경비 집행을 연내에 조기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5)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일부)]

- | |
|--|
| <p>☐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2017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비의 주체, 지급대상, 사용용도 등 성격상 준용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본 지침을 적용하며, 기타공공기관은 본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p> |
|--|

[이월 처리하지 않는 회계 처리 예시]

(단위: 천원)

예산과목	지출원인 행위 일자	회계처리 일자	지출액	지출사유
업무추진비	17-1-2	18-2-19	1,060	2017년 시무식
시설장비유지비	17-2-1	18-2-26	495	2017년 2월 캡스
민간경상보조	17-3-23	18-2-13	377	스페인어권 번역실습 워크숍 지원금 지급
일반수용비	17-5-26	18-2-28	800	천년의 잠 추가 지급
일반수용비	17-8-30	18-3-2	3,095	2017년 모스크바 도서전 통역자 및 낭독자 사례비
여비	17-9-5	18-1-18	465	이스탄불도서전 사전 출장 출장여비
민간경상보조	17-9-29	18-1-18	2,733	불역 <폐쇄구역 서울> 출판선불금 지급
일반수용비	17-12-12	18-1-9	2,094	2017년 4차 영상공연 번역지원
여비	17-12-26	18-1-23	902	조지아 교차출간 업무협약 및 출판섭외 출장비
공공요금 및 제세	17-12-29	18-1-8	187	2017년 12월 EMS 추가 대금
공공요금 및 제세	17-12-31	18-1-23	244	2017년 12월 통신료
공공요금 및 제세	17-12-31	18-1-25	660	2017년 12월 인터넷전용선
일반수용비	18-1-31	18-2-12	5,500	2017년 한국문학번역원 지원사업 정산자료 검증비용

자료: 한국문학번역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둘째,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추진기간을 회계연도에 맞추어 예산규모를 조정하거나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 등 번역원의 수탁사업 예산의 집행 부진과 이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에 시간과 절차가 소요되는 측면은 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 한국문학 홍보사업”의 경우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기간(18. 2. 9. ~ 2. 25.)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외 수탁사업의 경우 정부와 공공기관의 회계연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재정법」⁶⁾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 수립 지연 등을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연말에 자금을 교부하고 번역원이 예산을 전액 이월 처리되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예산의 집행 부진과 과다 이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집행 불가능한 비합리적인 예산 교부액을 불용 처리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단계부터 연간 자금배정 및 예산집행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하고, 사업 추진 경과에 맞추어 적정 예산 규모를 배정하여야 할 것이다.

6)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가. 현 황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업무는 「관광진흥법」¹⁾에 따라 하드웨어의 성능·설치방법, 네트워크의 구성, 시스템의 가동·보안 등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검사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관광진흥법」,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카지노전산시설검사업무규정」²⁾에 근거하여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7년 결산 기준으로 연구원은 카지노시설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대가로서 7,731,300원을 수수료³⁾로 지급받았다.

윤희호 예산분석관(yoonhh@assembly.go.kr, 788-4683)

1) 「관광진흥법」

제23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①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2) 「관광진흥법」

제23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②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정 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 ①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카지노 전산시설(이하 "카지노전산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기한 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카지노전산시설검사업무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관광진흥법 제23조제2항과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현장검사 수행시(서류검사시 검사수수료 없음)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검사수수료와 연구원 여비규정에 따른 출장비를 납부받으며, 연구원은 이를 부대사업수입 계정으로 편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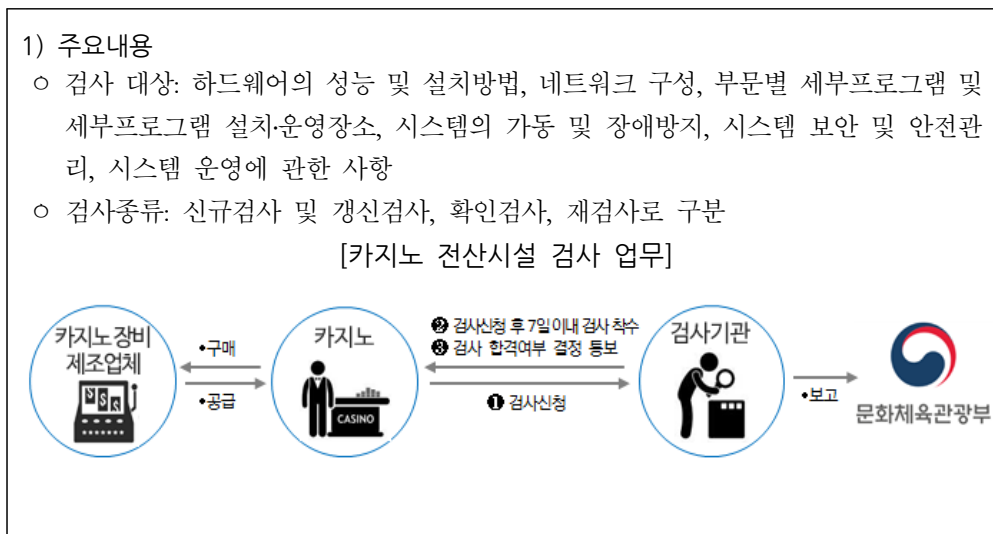
[2017년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업무 결산 현황]

대상시설	현장검사 건수	수수료
· 16개 외국인전용 카지노시설(서울 3, 인천 1, 부산 2, 대구 1, 강원 1, 제주 8) · 1개 내국인출입 카지노시설(강원랜드)	10회	7,731,300원 (검사수수료 : 5,872,100원, 출장비 : 1,859,200원)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업무는 연구원의 전신인 한국관광연구원이 1996년 카지노 전산시설의 운영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후 검사기관으로 최초 지정받았으며, 이후 한국관광연구원이 한국문화정책개발원과 통합되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설립(2002. 12)⁴⁾된 후 해당 업무를 인계받은 것이다.

[참고: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업무 개요]



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설립 연혁]

- 1985. 11 : 교통개발연구원 내 관광연구실 설치
- 1987. 02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내 문화발전연구소 설립
- 1994. 07 : 재단법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설립
- 1996. 03 : 재단법인 한국관광연구원 설립
- 2002. 12 :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설립
- 2007. 02 :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 2016. 01 : 문화정보원의 통계기능 이관
- 2016. 05 : 문화기본법 개정으로 특수법인 전환(2016.5.29.)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기준

-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업무 규정」 [별표1]에 따라 하드웨어의 성능 및 구성, 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상태, 프로그램의 구성, 시스템 가동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한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
 - 하드웨어의 성능 및 구성 검사: 주전산기 및 단말기의 설치장소와 각 하드웨어의 업무 수행 여부
 - 네트워크 구성: 근거리 통신망(LAN)을 기준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 프로그램 구성: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지 등
 - 카지노 전산시스템: 영업시간 중에만 가동되어야 하며, 시스템 가동상태의 주기적 점검, 전산장애상황 기록 및 유지, 백업 및 백업자료 보관업무 등을 점검.
또한 업무별 단말기 조작권한, 프로그램 권한 등록부 기록, 단말기 취급자 비밀번호 조립사용 여부, 프로그램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여부 확인, 전산입력 일일마감 및 집계 이상 유무 점검, 전산실 관리 등 시스템 보안 및 안전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 전산실 관리: 전산실 보호대책 점검, 무정전전압기 설치 및 가동여부, 전산실 출입 현황기록유지여부 등을 점검
 - 전산실 보호대책: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 위해방지대책 여부와 외부출입통제를 위한 이용출입문 지정 및 시건장치 설치 여부

자료: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업무 규정」 및 「카지노 전산시설 제도개선 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 2017. 9)을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연구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고유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IT기술의 발전과 카지노 산업 환경 추세를 반영하여 전산시설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카지노 사업자가 그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구비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전문기관의 검사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투명한 카지노 운영을 담보하고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국관광연구원과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통합되어 연구원이 설립됨에 따라 연구원이 한국관광연구원의 업무를 인계받은 측면은 있으나, 연구원은 문화에

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기본법」 제11조의2⁵⁾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카지노 전산시설에 대한 검사는 같은 조 제5항에 규정된 연구원의 주요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 연구원은 1인의 담당자만을 배정하여 검사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구원은 해당 기관이 작성한 연구보고서에서 연구원의 카지노 영업 및 회계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직접 언급하고 있는 실정이다.⁶⁾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출범(2013.12.23.)하여 게임물의 등급분류, 제작·유통 또는 아케이드·온라인게임물 단속과 정상적인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원만이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에 전문성이 있거나 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체계적인 전산시설 검사 수행을 통한 카지노 전산시설의 안전성과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검사기관 지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문화기본법」

제11조의2(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①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2. 문화관광을 위한 조사·평가연구
3. 문화복지에 관한 환경조성에 관한 조사연구
4.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5. 여가문화에 관한 조사연구
6. 북한 문화예술 연구
7.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8.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관련 정책정보·통계의 생산·분석·서비스
9. 조사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10.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6) 문화체육관광부, 「카지노 전산시설 제도개선 방안 연구」, 2017. 9, p. 76, 116.

가. 현 황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¹⁾에 따라 설립(2005년 2월 3일)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이다.

2017년 결산 기준 진흥원의 인력 현황을 보면, 현원 기준으로 정규직 49명, 무기계약직²⁾ 62명, 기간제 계약직 3명 등 총 1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인력 현황]

(2017년 기준)

구분	정규직								무기 계약직	기간제 계약직	계
	원장	사무처장	1급	2급	3급	4급	5급	총계			
정원	1	1	2	6	9	10	20	49	67	3	119
현원	1	1	1	3	10	12	21	49	62	3	114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진흥원은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기관 운영비 및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 사업³⁾ 외에 학교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사업, 토요문화학교 사업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관련 수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세부사업별 편성된 인건비 예산을 중심으로 보면, 정규직 직원은 전원 “한국문

윤희호 예산분석관(yoonhh@assembly.go.kr, 788-4683)

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①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이를 공무원이란 용어로도 표현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용어를 통일한다.

3) 코드명: 일반회계 1631-302, 해당 사업은 2018년 예산부터 ‘문화예술단체운영 지원’ 세부사업(일반회계, 1631-300)으로 통합되었음

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 사업” 중 인건비 내역에 편성되어 있으며, 그 밖의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계약직 직원의 인건비는 해당 사업의 운영비·경상사업비 내역 또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등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다른 세부사업에 각각 편성되어 있다.

이 중 무기계약직의 경우 62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은 25억 5,700만원(21억 3,700만원 집행)이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지원(운영비) 사업 등 8개 세부내역사업에 각각 편성되어 있다.

[2017년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별 인건비 결산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 세부내역사업	세부내역 사업예산	인원				2017년	
		계	정규직	무기 계약직	계약직	무기 계약직 예산	무기 계약직 집행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지원 (163-300의 내역사업)							
(인건비)	2,302	49	49	0	0	-	-
(운영비)	1,906	11	0	10	1	411	268
(경상사업비)	2,290	3	0	3	0	145	118
문화예술교육 활성화(1637-302)							
(학교문화예술교육활성화)							
- 예술강사지원사업	48,966	19	0	18	1	776	665
- 예술꽃씨앗학교	4,000	3	0	3	0	110	90
-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1,000	0	0	0	0	37	34
(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							
- 소외아동 오케스트라지원	4,958	4	0	4	0	143	135
-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27,061	17	0	16	1	641	563
-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 지원	2,544	2	0	2	0	73	67
토요문화학교 운영(1637-301)	6,952	6	0	6	0	221	197
합계	101,979	114	49	62	3	2,557	2,137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나. 분석의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기관운영비와 다른 세부사업의 사업비 항목에 각각 계상하였는데, 이는 예산편성지침 및 공공기관 경영공시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인건비 항목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기타공공기관에 준용될 수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는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원칙적으로 인건비 비목에 편성하되 정부 수탁사업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사업비 비목 내에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⁴⁾

기타공공기관인 진흥원은 특별한 예외규정이 있지 않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고, 무기계약직 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예술강사지원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등은 진흥원 정관에 규정되어 고유사업의 성격이 있다고 보이므로,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기관운영비 등 다른 비목에 편성할 불가피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관]

제4조(사업) ①교육진흥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 관계 기관 및 학교, 교육시설·단체 등 참여주체 간 협력망 구축·운영
2. 학교·사회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3. 아동·청소년 대상 체험·감상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능력 계발
4.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전문인력 D/B구축 등 인적자원 관리
5. 교원의 연수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6.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통계
7.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및 평가
8. 문화예술교육 시설·장비의 확충 및 관리
9. 문화예술교육 지식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관리
10.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11. 문화예술교육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및 출판
12. 그 밖에 교육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4)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p. 8

구체적으로 진흥원 제출 자료에 따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지원 사업 중 “운영비” 및 “경상사업비”에 편성된 무기계약직의 업무를 보면, 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는 무기계약직은 경영지원본부에 소속되어 입찰진행 및 구매계약체결 업무, 이사회 운영, 정관 및 규정 관리, 예산관리 및 자금 출납, 회계결산, 급여관리, 각종 세무신고, 교육 및 근태관리, 의전(비서, 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경상사업비에 편성되어 있는 무기계약직은 정보뱅크 웹서비스 및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운영비와 경상사업비에 편성된 무기계약직의 업무가 정규직 업무와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진흥원은 설립 이후 2006년에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1637-302) 사업을 통해 진흥원이 추진하는 예술강사지원 등 사업은 기관이 설립 초기(2007년)부터 추진된 주요 고유사업이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직원의 업무와 임금 조건의 차이가 없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에 매년 인건비·경상운영비 및 사업비 지출내역을 공시하고 있는데, 진흥원이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경상운영비 또는 다른 사업비 항목에 포함하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인건비 항목 금액은 적게 공시되고 기관운영비 및 사업비 항목은 높게 공시되는 부정확성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기관운영 또는 사업비 항목에 계상하는 것은 위 지침에 어긋나고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의 정확성이 낮아지므로, 진흥원은 무기계약직 인건비 예산을 인건비 내역사업으로 이관 편성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문화예술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술강사를 파견하여 문화예술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¹⁾의 내역사업인 학교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사업 예산액 489억 6,600만원을 사업수행주체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교부하였으며, 진흥원은 이 중 466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22억 8,0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다.

[2017회계연도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95,631	95,631	0	0	95,631	95,631 (89,872)	0	0 (5,758)
학교문화예술교육활성화	54,116	54,116	0	0	54,116	(51,709)	0	(2,406)
학교 예술강사 지원	48,966	48,966	0	0	48,966	(46,685)	0	(2,280)

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교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괄호 안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실제 집행 또는 불용 처리한 금액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에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교육부 인가) 등 8,628개(복수 집계시 11,538개) 학교를 대상으로 5,237명의 예술강사를 파견하여 총 143만 시수의 예술교육을 실시하였다. 학교 예술강사는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등 총 8개 분야에 대한 관련 학위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일 경우에 선발되며, 진흥원 또는

윤희호 예산분석관(yoonhh@assembly.go.kr, 788-4683)

1) 코드명: 일반회계 1637-302

이 사업을 추진하는 광역센터나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신청 학교에서 예술교육을 실시하고 강의료를 받게 된다.

2017년 결산 기준으로 예술강사가 실시한 총 수업시수 137만 시간을 전체 강사수 5,237명으로 나누면 1인당 수업시수는 평균 262시간이다. 보통 예술강사는 광역센터 등 지역운영기관에서 학사일정에 따라 3월부터 12월까지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선발되므로, 강사 1인당 월평균 수업시수는 약 30시간 내외로 계산할 수 있다.

[학교 예술강사 배치 현황(2017년 결산 기준)]

(단위: 명, 시수, 천원)

강사수 (A)	수업시수 (B)	인건비 집행 (C)	강사 1인당 수업시수 (B/A)	강사 1인당 인건비 (C/A)	1수업시수당 인건비(원) (C/B)
5,237	1,371,595	74,853,199	262	14,293	54,574

주: 1. 인건비 집행(C) 총액은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추진한 지역운영기관에서 집행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함(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1) 진흥원에서 교부하는 국고 및 지방교육재정 외에 2) 진흥원 교부액 이외 문체부 및 지자체에서 지역운영기관 대상 별도 교부하는 국비/지방비도 포함되어 있음)

2. 인건비 집행(C) 총액은 “2017 운영기관 정산 결과보고”에 따른 인건비 집행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는데, 인건비 집행액 내 강사비, 교통비, 원천세 및 보험료, 기타 수당, 사업 운영관리비 등 운영기관 집행 비용이 일체 포함되어 있음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나. 분석의견

전문적이고 유능한 예술강사가 참여하여 학교 예술강사 사업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선발과 배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 예술강사는 사회 예술강사에 비해 평균 근무기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2017년 학교 예술강사의 평균 근무기간은 5년 8개월로 사회 예술강사(2년 10개월) 대비 2년 10개월 길며, 전년과 비교하여 4개월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술강사 평균 연령 및 근무기간 현황]

연도	구분	학교 예술강사	사회 예술강사	계
2016	현원(명)	5,047명	492명	5,539명
	평균연령(세)	34.9세	39.0세	35.2세
	평균근무기간	5년 4개월	3년 1개월	5년1개월
2017	현원(명)	5,237명	494명	5,731명
	평균연령(세)	35.5세	39.4세	35.8세
	평균근무기간	5년 8개월	2년 10개월	5년4개월

주: 1. 학교 예술강사의 경우, 전년도 하반기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함

2.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함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는 진흥원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 예술강사의 채용 및 배치 과정에서 기존강사를 우대하는 규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 예술강사는 매년도마다 광역센터 등 지역운영기관에서 학사일정에 따라 3월부터 12월까지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선발되는데, 기존강사 우대조항이 없는 사회 예술강사와 달리 학교 예술강사의 경우 선발 기준에서 전년도 활동 이력이 있는 예술강사에게 면접심사를 생략하거나 동점자 발생시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다.²⁾

2) [학교 예술강사의 기존강사 우대조항 관련 규정 일부]

□ 선발전형				
구분	접수	증빙서류 제출	서류 심사	면접(실기) 심사
신규	O	O	O	O
기존	O	X	X	X
기존 (활동경력없음)	O	X	X	O
기존(유형변경)	O	O	O	O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선발 고려기준

- 동일지역 거주자 우선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참여 경력 보유자
- 문화예술교육사 또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 강사활동연도 기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청년(만 34세 이하)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 예술강사 채용 공고문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학교 예술강사의 기존강사 우대조항 관련 내용]

규정명	규정내용
예술강사 선발/심사	○ 직전년도 1시수 이상 활동한 ‘전년도 활동강사’의 경우, 면접심사 생략 ○ 동점자 발생시 예술강사 참여 경력 보유시 우선 선발
예술강사 배치	○ 전년도 출강학교 중 1개 학교에 한하여 우선 배치신청 가능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그런데,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현재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중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층(참여목표비율 70%)등에 한 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업무지원형 직접일자리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그 목적이 취업취약계층이 상시적인 일자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마중물 역할에 있다고 볼 때,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참여자의 반복참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³⁾ 감사원도 청년고용대책 성과감사를 통해 반복참여 제한 및 청년층 우선선발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감사 결과로 제시한 바 있다.⁴⁾

학교 예술강사 사업에서 기존 강사의 반복참여가 높게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진흥원은 해당 사업이 문화예술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교육사업으로서, 청년 선발 비율 쿼터제 등의 우선선발제도가 교육프로그램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존 참여자 반복 참여를 제한할 경우 문화예술 전문성을 가진 역량 있는 강사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참여가 어려워 강사수급의 문제 등 원만한 사업수행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3) 반복참여의 비율이 높은 것은 두 가지 면에서 그 유인이 판단 가능한데, 첫째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민간에서의 고용상황이 어려워져 민간의 상시적 일자리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참여자가 반복적으로 직접일자리에 참여하는 것이고, 둘째는 참여자가 직접일자리 사업을 참여하는 목적이 상시적 일자리로의 전환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지 않고, 단순히 자신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직접일자리 사업에 기대는 경우 반복적으로 사업을 참여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불가항력적이지만 후자의 경우는 정책으로 인한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실제 반복참여가 높은 이유는 상기한 두 가지 요인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특정 사업의 반복참여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분명 사업의 성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한국개발연구원, 「일자리사업 전면개편 심층평가 연구」, 2016. 9, p. 581).

4) [감사원 청년고용대책 성과감사 주요내용]

진흥원의 의견대로 예술강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 수업 관련학과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 등 일정 자격이 요구하고 있어 전문성이 필요하며, 전문성과 경력을 보유한 예술강사의 반복참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은 있으나, 기존 강사에 대한 별도의 심사 등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강사 활동기간이 연장될 경우 학생들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의 질적인 관리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향후 진흥원 및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의 관점에서 예술강사 전문성 강화 및 안정적 근무여건 제공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청년층 우선선발제도가 없어 청년층 참여율이 낮음으로 청년층 우선선발제도 마련 필요
- 2017년 사업추진 시 운영기관 모집공고문에 강사 선발시, '청년층 우선선발' 명시

(단위: 명, %)

	전체 참여실적			29세 이하 참여실적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참여자 수	4,485	4,735	4,916	1,728	38.5	1,657	35.0	1,537	31.3

- 반복참여 과다로 제한 필요함. 제한된 범위에서만 반복참여 허용 바람
- 2017년 사업부터 강사선발 시 기존 활동강사도 심사 받도록 선발제도 개선(기존 활동강사 심사면제 제도 개선)

(단위: 명, %)

총 참여자	신규참여		연속 참여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년	3년	4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4,916	464	9.4	557	574	265	3,056	79.2	62.2

주: 2015년 기준

자료: 감사원, 「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2006)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가. 현 황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¹⁾에 따라 설립(2005년 2월 3일)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이다.

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 사업²⁾ 외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³⁾, 토요문화학교 운영⁴⁾, 문화예술ODA⁵⁾ 등 세부사업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결산 기준으로 4개 세부사업을 통해 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091억 8,600만원을 교부받아 이 중 1,021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70억 7,6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다.

한편, 진흥원은 사업기간 연장 및 정산실적보고 기간 확보를 사유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지원 사업, 예술강사지원사업, 소외아동 오케스트라지원 사업 등의 6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 변경 신청⁶⁾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개월 또는 2개월의 사업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윤희호 예산분석관(yoonhh@assembly.go.kr, 788-4683)

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①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2) 코드명: 일반회계 1631-302

3) 코드명: 일반회계 1637-302

4) 코드명: 일반회계 1637-301

5) 코드명: 일반회계 1637-304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7회계연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대상 보조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내역사업)	예산액		실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사업기간
	본예산	추경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지원 (1631-302)	6,498	6,498	5,731	0	767	17.1~18.2 (2개월연장)
문화예술교육 활성화(1637-302)	95,631	95,631	89,872	0	5,758	
(학교문화예술교육활성화)	54,116	54,116	51,709	0	2,406	
- 예술강사지원사업	48,966	48,966	46,685	0	2,280	17.1~18.2 (2개월연장)
- 예술꽃씨앗학교	4,000	4,000	3,938	0	62	
-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1,000	1,000	973	0	27	
문화예술교육사활용 지원	150	150	113	0	37	
(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	34,563	34,563	31,760	0	2,803	
- 소외아동 오케스트라지원	4,958	4,958	4,879	0	79	17.1~18.1 (1개월연장)
-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27,061	27,061	24,435	0	2,626	17.1~18.2 (2개월연장)
-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 지원	2,544	2,544	2,446	0	98	17.1~18.2 (2개월연장)
토요문화학교 운영(1637-301)	6,952	6,952	6,403	0	549	17.1~18.1 (1개월연장)
문화예술ODA(1637-304)	105	105	103	0	2	
계	109,186	109,186	102,109	0	7,076	

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 사업은 2018년 예산부터 '문화예술단체운영 지원' 세부사업(일반 회계, 1631-300)으로 통합되었음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진흥원은 보조 사업의 기간 연장 승인과 관련하여, 보조금 예산의 집행 및 불용 처리한 것 외에 2018년으로 이월 처리한 예산액은 없는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나. 분석의견

첫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사업 추진 지연이나 사업기간 연장 등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이월을 최소화하여 2017년 예산을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이월은 명시이월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국가재정법」 및 「2017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회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⁷⁾ 진흥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위지침과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적용 또는 준용할 수 있다.⁸⁾

문화체육관광부 및 진흥원은 승인 절차를 거쳐 이 사업 기간을 2018년 1월 또는 2월로 1~2개월 연장하였다. 그런데, 사업 연장 기간에 맞추어 2017년을 도과한 사업 예산 집행은 이월 처리를 하지 않아 정부 결산서에는 이 사업이 2017년에 이월 처리 없이 전액 집행된 것으로 회계 처리되어 미흡함이 있다.

7)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8)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일부)]

- | |
|--|
| <p>☐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2017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비의 주체, 지급대상, 사용용도 등 성격상 준용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본 지침을 적용하며, 기타공공기관은 본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p> |
|--|

[이월 처리하지 않는 회계 처리 예시]

(단위: 천원)

세사업명	결의일자	지출액	지출사유
문화예술 교육진흥원 운영지원	18-1-16	13,814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선금급 지급
	18-1-16	15,000	아르떼 아카데미 연수 운영 대행 용역 대가 지급
	18-1-23	23,251	진흥원 사무용 소프트웨어 조달구매
예술강사 지원사업	18-1-16	309,000	아르떼 아카데미 연수 운영 대행 용역 대가 지급
	18-2-1	34,500	문화예술교육 효과 세부지표 구축 및 조사 연구 대가 잔금 지급
	18-2-23	104,00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대가 지급
	18-2-28	10,000	콘텐츠연구회 해외기관 협력형 콘텐츠 개발 및 연구 연구개발비 지급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 지원사업	18-1-11	66,000	프로그램 기획형 시범 운영단체(5개) 1차 지원금 교부금 지급
	18-1-23	32,000	문화예술치유 마음치유, 봄처럼 성과공유 회 개최 및 사례집 제작 용역 선금급 지급
	18-2-9	66,000	프로그램 기획형 시범 운영단체(5개) 2차 지원금 교부금 지급
소외아동 오케스트라지원	18-1-25	12,000	사업 만족도 조사 연구 잔금 지급
사회문화 예술교육 지원사업	18-1-12	96,378	12월 사회예술강사(아동분야) 강사비
	18-1-16	176,000	아르떼 아카데미 연수 운영 대행 용역 대가
	18-2-6	131,942	문화예술 명예교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잔금 지급
	18-2-23	65,100	해외전문가 초청워크숍 운영 잔금 지급
토요문화학교 운영	18-1-23	81,000	문학 시범사업 일상의 작가 중도금 지급
	18-1-25	19,868	지역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워크숍 운영 잔금 지급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진흥원은 보조금 이월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회계 처리 과정에서 이월
규정을 준수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관리·감독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일부 사업에서 지출결의가 보조사업 기간연장을 도래한 이후에 집행되는 등 회계처리의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별로 최대 2개월의 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회계상 이월처리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월 처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연장된 기간(최대 2018년 2월 28일) 이내에 지출을 마감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다음 표와 같이 일부 사업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기간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에서도 2018년에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업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내역은 전체 150건으로 집행금액은 20억 6,465만원에 이른다.

[사업기간을 초과하여 회계 집행한 사례]

(단위: 천원)

세부사업(내역사업)	사업기간	사업기간 초과 집행사례		
		적요	금액	집행시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지원	17.1~18.2 (2개월연장)	문화예술교육자원 정보뱅크 3단계 소장자료 목록화 사업 대가지급	54,600	18.3.5
		50+ 세대 문화예술교육 활동 증진을 위한 기초연구 대가 지급	15,000	18.3.20
		50+연구 결과보고회 자문비 등 6건	2,577	18.3.5 ~3.20
예술강사지원사업	17.1~18.2 (2개월연장)	2017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 관리 위탁용역 대가지급	308,580	18.3.5
		집체연수시스템 기능 개선 관련 소프트웨어 구매	74,800	18.3.6
		예술강사 관계자 워크숍 용역비 등 21건	107,663	18.3.2 ~3.23
예술꽃씨앗학교		예술꽃 씨앗학교 성과공유회 운영 잔금	25,710	18.1.16
		예술꽃 씨앗학교 컨설팅 평가단 운영 잔금 지급	77,500	18.2.14
		컨설팅 출장 등 8건	12,772	18.1.3 ~2.14

(단위: 천원)

세부사업(내역사업)	사업기간	사업기간 도과 집행사례		
		적요	금액	집행시점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유아 문화예술 콘퍼런스 운영 잔금 지급 등 10건	44,728	18.1.12 ~3.2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지원		2017년 직접사업 정산보고서 회계 검증 수수료 이체	282	18.3.2
소외아동 오케스트라 지원	17.1~18.1 (1개월연장)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 변화 연구 대가지급 등 4건	54,271	18.2.8 ~3.5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17.1~18.2 (2개월연장)	농산어촌 이동형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운영 잔금	143,270	18.3.2
		EBS 연계 창의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및 방송 제작에 대한 잔금	240,000	18.3.13
		문화예술교육 오리엔테이션 임차비 등 64건	307,615	18.3.2 ~3.23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17.1~18.2 (2개월연장)	문화예술치유 마음치유, 봄처럼 성과공유회 개최 및 사례집 제작 대가 등 9건	38,480	18.3.6 ~3.23
토요문화학교 운영 (1637-301)	17.1~18.1 (1개월연장)	온오프라인 언론홍보 추진 중도금 지급	120,000	18.2.27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주말 문화여행 운영 잔금 등 17건	418,811	18.2.1 ~3.22
문화예술 ODA(1637-304)		베트남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 운영 잔금	17,995	18.1.18
계		150건	2,064,654	

자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향후 진흥원은 당초 사업기간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회계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서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금을 운용·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20조²⁾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위원회는 문예기금을 활용하여 예술인력육성, 예술창작역량강화 등 사업을 추진한 것 외에 기금 여유자금을 조성하여 금융상품에 투자³⁾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지출 항목 중 통화금융기관예치 사업⁴⁾은 위원회가 여유자금으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현금성자산(MMF), 연기금투자폴,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한 것이며, 수입 항목 중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과목⁵⁾은 약정만기 또는 사업비 지출을 위하여 투자한 금융상품을 현금으로 회수한 것을 의미한다. 기타재산수입⁶⁾ 과목은 여유자금

윤희호 예산분석관(yoonhh@assembly.go.kr, 788-4683)

1)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코드명: 문화예술진흥기금 9701-970

5) 코드명: 문화예술진흥기금 85-852

6) 코드명: 문화예술진흥기금 54-545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을 집계한 것이다.

2017년 결산 기준으로 수입 항목 중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과목은 계획현액 1,623억 9,900만원의 2배 수준인 3,354억 1,000만원을 징수 결정 및 수납 처리하였으며, 기타재산수입 과목에서는 계획현액 32억 8,000만원 중 30억 2,100만원을 징수 결정 및 수납 처리하였다.

[(수입)2017회계연도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기타재산수입 과목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162,399	162,399	162,399	335,410	335,410	0	0
기타재산수입	3,280	3,280	3,280	3,021	3,021	0	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2017년 결산 기준으로 지출 항목 중 통화금융기관예치 사업에서는 계획현액 3,026억 3,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지출)2017회계연도 통화금융기관예치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통화금융기관 예치	309,481	302,631	0	0	302,631	302,631	0	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첫째, 저금리 기조에서 문화예술위원회가 기금 수익 확충을 위해 금융상품 활용 등 수익률을 제고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회계처리 과정에서 운용 규모를 과다 집계한 문제가 있다.

2017회계연도 동안 위원회가 문예기금을 운용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현금으로 회수받은 금액은 3,354억 1,000만원, 이자수입은 30억 2,100만원이었으며, 금

용기관으로 예치한 금액은 3,026억 3,100만원이다. 2017년 기준 문예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평잔(597억 7,900만원)의 5.06배 수준이다.

2017년 결산에서 위원회의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률 실적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다른 기금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위원회가 적극적 여유자금 활용을 통해 수익 제고를 노력하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⁷⁾⁸⁾⁹⁾

- 7) 여유자금 운용에 있어 전년 대비 특이사항으로는 위원회가 주식이나 MMF 등 단기 금융상품을 활용함에 따라, 여유자금평잔 대비 운용규모(B/A)가 높게 나타났으며, 수익률도 제고되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 2017년도 기금운용실적보고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연도별 자산운용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여유자금 운용현황(평잔)			여유자금 운용규모 (B)	(B/A)
	소계(A)	위탁운용			
		연기금투자품	기타		
2015	107,091 (5.60)	61,120 (2.25)	45,971 (8.00)	125,935	1.18
2016	98,141 (3.41)	38,068 (1.33)	60,073 (2.56)	162,399	1.65
2017	59,779 (11.88)	19,832 (1.30)	39,947 (13.44)	302,631	5.06

주: 괄호 안은 수익률(%)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결산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8) 위원회는 연기금투자품 외 만기 1년미만 기업어음에 투자하는 등 투자 다원화를 시도하였으며, 2017년 주식시장 회복을 기회로 삼아 수년간 평가손실 상태의 주식형 펀드를 환매하는 등 운용함으로써 11.88%의 수익률을 달성하였다는 의견이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 2017년도 기금운용실적보고서」).

[2017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 평잔 및 수익률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만기별구분		자산군구분	평잔	수익률
단기 자산	현금성자금	키움 MMF	382	1.24
		MMF(연기금투자품)	13,532	1.34
		확정금리형	13,177	3.1
	유동성자금	확정금리형(CP,ABCP등)	9,372	4.12
	합계		36,463	2.54
중장기 자산	확정금리형		4,978	3.67
	국내채권형(연기금투자품)		6,300	1.21
	국내주식형		8,701	25.21
	해외주식형		686	22.78
	대체투자		2,652	94.2
	합계		23,316	24.95
합계			59,779	11.88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 2017년도 기금운용실적보고서」, p. 20.

- 9) 다만, 최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는 배경으로 과거 투자하여 부실화된 자산이 2013년 이후부터 회수된 측면도 존재한다.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 평가에서 과거 감액된 부실자산의 회수분이 수익에 포함되어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같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운용 현황 비교]

(단위: 백만원, %)

기금명	운용주체	여유자금 평잔(A)	운용규모 (B)	(B/A)	수익률
문화예술진흥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9,779	302,631	5.06	11.88
영화발전기금	영화진흥위원회	221,747	221,691	1.00	2.39
지역신문발전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언론진흥재단 위탁)	5,264	1,311	0.25	1.36
언론진흥기금	언론진흥재단	7,652	4,285	0.56	1.36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129,608	402,982	3.11	1.24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공단	570,936	585,260	1.03	2.5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결산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성

다만, 위원회는 여유자금 운용 내역을 회계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입과 지출을 중복 처리하여 실제보다 여유자금운용 규모를 과다 집계하는 등 회계 처리에 미흡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위원회는 현금을 MMF 등에 투자할 목적으로 통화금융기관에 100억원 예치하였는데, 해당 거래는 투자를 위한 현금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수입 항목에도 동시에 회계 처리하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여유자금 운용 처리 예시]

(단위: 백만원)

수입			지출		
사업명	내용	금액	사업명	내용	금액
통화 금융기관 예치금회수	일반자금 → 적립금 대체 (삼성 당일환매MMF)	10,000	문화예술진흥기금 에서 통화금융기관 으로의 예치금	일반자금 → 적립금 대체 (삼성 당일환매MMF)	10,000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성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경륜경정수입금(200억원) 및 기금전입금(1,745억원) 등을

이 과거의 대체투자 이후 부실화된 자산에서 일부분이 회수되는 특이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실자산 회수분을 제외한 별도의 수익률을 산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16회계연도 공공기관 주요사업 집행 점검분석」, p. 315).

단기이자수익 등을 목적으로 통화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예치한 후 일반자금으로 회수(2,025억원, 17억원)하여 사업비 집행 또는 여유자금 운용에 사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의 거래(현금수입, 현금지출)를 모두 수입(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과 지출(통화금융기관예치)에 동시 회계 처리한 결과 여유자금 운용 규모가 실제보다 과다 집계되었다.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수입) 및 통화금융기관예치(지출) 집행 세부내역]

(단위: 건, 백만원)

적요	현금흐름구분	건	금액
투자적립금 → 일반자금	수입	66	202,519
경륜경정수익금 → 일반자금	수입	1	1,723
만기도래 기업어금·적립금 등 인출	수입	7	32,900
경륜경정수익금 → 투자적립금	지출	3	20,000
일반자금 → 투자적립금	지출	26	174,509
적립금 인출 → 적립금 재위탁	수입&지출	8	34,494
계		111	466,146

주: 1. 투자적립금이란, 연기금투자상품, MMF, 전단채 등에 투자를 목적으로 투자회사에 위탁(적립)한 금액을 의미함

2. 위원회는 현금흐름 총액 4,661억원에 결산조정(△1,635억원) 절차를 거쳐 3,026억원의 여유자금 운용규모를 회계처리함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금전입금과 수입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금의 흐름을 여유자금회수(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수입)와 여유자금운용(통화금융기관예치, 지출)에 중복 계상하는 것은 현금의 이입은 수입으로, 현금의 이출은 지출로 처리하는 현금주의 회계처리 방식에 어긋나므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수입·지출 규모를 과다 집계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17년 높은 기금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충당으로 인한 적립금 감소가 심화되어 기금 고갈이 우려되므로, 별도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17년 결산 기준으로 문예기금 자산규모는 354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3억 9,500만원(△41.72%) 감소하였다.

[2017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A)	2017(B)	(B-A)	(B-A)/A
기금적립금	60,876	35,481	△25,395	△41.7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04년 5,272억 원에 달하던 문예기금 적립액은 기금 모금 폐지¹⁰⁾에 따른 수입 감소¹¹⁾와 사업비를 온전히 적립금으로부터 충당하여 사용하는 지속적인 적자 예산 편성으로 매년 300여억 원씩 감소된, 결과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적립액은 355억원으로 2004년의 6.7% 수준인 실정이다.

[연도별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2004(A)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B)	(B/A)
기금 적립금	5,272	2,522	2,395	1,335	884	609	355	6.7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금 고갈이 심화되던 중 2009년 「경륜·경정법」 개정을 통해 경륜경정수익금의 일부(24.5%)가 전입¹²⁾되고, 2016년부터 관광개발기금 500억원, 국민체육진흥기

10) 헌법재판소에서 문예진흥기금 모금의 모금액·모금대행기관의 지정·모금수수료·모금방법 및 관련 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및 제19조의2 제3항이 헌법 제75조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있었다(헌재 2003.12.18., 2002헌가2).

11) 문예기금의 주요 조성채원이었던 모금제도는 1973년 6월 22일 문화공보부장관의 모금승인을 받아 시행되었고, 같은 해 7월 22일부터 전국 627개 극장에서 기금 모금이 시작되었다. 그 후 30여년간 모금제도는 문예진흥기금의 주요 조성 채원이었으나, 국민경제에 대한 부담이라는 명분 때문에 각종 정치사회적인 모금을 폐지하던 와중에 정부의 준조세 정비 방침에 따라 2001년에 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거 2004년 1월 1일부터 기금 모금이 폐지되었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 2017년도 기금운용실적보고서」, p. 18).

12) 「경륜·경정법」 제18조(수익금의 사용)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의 시행에 따른 제15조제1항의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09.5.21., 2014.5.28., 2017.12.19.>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 다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국민체육진

금 500억원 등 공공기금이 전입되어 적립금 감소 추이가 다소 완화되었으며, 2018년도에는 일반회계전입금(91-911) 500억원이 문예기금으로 전입되는 등 전입금 규모가 2,321억원으로 2017년 1,372억원 대비 2배 가까이 증가되어 기금적립금 잠식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향후 별도의 안정적인 재원이 마련되지 못하면 기금적립금 잠식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향후 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공공재원으로서 문예기금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출 구조조정 또는 신규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적립금 사용에 따른 기금 고갈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홍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선수육성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가. 현 황

K-Arts디지털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창작산실 작품을 비롯한 국내 대표 우수공연들의 고품질 쇼케이스 영상 및 홍보 트레일러를 제작하여 자체 홈페이지 및 다양한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예술창작지원 사업¹⁾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7년도 이 사업 계획액 10억원 중 5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9,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8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다.

[2017회계연도 K-Arts디지털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예술창작지원	24,659	24,659	389	0	25,048	23,683	744	621
K-Arts 디지털플랫폼 구축 및 운영	1,450	1,000	0	0	1,000	589	393	1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사업 예산규모의 축소, 사업추진(용역계약) 지연에 따른 예산 이월이 발생되었으므로, 사업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디지털 콘텐츠를 발굴(시범공연), 평가하고 이를 우수작품 및 레퍼토

윤희호 예산분석관(yoonhh@assembly.go.kr, 788-4683)

1) 코드명: 문화예술진흥기금 1661-300

리 기획공연지원을 통해 확산되도록 유통·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예술 창작의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적인 진출을 위해 창작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사업으로서 2017년도에 한시적으로 추진²⁾된 사업이다.

이를 위하여 디지털 아이디어 개발, 모형개발 지원과 온·오프라인 공간(플랫폼)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이 편성하였으나, 사업 변경 절차를 거쳐 축소되었다. 구체적으로 2017년 예산안에 편성된 이 사업의 당초 예산액은 공동창작실험아이디어 발굴 기획, 모형개발지원 등 14억 5,000만원으로 계획되었으나,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위원회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예산이 10억원으로 축소되었다.

[K-Arts디지털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 세부내역]

구분	당초	변경
계	14억 5,000만원	10억원
세부 내역	- 공동창작실험아이디어 발굴 기획 180백만원 : 30백만원×6건 - 모형개발지원 700백만원 : 70백만원×10건 - 인터랙티브 오프라인 실험공간 조성 150백만원 - 인터랙티브 온라인 플랫폼 구축 300백만원 - 플랫폼 운영 및 활용 창작지원 120백만원 : 10백만원×12개월	- [창작모형개발]가상공간 활용 창작모형 개발 지원 400백만원 : 800백만원×5건 - [사이버공간 향유 활성화] : 400백만원 · MCN연계 공연 온라인방송 제작 200백만원 · 포털사이트 연계 공연예술 실황중계 100백만원 · 공연영상 신기술 접목, 장애인 공연 예술 접근성 향상 영상 100백만원 - [공감대형성] 가상공간 공연예술 국제 컨퍼런스 개최 : 100백만원 - 사업운영비 100백만원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또한,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이 지연되어 예산 집행이 9월 이후부터 이루어짐에 따라 위원회가 이 사업을 통해 추진한 용역계약은 대부분 연말에 이루어졌으며, 용역계약 집행을 위한 잔금은 예산 이월 처리를 통해 2018년도말에 집행되었다.

2) 다만, 문화예술위원회는 사업명과 사업내용 등의 차이는 있지만 사업 목적이 유사한 기초예술사 이버공간개척(2억 7,000만원) 사업으로 2018년도에도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K-Arts디지털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 관련 용역계약 추진 현황]

(단위: 천원)

계약건	공고일 (재공고일)	마감일 (계약체결일)	사업기간	계약금	집행액	이월액
가상공간을 활용 창작모형 개발지원사업 용역	17-08-30 (17-09-19/ 17-09-29))	17-10-11 (17-11-06)	17-11-6~ 18-3-3	391,800	313,170	78,630
가상공간과 공연예술 국제 컨퍼런스 개최 용역	17-08-30 (17-09-19)	17-09-29 (17-11-03)	17-11-3~ 18-2-28	93,100	55,860	37,240
가상공간과 공연예술 국제 컨퍼런스 해외공연팀 초청 기획운영 용역	-	(17-12-11)	17-12-11~ 18-1-26	29,900	17,670	11,960
사이버 공간활용 무용장르 확산을 위한 댄스필름 제작	-	(17.11-10)	17-11-10~ 17-12-10	26,500	26,500	0
사이버공간활용 기초공연예술 향유 활성화를 위한 영상 및 사진 촬영 용역	17-10-25	17-11-10 (17-12-04)	17-12-4~ 18-4-30	104,000	62,400	41,600
17년 기초공연예술 사이버 공간개척사업 공연영상 신장르 개척(뮤지컬 편) 영상제작	-	(17-12-06)	17-12-6~ 18-1-31	28,650	17,190	11,460
2017년도 기초공연예술 사이버공간개척사업 신진예술가 포트폴리오 영상제작	-	(17-12-06)	17-12-6~ 18-3-16	28,468	17,081	11,387
2017년도 기초공연예술 사이버공간개척사업 관련 360VR 영상 제작	-	(17-12-04)	17-12-4~ 18-2-23	27,700	16,620	11,080
2017년도 기초공연예술 사이버공간개척사업 관련 360VR 영상(연주형 공연) 제작	-	(17-12-12)	17-12-12~ 18-2-18	19,600	0	19,600
2017년도 기초공연예술 사이버공간개척사업 관련 배리어프리 영상 제작	-	(17-12-11)	17-12-11~ 17.12.27	24,490	24,490	0
계				774,208	550,981	222,957

주: 1. 공고를 실시하지 않은 용역과제는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것임

2. “가상공간을 활용 창작모형 개발지원사업 용역” 과제의 경우 두번 유찰되어 총 3번 공고되었음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따라서, 위원회는 한시 사업 예산이 연내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¹⁾에 따라 설립되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공연시설물로서의 전당(이하 “문화전당(시설)”이라 한다)과 기관으로서의 전당(이하 “문화전당(기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당(기관)은 아시아문화자원과 동시대 예술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향유·창제작·체험의 장과 전문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책임운영기관이다.

한편, 아시아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 관련 홍보·교육·연구 및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²⁾에 따라 아시아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 설립되었으며, 아시아문화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현재 문화전당(시설)에는 문화전당(기관)

윤희호 예산분석관(yoonhh@assembly.go.kr, 788-4683)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운영) ① 국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을 광주광역시에 설립·운영한다.

② 문화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③ ~ ⑤ (생략)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아시아문화원의 설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 관련 홍보·교육·연구 및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아시아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아시아 문화의 연구·홍보

2.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창작·제작 및 유통

3. 아시아 문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아시아 문화 관련 국내외 기구 및 단체 협력망의 구성·운영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문화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④ ~ ⑩ (생략)

과 문화원의 2개 기관이 소재하고 있다.

문화전당(기관)과 문화원 2개 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이하 “아특회계”라 한다)에 편성되어 있다.

문화전당(기관)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 등 7개의 세부사업에 편성된 예산 243억 3,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81억 1,5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324억 4,500만원 중 304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9,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억 1,8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다.

[2017회계연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기관) 관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코드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2031-300)	2,892	2,892	7,477	△64 64	10,369	10,197	0	172
아시아문화포털구축 (정보화)(2032-500)	1,185	1,185	428	0	1,613	1,511	0	102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일부)(2032-302)	15,630	15,737	210	0	15,947	15,056	798	9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건비(7101-100)	3,402	3,402	0	0	3,402	2,597	0	805
공무원연금부담금 (7103-711)	291	291			291	284		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경비(7119-263)	30	30	0	0	30	30	0	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경비(총액인건비) (7118-223)	793	793	0	0	793	754	0	39
계	24,223	24,330	8,115	0	32,445	30,429	798	1,21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원은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³⁾ 사업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결산 기준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현액 328억 200만원을 문화원에 교부하였으며 문화원은 이 중 288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33억 9,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7,3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다.

3) 코드명: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2032-302

[2017회계연도 아시아문화원 보조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48,432	48,539	210	0	48,749	47,858	798	93
(아시아문화원보조)	32,802	32,802	0	0	32,802	32,802 (28,834)	0 (3,395)	0 (573)

주: 문화체육관광부가 아시아문화원에 교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괄호 안 금액은 아시아문화원에서 실제 집행 또는 불용 처리한 금액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운영하는 조직이 이원화됨에 따라 기능과 업무의 중복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운영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조직체계 개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문화전당(기관)과 문화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문화전당(시설)이 개관된 2015년에 각각 설립되었다. 두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 법률 외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예산상으로 문화전당(기관)은 아특회계 예산을 직접 집행하고 문화원은 부처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차이만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기관) - 아시아문화원 설립 연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06.9월 ○ 문화전당 건립공사 기공식: '08.6월 ○ 문화전당 신축건물 완공: '14.10월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체부 소속기관으로 설립: '15.7.20.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5.11.25.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 완료 (부설주차장 준공): '17.6.14.	○ 아시아문화원 설립: '15.10.01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식 개관: '15.11.25 ○ 준정부기관 지정: '16.02.03

자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및 아시아문화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아특회계에 편성되어 두 기관에 교부 또는 집행되는 예산 내용을 보면, 문화전당(기관)은 문화전당(시설)의 운영, 아시아 문화 관련 계획 수립과 문화원이 수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고, 문화원은 문화전당(시설)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공연·전시·연구 등 프로그램 수행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기관) - 아시아문화원 기관 비교]

구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기관)	아시아문화원
기관성격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책임운영기관)	공공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주요업무	- 문화전당 운영 기본정책·계획 수립 - 국제교류·대외협력 - 국유재산 관리 - 아시아문화원 지도감독	- 아시아문화 연구·홍보, 콘텐츠 창·제작 및 유통 - 아시아문화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 아시아문화 관련 국내외 기구 및 단체 협력망의 구성·운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조직	1전당장 4과	1원장 1연구소 1센터 4본부 2부 16팀
인원	공무원 50명(45명), 공무원 12명	정규직 96명(88명), 비정규직 75명

자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및 아시아문화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실제 두 기관의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기능의 중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사업에 따라 아시아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 중 문화환경 조성사업은 시설 관리와 관련된 것으로 문화전당(기관)의 기능에 속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⁴⁾ 문화전당(기관) 조직 내 연구교류과와 문화창조과에서 담당하는 아시아문화 조사연구, 예술극장 운영계획·정책 수립 등 기능은 문화원의 업무와 유사성이 높다. 또한, 문화전당(시설) 내 편의시설, 티켓,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운영 주체가 연도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두 기관간 업무구분이 모호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4)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환경 조성사업은 조형물 음악분수 제작 및 공용 공간(야외)가구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서 문화원은 2017년 예산 6억원 중 4,000만원만 집행하고 남은 5억 6,000만원 전액을 이월 처리하였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부대시설 운영주체 변동 현황]

	2015	2016	2017	2018
편의시설	문화원	문화원	전당	문화원
티켓운영	문화원	문화원	전당	문화원
주차장관리	문화원	문화원	전당	전당

주: 문화원은 아시아문화원, 전당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기관)을 각각 의미함
 자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무엇보다, 이원적 조직 구조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효율적인 성과 관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문화전당(기관)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전문적으로 운영하여 그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책임운영기관⁵⁾으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요 문화콘텐츠의 제작 업무는 문화원에서 담당하고 문화전당(기관)은 관리감독 기능만 수행하고 있어 책임성을 온전히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문화원의 경우도 매년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으로 공연 업무를 수행함에도 그 수입 실적은 문화전당(기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수입-지출이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화전당(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지출을 보면, 수입은 2017년 결산 기준으로 25억 1,083만원인데, 이는 문화전당(기관)과 문화원의 2017년도 결산 지출액

[2017회계연도 전당 문화환경조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48,432	48,539	210	0	48,749	47,858	798	93
(아시아문화원 보조)	32,802	32,802	0	0	32,802	32,802 (28,834)	0 (3,395)	0 (573)
전당 문화환경조성	600	600	0	0	600	600 (40)	0 (560)	0

주: 문화체육관광부가 아시아문화원에 교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괄호 안은 아시아문화원에서 실제 집행 또는 불용 처리한 금액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592억 6,300만원(각각 304억 2,900만원, 288억 3,400만원)의 4% 수준에 그치고 있어 대부분의 재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⁶⁾

[2017년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수입 계획 및 실적 내역]

(단위: 천원)

수입명		계획	실적	과목명
입장료	예술극장	0	232,982	입장료수입 (64-641)
	창조원(전시)	0	74,493	
	어린이문화원	0	396,728	
	민주평화교류원	0	2,892	
	보조사업 입장료 정산액	0	336,406	
	소계	0	1,043,501	
건물대여료	편의시설	0	330,698	건물대여료 (51-512)
	대관수입	77,300	73,170	
	소계	77,300	403,868	
기타잡수입	주차장	0	441,955	기타잡수입 (69-691)
	문화상품판매	0	8,088	
	기타(보조사업 수입 정산액)	0	613,416	
	소계	0	1,063,459	
합 계		77,300	2,510,828	

주: 2017년도 예산안에 공연수입, 주차장수입 등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문화전당(기관)은 2016년 예산편성 당시, 아시아문화원에서 보조사업으로 공연장 및 주차장 등 수익사업을 관리함에 따라 전당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대관료 수입만 일반회계에 편성하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임. 문화원 보조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연장, 주차장 등 사업수익금은 예산편성과는 별개로 아특회계 세입으로 결산 처리하였음

자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수익시설이 아닌 공공문화 복합시설로서의 기능이 중요할 수는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또는 수도권에 소재하지 않아 관람객을 충분히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는 있으나, 유사 공공기관의 수입구조에 비교할 때 수익 관리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6) 2017년 결산 기준 일반회계 전입금(91-911) 규모는 666억 2,900만원으로 아특회계 전체 수입액 867억 6,700만원의 76.8%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 결산 기준 공연수행 관련 기관별 자원(수입)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기관명	아시아문화전당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총지출(A)	59,263	43,274	6,028
자체수입(B)	2,511	28,645	1,792
(B/A)	4.2	66.2	29.7

주: 자체수입은 국고보조금 외 사업수입, 수탁사업수입, 기타수입 등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하여 문화전당(기관)과 문화원은 이원화된 운영체계에 대하여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⁷⁾에서 2020년 4월(2015.3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5년)까지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양 조직 간 업무 추진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향후 아특별 개정 논의에 맞춰 양 기관의 합리적 통합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설명으로 현재까지 구체적 계획 및 방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문화전당(기관)과 문화원은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의 성과와 수익성 제고를 위한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중복 해소를 위한 연계 및 기능·역할의 재정립 등 조직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문화전당 운영 위탁 규정의 유효기간) … 문화전당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 위탁은 이 법 시행일(15.4.13)부터 5년까지로 하되, 그 이후 정부는 문화전당의 성과평가를 한 후 전부 위탁한다.

가. 현 황

지역신문발전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및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 저소득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신문¹⁾을 무료로 제공하여 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려는 사업으로서 지역신문발전지원 사업의 내역사업²⁾이다.

해당 사업 예산은 30억원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용 위탁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이를 전액 집행하였다.³⁾

윤희호 예산분석관(yoonhh@assembly.go.kr, 788-4683)

1)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역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신문으로서 일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한다.

2) 코드명: 지역신문발전기금 1461-300의 내역사업

3) 한편, 언론진흥기금에도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사업이 언론공익사업(코드명: 언론진흥기금 1463-303)의 내역사업이 존재한다. 소외계층이 신청하는 신문이 지역신문인 경우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사업(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부터 예산이 지원되고, 그 외의 경우는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사업(언론진흥기금)으로부터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즉, 신청·제공되는 신문이 지역신문인지 여부에 따라 집행되는 사업의 차이가 존재하며 그 외 신청절차, 지원방식은 동일하다.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사업(언론진흥기금)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언론공익사업	8,204	8,204	0	8,204	8,002		202
소외계층구독료 지원	2,000	2,000	0	2,000	1,988	0	1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7회계연도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사업(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지역신문발전지원	8,612	8,612	0	8,612	8,225	0	387	0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3,000	3,000	0	3,000	3,000	0	0	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언론진흥재단 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신문 구독료 지원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므로, 각 사업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사업 간 연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4조4)에 따라 지역신문발전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부산시, 경상남도, 서울 동작구, 대구 북구, 경기 의정부시 등 5개 지자체이며, 각 조례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과 동일한 소외계층 대상의 지역신문 구독료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 추진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사업 현황]

지자체	구분	관련 조례명	조례 내용
부산시	광역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 사업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지역신문을 통한 시민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제공 확대 및 구독지원

4)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
상·재정상·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	구분	관련 조례명	조례 내용
경상남도	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제4조(지원범위와 절차)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4. 신문을 통한 지역민들의 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확대
서울 동작구	기초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제3조의2(보조사업의 범위)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 3. 사회적배려대상자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구독지원 사업
대구 북구	기초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제4조(지원대상 사업 등)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지역신문의 소외계층 구독, 읽기문화 교육 및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
경기 의정부시	기초	의정부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제13조(지원대상 사업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신문을 통한 시민교육과 사회적약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구독지원사업

자료: 지역신문발전기금 자료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실제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 중 부산광역시, 서울 동작구청 및 대구 북구청에서는 지자체 예산을 집행하여 구독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자체 추진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사업 현황(예시)]

지자체	지자체 사업명	수혜 대상	예산(2017년 기준)
부산시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경로당 등 정보 소외계층	5억원 (신문사 자부담 40% 이상 포함)
서울 동작구	소외계층 구독지원	경로당 136개소, 장애인가정 110개	361만원(신문사 자부담 5% 내외 포함)
대구 북구	정보소외계층 지역 신문 지원사업	고령자	1,116만원 (보조금 985만원, 자부담 131만원)

자료: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설명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하여 재단은 개별 지자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 실적, 수혜자 중복 여부를 집계하지 않으며, 조례에 근거 없이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거나 부산·경남에 속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세부적인 추진 여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지자체가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금액에 대한 충분한 협의 없이 개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지원 범위, 대상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거나 중복 수혜의 가능성이 높다. 해당 사업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적 성격이 높은 만큼 수혜 기준과 범위에 있어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 차이를 가급적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재단은 소외계층 구독료 사업에 대한 각 지자체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지자체 및 신문사 자부담 등 재원분담의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는 등 효과적인 사업 주체간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언론진흥기금 기금관리비¹⁾ 사업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²⁾ 제36조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기금을 관리·운용하는데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 제반 경비이다. 재단은 2017년도 계획 현액 3억 3,300만원 중 2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0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다.

[2017회계연도 기금관리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기금관리비	333	333	0	0	333	223	0	11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편, 재단은 2017년 12월 26일에 해당 사업 일반수용비(210-01) 비목에서 관서 운영경비로서 1,942만원을 정부구매키타를 이용하여 지출하였는데, 이 중 1,500만원을 2018년 1월 초 예정된 사업설명회 참가고객에게 제공할 기념품 구매에 사용하였다.

[관서운영경비 중 기념품 집행 내역]

(단위: 천원)

구매상품	배포대상	예산(단가 및 수량)
대회록 담요	언론진흥기금 사업설명회 참가 고객(300명), 보조사업 설명회 참가 고객(200명)	9,500(19,000원×500개)
손톱깎이 세트	유관기관 업무 협력 등	5,000(25,000원×200개)
자개흑목 연필	자유학기제 관련 재단 방문 학생	500(10,000원×50개)
총계		15,000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윤희호 예산분석관(yoonhh@assembly.go.kr, 788-4683)

1) 코드명: 언론진흥기금 7279-200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언론진흥기금의 관리·운용) ① 언론진흥기금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관리·운용한다.

나. 분석의견

언론진흥재단이 연말에 구매한 기념품 집행 내역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2018년 행사 또는 업무를 예정하여 2017년 연말 예산을 집행한 것이 불요불급한 사정인지, 아니면 불용을 회피할 목적의 집행이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2018년 행사 및 업무를 위한 비용은 2018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보다 부합하며, 2017년 연말에 기념품을 구매하는 것이 예산 집행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해당 사업 기금관리비는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에서 연례적인 불용 문제가 있었으므로,³⁾ 집행을 추이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언론진흥기금 기금관리비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계획	집행	불용	계획	집행	불용	계획	집행	불용	계획	집행	불용
일반수용비	403	231	172	376	241	135	320	195	125	295	202	93
국내여비	19	3	16	19	4	15	14	9	5	14	4	10
관서업무비	26	24	2	26	24	2	26	21	5	24	17	7
합계	448	258	190	421	269	152	360	225	135	333	223	11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재단이 관서운영경비로 건당 500만원 이상인 담요와 손톱깎기 세트 기념품을 지출한 것은 「국고금 관리법」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지양할 필요가 있다.

관서운영경비는 사업추진의 신속성과 관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반적인 지출행위⁴⁾에 대한 예외적 집행으로서 「국고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그 범위

3) 최근 4년간 기금관리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 1억 3,500만원, 2014년 1억 9,000만원, 2015년 1억 5,200만원, 2016년 1억 3,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수용비는 2015년의 경우 계획액 3억 7,600만원 중 2억 4,100만원(64.1%)이 집행되었고, 2016년의 경우 계획액 3억 2,000만원 중 1억 9,500만원(60.9%)이 집행되었다. 국내여비는 2015년의 경우 계획액 1,900만원 중 400만원(21.1%)이 집행되었고, 2016년의 경우 계획액 1,400만원 중 900만원(64.3%)이 집행되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18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 p. 415~418).

4) · 일반지출 절차 : 지출요청(부서장) → 지출원인행위(재무관) → 지출처리(지출관)

를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관서운영경비 집행에 대하여 「국고금 관리법」 제24조⁵⁾,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52조⁶⁾에서 운영비(210목)는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에 대하여 관서운영경비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에 설치한 언론진흥기금의 경우⁷⁾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기금이 아니므로 「국고금 관리법」의 적용 대상⁸⁾에 제외된다고 볼 수 있으나, 해당 기금은 「국가재정법」 별표에 따라 관리되는 기금이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기금지출의 기본원칙으로서 「국가재정

· 관서운영경비 지급절차 : 지출관이 매월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에게 관서운영경비 교부 → 출납공무원이 교부된 자금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하여 관서운영경비 지급

5) 「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6)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복리후생비·학교운영비·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특수활동비·안보비 및 업무추진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특별회계상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2. 운영비 중 공과금 및 위원회참석비
3. 특수활동비중 수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4. 안보비 중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이하 “잡지”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8) 「국고금 관리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또는 기금에 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금. 다만, 기금의 공공성, 설치 목적 및 재원조달 방법 등에 비추어 국고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법」,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재단 「회계규정」에서 해당 지침을 따르도록 규정된 점⁹⁾에 비추어 볼 때, 「국고금 관리법」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회계 처리함이 보다 바람직하다.

재단이 건당 500만원 이상의 기념품을 관서운영경비로 처리한 것은 그 허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관서운영경비의 지출 범위를 벗어나고 있으므로, 「국고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제한 범위를 벗어나는 지출행위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9) 「회계규정」

제85조(준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국가재정법 제44조, 제80조에 근거한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집행지침에 따른다.

가. 현 황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와 관련한 예방 및 치유·재활 사업 수행을 통해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¹⁾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기타공공기관이다.

센터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재원으로 도박문제 예방홍보 및 도박중독 치유·재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²⁾으로서 연간 순매출액의 0.35% 수준으로 금액이 책정된다.³⁾ 부담금

윤희호 예산분석관(yoonhh@assembly.go.kr, 788-4683)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①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1. 예방·치유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
3. 예방·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전문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협력
5. 예방사업 및 중독자 치유·재활 사업 지원
6. 예방·치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7. 정부 또는 위원회가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는 활동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위원회는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환급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사행산업사업자의 수익성,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전화 평가 및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총량 준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행산업사업자별로 부담금의 부과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를 제외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부담금의 부과금액을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통지(전자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은 사감위법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관리 주체가 되나, 같은 법 제14조의24)에 따라 센터가 위탁 관리하고 있다.

센터는 부담금을 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면서 2017년 결산 기준으로 예산현액 175억 5,200만원 중 167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8,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억 8,6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다. 이월은 연구용역 무응찰 및 하반기 발주로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주로 직원 육아휴직 및 결원 등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분이다.

[2017회계연도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운용(지출부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도박문제관리센터사업	17,522	17,522	30	0	17,552	16,779	87	686
도박문제 예방·홍보	3,316	3,316	30	△105	3,241	3,220	0	21
도박중독 치유·재활	7,731	7,731	0	105	7,836	7,801	0	35
한국도박 문제관리센터 운영	6,475	6,475	0	0	6,475	5,758	87	630

자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⑦ 위원회는 부담금 및 가산금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책정 기준]

○ 부과대상: 사행산업사업자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주사업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사업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시행자와 수탁사업자
○ 기본부담비율: 연간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환급금 등을 공제한 금액) × 3.5/1000
○ 부과비율 감면상한: 기본 부담 비율의 100분의 40 이하
- 건전화 평가 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40% 이내감경가능
· 사업자의 수익성이 없는 경우: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10 이하
· 건전화 평가 결과: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20 이하
· 매출 총량 준수 결과: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10 이하
· 「지방세법」의 레저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⑥ 위원회는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부담금의 수입 현황까지 포함하여 보면, 사행산업사업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208억 2,200만원)과 기타수입(금융기관 이자 등 6억 7,800만원)에 전년도 이월금(260억 9,600만원)을 포함한 수입 총액 475억 9,600만원 중 사업비와 경상비 등으로 집행한 지출 총액 167억 7,900만원을 제외한 잔액은 308억 1,700만원이다. 해당 잔액은 결산상 잉여금으로서 차기연도에 이월 처리되었는데 2017년 지출 규모의 1.8배 수준이다.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운용(수입·지출부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결산
수입	중독예방치유부담금	18,915	20,822
	기타수입	514	644
	전년도 이월금	26,719	26,130
	수입계(A)	46,148	47,596
지출	사업비	11,047	11,021
	경상비	6,475	5,758
	지출계(B)	17,522	16,779
결산잉여금(익년도 이월금)(A-B)		28,626	30,817

주: 사업비는 도박문제 예방·홍보(2016년도 사고이월금 포함), 도박중독 치유·재활 사업의 합이고, 경상비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운영 사업(인건비+기관운영비)이며, 결산잉여금 308억 1,700만원은 2017년도 사고이월금 8,700만원, 센터 기본재산 100만원, 기금 이월금 307억 2,900만원으로 구성됨

자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편, 센터의 부담금 운용은 2017년까지는 일반회계 또는 기금의 세입·세출 외로 운영되었으나, 「국민체육진흥법」 및 사감위법의 개정(2017. 12. 19)⁵⁾에 따라 2018년 예산부터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운용 중이다.⁶⁾

5)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②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 및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7.12.19.>

③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각각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용한다.

6) 2018년 예산 기준으로 도박문제관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 예산은 국민체육진흥기금 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원(5165-300)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174억 3,200만원).

나. 분석의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출예산 규모가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수입 규모에 미치지 못하여 결산잉여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도박 중독 실태를 고려하여 적극적·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사감위법의 개정(2012. 5. 23. 개정, 11.24. 시행)으로 부담금 징수 근거와 함께 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센터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개원, 지역센터 설치·운영, 헬프라인(24시간 전화상담) 구축, 예방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센터의 사업비 지출이 매해 징수되는 부담금 수입에 미치지 못하여 잔액으로서 이월 처리되는 결산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담금 징수가 시작된 2013년⁷⁾에 발생한 결산잉여금은 114억 9,300만원이었고, 2017년에는 308억 1,700만원으로 약 2.7배가 증가하였고, 2018년 예산 기준 예상되는 결산잉여금은 351억 3,000만원으로 센터 운영예산의 2배 수준이며 전년 대비 43억원(14.0%) 증가한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수입·지출 및 결산잉여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안)
수입	중독예방치유부담금	17,555	17,967	18,680	18,915	20,822	21,221
	기타수입	168	1,145	671	441	644	524
	전년도 이월금	-	11,493	18,942	22,510	26,130	30,817
	수입계(A)	17,723	30,605	38,293	41,866	47,596	51,658
지출	사업비	2,097	8,202	12,305	10,124	11,021	10,845
	경상비	4,133	3,461	3,478	5,612	5,758	6,587
	지출계(B)	6,230	11,663	15,783	15,736	16,779	17,432
결산잉여금 (익년도 이월금)(A-B)		11,493	18,942	22,510	26,130	30,817	35,130

주: 2018년도 예산에는 전년도 이월금이 299억 1,300만원(코드명: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85-852), 결산잉여금은 342억 2,600만원(코드명: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 통화금융기관예치(9706-974))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2017년 결산 기준으로 확정된 결산잉여금(308억원)을 2018년 전년도이월금에 반영하여 수정하였음
자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7)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2013년 8월 개원

현재 우리나라 도박중독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법 도박시장 규모 증가, 암호화폐 등 신종 도박성 유인의 등장으로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가 중요한 상황⁸⁾임에도 중독예방치유를 위한 센터의 서비스망 구축이 미흡하여 헬프라인(1336) 등 중독예방치유 실적이 미진하고, 해외보다 낮은 효율⁹⁾로 책정된 부담금 수입을 충분히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8) [도박 문제 실태]

- (도박중독 유병률) 2016년 실태조사 결과 5.1%(만20세 이상 성인 인구 기준 197만명)
※ 2018년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 진행 중
- (불법도박 규모) 2015년 83.7조로 2012년에 비해 11.5%, 약 8.6조 증가
- 특히 사설 스포츠도박의 규모가 21.8조원으로 급증. 2012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 전체 불법 도박 규모의 56% 차지함
- (사이버 도박 범죄) 사이버경찰청의 불법콘텐츠 범죄 중 사이버도박은 2016년 9,538건(전년 대비 184.5% 증가)하였고, 검거 또한 9,394건(전년대비 179.2%) 증가하였음
- (청소년 도박문제)
- 2015년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재학중 청소년의 도박문제 수준은 1.1%가 문제군, 위험군은 4.0%로 나타남. 이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은 9.2%가 문제군, 10.8%가 위험군으로 나타남
※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발주 중
- 불법도박으로 형사 입건된 청소년 피의자수: 2016년 347명으로 전년대비 2.6배 증가(*15년 133명)
- 도박문제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문상담 이용한 청소년은 2017년 450명으로 전년대비 1.5배 증가(*16년 302명)
- 암호화폐, 소셜그래프, 외환거래실전체험장 등 신종 도박게임의 성행
- 암호화폐를 이용한 신종 도박장 및 변칙 뱅킹 거래 등장
- 5~10초 단위로 진행되는 온라인 신종 불법도박 ‘소셜그래프’ 등장
- 보드게임 카페나 카지노 카페 등 게임을 사칭한 오프라인 불법도박장 성행
- 외환거래, 바이너리옵션을 활용 불법도박과 동일한 구조로 운영되는 외환거래실전체험장 확산

자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9) [부담금 효율 비교]

- 미국 - (네바다) : 슬롯머신 라이선싱 요금(기계당 2달러)
- 캐나다 - (온타리오) : 게임운영업체 순매출의 1.72%,
(노바스코샤) : 게임운영업체 순매출의 2.24%
- 호주 - (뉴사우스 웨일즈) : 카지노 순매출액의 2%,
(빅토리아) : 호텔 도박게임 순이익의 8.33%

자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박문제 예방치유 서비스망 구축 현황]

○ 지역센터 운영현황

- 2018년 14개소 (직영2(서울), 위탁12)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4	2	1	1	1	1	1	-	2	1	1	-	1	-	-	1	1

* 미설치 시도(세종 제외) : 울산, 충남, 전남, 경북

○ 치유서비스 이용률 현황

- 문제성 도박중독 인구(49만명) 중 2015년도 4,470명(0.90%), 2016년도 5,416명(1.09%)이 치유서비스를 이용

○ 지역센터 미설치 지역 도박문제 예방치유 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 도박문제 예방교육 및 도박중독 상담·치유서비스 수요는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센터 미설치 지역의 예방교육 실적이 상대적으로 미흡(17년 설치지역 예방교육: 110~750회/ 미설치지역 예방교육: 14~74회)
- 상담수요 추정의 객관적 근거요소인 헬프라인 접수인원 분석결과, 지역센터로의 상담연계 비율이 지역센터 설치 시도(9개)는 평균 42% 이지만, 미설치 시도(7개)는 평균 17%에 그쳐 미설치 지역의 경우 상담수요는 있지만 접근성 문제로 치유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 못함

○ 유관기관 대비 지역센터 설치 개수

구분	광역 정신건강 증진센터	기초 정신건강 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개소	15	212	20
설치기준	시도별 1개소	인구 20만 미만 시군구 1개소, 인구 20만 이상 시군구 2개소	인구 20만 이상 시군구

주: 2017년 말 기준

자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특히, 부담금 수입 규모에 비해 전국 도박문제 안전망 구축 등이 미흡한 상황에서 별다른 자금운용계획도 없는 결산잉여금이 매년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도박폐해 최소화 및 예산 운용의 효과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부담금을 관리하는 센터와 관리운용의 주체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사업을 확대하고 성과를 제고하거나 효율적인 여유자금 운용방안을 수립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외래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획득 증대, 이익금의 관광인프라 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2005년 9월 6일)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공기업¹⁾인 그랜드코리아레저(Grand Korea Leisure Co.,Ltd., 이하 “GKL”이라 한다)는 2017년에 카지노사업장을 방문하는 VIP 고객에게 제공할 목적의 담배를 구매하였는데, 구체적으로 A업체를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 총 50건에 걸쳐 7억 8,411만원을 수의계약 절차를 통해 집행하였다.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수의계약 집행 현황(일부)]

품목	기간	건수	계약금액 (집행액)	계약 상대방
담배 구매	2017. 1. ~ 2017. 12.	50건	7억 8,411만원	A업체

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수의계약대상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GKL은 계약처리에 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규칙”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규칙 제6조에는 수의계약을 예외적인 경우로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²⁾

이에 GKL은 계약규칙 제8조제1항제7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5천만원 이하)” 계약³⁾에 해당하고, 담배의 경우는 판매 가격이 동일하여 경쟁입찰이 성

윤희호 예산분석관(yoonhh@assembly.go.kr, 788-4683)

1)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2017년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준시장형)으로 변경지정 되었다.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계약의 방법)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이하생략)

립될 수 없으며⁴⁾ 그 밖에 구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카지노 사업장 건물에 소재한 담배소매인 A업체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담배를 구매하였다는 설명이다.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수의계약 집행 관련 규정]

규정	규정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7호	제8조(수의계약) ①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3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의 고시 금액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가목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자료: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을 바탕으로 재작성

3) A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소기업으로 건당 소액(5천만원 이하)의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4) 「담배사업법」 제18조(담배의 판매가격) ⑤ 소매인은 제4항에 따라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여야 한다.

나. 분석의견

GKL이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과다 체결한 것은 수의계약에 대하여 계약법령에서 정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

GKL이 A업체만을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 2017년 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54일 동안 총 5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를 환산하면 평균 약 7일마다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계약기간이 7일 수준임을 의미한다. 건당 계약금액은 최저 570만원부터 최고 3,000만원까지 다양하며 평균 1,568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GKL의 수의계약 체결 행태를 개별 건당 계약규모로 본다면,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계약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랜드코리아레저(주)의 수의계약 집행 세부내역]

기간일수 (일, A)	총 계약건수 (건, B)	건당 계약일수 (일, C=A/B)	총 계약금액 (천원, D)	건당 계약금액 (천원/건, E=D/B)
354 (17.1.11 ~ 12.31)	50	7.08	784,113	15,682

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수의계약대장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GKL이 A업체와 계약 체결시마다 제공받을 담배 재화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납품 장소⁵⁾와 구성품의 종류 차이에 불과하므로 50건의 계약이 서로 이질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GKL은 사실상 A업체를 대상으로 1년에 7억 8,411만원 규모의 계약을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회계 처리한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계약법령에서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은 경쟁을 통해 양질의 물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수의계약에서 문제될 수 있는 계약 상대방에 대한 특혜나 담합·비리 발생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담배 재화의 경우 단일가격으로서 일반경쟁이 성립될 수 없다 하더라도, GKL이 담배를 구매할 소매인을 임의로 선정할 수 있으며 소액 물품 및 단일가격을 이유로 특정 업체의 매출액을 과다하게 신장시키는 것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5) 영업장에 위치한 강남 코엑스점, 강북 힐튼점, 부산 롯데점 3곳이 있다.

따라서, GKL은 계약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여 특정 업체에게 과도하게 계약의 이익에 제공되지 않도록 수의계약 체결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그랜드코리아레저(주)(Grand Korea Leisure Co.,Ltd., 이하 “GKL”이라 한다)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외래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획득 증대, 이익금의 관광인프라 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2005년 9월 6일)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준시장형 공기업¹⁾이다.

GKL은 정부지원 예산(보조·출연·출자 등) 없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카지노업(단일사업)²⁾ 수입(카지노매출액)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7년도 결산 기준으로 매출액은 5,013억원으로 전년 대비 469억원(△8.6%)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른 당기순이익도 805억원으로 전년 대비 338억원(△29.6%) 줄어들었다.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감소 원인으로 GKL은 THAAD 배치로 인한 국외관광객 감소³⁾를 이유로 들고 있다.

윤희호 예산분석관(yoonhh@assembly.go.kr, 788-4683)

1)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2017년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준시장형)으로 변경지정 되었다.

2)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워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제5조(허가와 신고) ①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카지노 입장객 수가 120만명으로 전년 대비 32만명(△21.1%) 감소하였다.

[연도별 입장객 현황(2013~2017)]

(단위: 만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A)	2017년(B)	(B-A)	(B-A)/A
입장객	162	157	160	152	120	△32	△21.1

자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7회계연도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수입과 지출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6년 (A)	2017년 (B)	증감	
			(B-A)	(B-A)/A
○ 매출액	5,482	5,013	△469	△8.6
- 카지노매출액	5,395	4,941	△454	△8.4
- 환전수입	87	72	△15	△17.2
○ 영업비용	3,970	3,931	△39	△1.0
- 매출원가	3,649	3,549	△100	△2.7
- 판매및일반관리비	321	382	61	19.0
○ 영업이익	1,512	1,082	△430	△28.4
○ 기타손익	△15	10	25	△166.7
○ 영업외손익	4	△19	△23	△575.0
○ 법인세	358	268	△90	△25.1
○ 당기순이익	1,143	805	△338	△29.6

자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연례적으로 발생한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GKL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정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공익목적사업적립금 및 사업확장 등 유보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2017년은 당기순이익 805억원 중 451억원을 배당으로 지급하고 남은 자금 중 40억원은 공익목적사업적립금⁴⁾, 314억원은 사업확장 유보금으로 적립하였다. GKL은 매년 40~50억원을 공익목적사업적립금으로, 300~600억원을 사업확장 유보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당기순이익 처리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당기순이익(A)		1,376	1,165	917	1,143	805
배 당 금	한국관광공사	371	316	262	315	230
	일반주주	358	304	252	303	221
	소계(B)	729	620	514	618	451
	배당성향(B÷A)	53.0	53.2	56.1	54.1	56.0
공익목적사업적립금		50	50	50	50	40
사업확장 등 유보금		597	495	353	475	314

자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공익목적사업 적립금은 공익법인인 GKL사회공헌재단에 기부금으로 출연하였다.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정관 - 당기순이익(이익금) 처리 규정]

제41조 (지원사업) 본 회사는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목적 사업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이익금 중 일부를 다음 각호에 정한 공익목적의 관광진흥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관광인프라 구축사업
2. 지역사회의 문화관광에 관한 균형발전사업
3.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관광복지사업
4. 남북간 문화관광에 관한 교류사업
5. 기타 한국관광공사법 제12조(사업)에 의한 사업

제44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말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제41조에 의한 공익목적사업 지원
5. 기타임의적립금
6.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이에 따라 2017년말 GKL이 매년 사업확장 등 유보금으로 적립한 누계액은 4,247억원에 달하며, 별도로 사업확장 등에 사용한 내역은 없다.

[그랜드코리아레저(주)의 적립금 누계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사업확장 등 유보금	157	242	428	282	266	638	597	495	353	475	314	4,247

자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사업확장 등 유보금으로 누적된 여유자금이 정기예금 위주의 단기자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적극 운용하거나 공

공관광인프라 구축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다각적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GKL 제출 자료에 따르면, 사업확장 등 유보금으로 구성된 여유자금 4,247억원에 대한 운용 실적을 보면, 2017년 기말 적립 잔액을 기준으로 4,396억원으로 이중 73%인 3,200억원이 단기자금 중 정기에금에 예치되어 있으며 여유자금의 2017년 운용 수익률은 1.70%이다.

[그랜드코리아레저(주)의 여유자금 운용 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목표기준	'17년 실적			
		연말잔액	월평균	수익	수익률
수시자금	기준금리	48,779	64,123	1,017	1.59
단기자금 (정기에금)	CD91 일물	320,000	206,667	3,449	1.67
장기자금 (파생상품(채권))	국공채 3년	70,807	177,397	3,168	1.79
합 계		439,586	448,187	4,466	1.70

자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GKL은 내부 자산운용규정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하였으며, 경쟁사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건설 등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신성장 사업발굴을 위해 MICE 산업 진출 및 특급호텔 인수 참여 검토 등 최근 일련의 신사업 진출에 대비 대규모 자금조달을 위하여 여유자금을 단기자금 위주로 운용하였다는 설명이다.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자산운용규정(일부)]

「자산운용규정」 제5조 자산운용의 체계 ② 자산운용 절차는 "별표 2"에 의한다. 「자산운용시행세칙」 제3조 자금의 분류 및 운용 절차 ① 규정 제6조의 단기자금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 1. 자금조달 및 지출 중 예측가능부분의 추정 및 규칙적 자금유출입 분석 2. 예측불가능항목은 과거의 순지출 누계를 반영하여 단기자금의 Target Level 설정
--

3. 전호에 의해 산정된 단기자금의 Target Level에 예측 가능한 자금조달 추정액을 추가하여 자금수지 추정액을 산정
4. 자금유출입을 고려하여 자금수지계획 작성
- ② 자금의 분류 및 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시자금 : 자금운용을 위하여 수시입출금 또는 1개월(31일) 이하의 금융상품에 예치
 - 가. 삭제<2012.08.27.>
 - 나. 삭제<2012.08.27.>
 - 다. 재무관리실장 위임전결<신설 2017.08.23.>
 - 라. 최소 2곳 이상의 금융회사에 제안 요청 후 금리, 예치가능 금액 등을 고려하여 예치한다.<신설 2017.08.23.>
 2. 단기자금 : 자금운용을 위하여 1개월(31일) 초과 및 1년 미만의 자금을 금융상품에 예치<신설 2012.08.27.><개정 2017.08.23.>
 - 가. 경영본부장 위임전결<신설 2017.08.23.>
 - 나. 최소 2곳 이상 제안요청서 접수 후 고금리제시기관 예치<신설 2017.08.23.>
 - 다. 기관별 운용규모는 신용등급, BIS, ROA, NCR 등에 따른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전략적으로 분산투자한다.<신설 2017.08.23.>
 3. 장기자금
 - 가. 총 여유자금에서 단기자금을 제외한 자금으로 산출
 - 나. 자산배분안에 따른 자산운용
 - 다. 전문성을 위해 외부위탁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일임운용 또는 신탁의 방법으로 운용

또한, GKL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5)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액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도마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며, 신사업 추진 등 사업확장 계획이 마련되면 자금 집행이 필요하게 되므로 단기자금 위주로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5) 「관광진흥법 시행령」

- 제30조(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금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②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이하 "납부금"이라 한다)의 징수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3.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4억6천만원+총매출액 중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그랜드코리아레저(주)의 사업실적 및 기금납부 실적(2013~2017)]

(단위: 억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카지노매출액	5,538	5,329	4,984	5,395	4,941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531	518	480	525	475
당기순이익	1,376	1,165	917	1,143	805

자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다만, 현재까지 GKL이 보유한 여유자금의 고유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인출되었거나 그 밖의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해 사용된 실적은 없는 상황이다. GKL은 2015년 영종도 대형복합리조트 사업계획을 철회한 이후로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구체화된 사업 확장 계획이 없으며,⁶⁾ 사업 계획이 확정되더라도 카지노사업의 특성상 부지매입 및 착공 등 자금집행이 실현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은 손익계산에서 영업비용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매년도 당기순이익으로부터 조성되는 여유자금 재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납부 규모도 400~500억 수준으로 GKL이 보유한 단기자금(3,200억원)의 15%에 불과하다.

단기자금 위주의 여유자금 운용으로 인해 2017년 수익률 실적(1.7%)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공공기관의 수익률 실적 대비 낮은 수준에 속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은 매년도 사업 추진 및 기금전입금 등으로 인출이 발생하므로 수익률 제고를 위한 장기자금 투자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GKL이 단기자금 위주의 보수적인 자금운용에 따른 누적 여유자금 수익률을 계산하여도 0.9%로 정도로 저조한 실정이다.⁷⁾

6) GKL에 따르면, 2013년도에는 스마트 마이스 산업 육성과 맞물려 제주도 복합리조트(IR)형 카지노를 검토하였고 2014년에는 파르나스호텔 인수를 위해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2015년에는 한화 1조 원 이상, 미화 5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가 포함되어야 하는 조건의 영종도 복합리조트와 대형 크루즈 선상 카지노 진출을 검토하였으나 당시 시장 및 경영상황을 감안하여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설명이다.

7) 매년도 사업확장 등 유보금을 중도 인출하지 않고 은행에 적립하여 은행이자를 수취한 경우를 가정하였으며, 복리 방식에 금융소득 원천징수 15.4%를 고려하여 산출하였다.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운용 현황 비교]

(단위: 백만원, %)

기금명	운용주체	여유자금 평잔(A)	운용규모 (B)	(B/A)	수익률
문화예술진흥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9,779	302,631	5.06	11.88
영화발전기금	영화진흥위원회	221,747	221,691	1.00	2.39
지역신문발전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언론진흥재단 위탁)	5,264	1,311	0.25	1.36
언론진흥기금	언론진흥재단	7,652	4,285	0.56	1.36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129,608	402,982	3.11	1.24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공단	570,936	585,260	1.03	2.5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결산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GKL의 여유자금은 「관광진흥법」의 외국인전용카지노업 사업이익의 일부이다. 해당 사업이익은 정부가 부여한 독점적 사업권에 따라 발생한 것이며, 공기업인 GKL에 대하여 여유자금 운용을 포함한 경영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되⁸⁾ 이에 대한 사업 감독과 경영실적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GKL은 카지노업으로 발생한 여유자금 활용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금운용을 통한 수익률 제고, 공공관광인프라 구축 재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의 적정성과 그 실적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을 제외한다)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이하생략)

제51조(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한다.(이하생략)

③ 주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감독한다.

1. 법령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2. 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가. 현 황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¹⁾에 따라 설립(2012년 7월 27일)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이다.

진흥원이 수행하는 인문독서예술캠프 사업²⁾은 책을 매개로 한 참여형 문화예술캠프를 운영하여 생활 속 인문정신문화와 지역독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사업 예산 10억원을 진흥원에 민간경상보조금(320-01)으로 교부하였으며, 진흥원은 이 중 9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다.

[2017회계연도 인문독서예술캠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37,599	37,599	0	△20	37,579	35,852	1,441	286
인문독서예술캠프	1,000	1,000	0	0	1,000	1,000 (997)	0	0 (3)

주: 괄호 안은 실집행액, 실제 불용액을 의미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진흥원은 인문독서예술캠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국을 5대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으로 나누고 사업시행자를 2곳(총 10곳)씩 선발하여 권역별로 4회씩 총 24회(가족 대상 4, 청소년 대상 9, 청년 대상 11)의 독서캠프를 실

윤희호 예산분석관(yoonhh@assembly.go.kr, 788-4683)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①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2) 코드명: 일반회계 2134-300의 내역사업

시하였다. 가족, 청소년, 청년 등 캠프 참가인원은 사업시행자별로 200명씩 계획되었는데, 전체 참가(수료)인원은 2,055명으로 집계되어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인문독서예술캠프 추진실적]

(단위: 명)

캠프명	개최횟수	개최기간	시행 사업자	권역	유형	수료
“누구나 책, 읽고 하고 쓰고 퍼내고” 등 10개	24회 (캠프별 2~5회)	8월~11월 (2박 3일)	10개 업체	5권역	가족, 청소년, 청년 등 3유형	2,055명 (업체당 206명)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현재 진흥원 외에도 지방교육청, 학교기관, 도서관 등 공공·민간기관에서도 독서캠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과 차별화된 독서캠프 사업 추진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진흥원은 2017년에 독서캠프(가족·소통, 청년·인생설계, 청소년·진로탐색)를 추진하면서, 가족·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양질의 독서 및 문화예술을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인문정신의 가치와 창의성 고취 및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설명이다. 또한, 인문독서·문화예술을 융합한 통섭형 인문프로그램 모델을 수립하여 5개 권역에서 목표치를 웃도는 캠프 수료자(2,055명)를 달성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서캠프와 별개로 지방교육청, 학교기관, 도서관 등 학술교육과 관련된 공공·민간기관에서도 독서캠프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예를 들면, 교육부의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³⁾에 따라 예산을

3) 사회·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미래 유망분야로 정원을 조정하고, 교육과정 개선 등 대학 교육의 질적 개선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부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사업(R&D)(일반회계, 2238-300)의 내역사업이다. 2017년 결산 기준으로 예산현액 1,743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산출근거: 대형 9개교 × 평균 134억원, 소형 12개교 × 평균 44억원, 사업관리비 12억원).

지원받은 일부 대학이 사업 일환으로 독서캠프를 추진 중인데, 진흥원이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독서캠프 사업과 유사성이 높다. 그 밖에 2018년 5월에 공공·민간부문에서 개최하는 독서캠프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독서캠프 개최 현황 예시(2018년 5월)]

주최	구분	캠프명	기간	대상
독서포럼나비	민간	단무지 독서캠프	5.5~7	전체
충무교육원	공공	37.5°의 감성과 361°의 이노베이션을 꿈꾸며'	5.23~25	고등학생
동의대 중앙도서관	공공	인문학진흥사업(PRIME사업)	5.11~12	대학생
인제대	공공	책과 함께 떠나는 야간 여행(PRIME사업)	5.11~12	대학생
새마을문고 김제시지부	민간	제8회 Y-SMU와 함께하는 일일야외 독서캠프	5.12	장애인 가족 등

자료: 각 사업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하여 진흥원은 해당 독서캠프가 강연과 독서 중심으로 진행되는 타 캠프와 달리 권역별 시행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청년 중심의 지역 네트워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타 독서캠프와 차이가 있으며 향후 독서캠프의 차별화 및 브랜드화를 위해 사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독서캠프 사업의 프로그램 등이 민간 영역에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면 공공기관인 진흥원에서 별도로 독

[2017회계연도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사업(R&D)	276,374	276,374	0	0	276,374	276,374	0	0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174,300	174,300	0	0	174,300	174,300	0	0

자료: 교육부

서캠프를 추진할 실익이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독서캠프를 통한 지역네트워크 형성, 책 읽어주기 문화봉사단 등 진흥원 자체사업과의 연계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추진 등 민간 영역과 구별되는 독서캠프 사업 영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진흥원이 추진하는 독서캠프는 모집 요강에서 우선모집대상자⁴⁾를 우선 선정하도록 되어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실제 사업 추진과정에서 대부분 선착순 위주로 선정이 진행되어 소외계층 모집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2017년도 전체 수료인원 2,055명 대비 우선모집대상자는 111명(5.4%)으로 강원권 46명(2.2%), 경상권 47명(2.3%), 전라권 18명(0.9%) 등 대부분의 캠프에서 우선모집대상자의 비율이 낮았다.

[2017년도 인문독서예술캠프 모집현황]

(단위: 명)

연번	권역	유형	단체명	수료인원	우선모집 대상자	일반인 (선착순)
1	수도권	청년	아시아문화네트워크	202	0	202
2		청소년	동네형들	204	0	204
3	강원권	청년	강릉문화재단	200	6	194
4		청소년	(주)상상놀이터	204	40	164
5	충청권	청년	(주)아르케	213	0	213
6		청소년	세종시문화재단	203	0	203
7	전라권	청년	우깨	228	4	224
8		청소년	꽃피는 영농조합법인	200	14	186
9	경상권	청년	상상편집소피플	200	47	153
10		청소년	청춘연구소컬처플러스	201	0	201
합계				2,055 (100%)	111 (5.4%)	1,944 (94.6%)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향후 진흥원은 소외계층 우선 모집 등 민간 영역에서 진행하기 곤란한 독서캠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법정차상위), 소년·소녀 가장 등

프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독서캠프 사업의 효과성과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⁵⁾

5) 이에 대하여 진흥원은 2017년도에는 사업 일정 지연으로 선착순 모집을 했지만, 2018년도에는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 시기를 약 3개월 앞당겼으며, 우선모집대상자 참가 비율을 50% 이상 확보하여 2019년도에는 그 비율을 80%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2017년 대비 2018년도 사업 주요 개선 내역]

개선사항	17년도	18년도	개선 필요 이유
캠프 명칭 변경	인문독서 예술캠프	독서문화캠프	인문·독서·예술 등 다양한 개념이 혼재되어 캠프의 정체성 모호, 독서와 지역 문화의 결합을 강조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변경
시행사업자 확대	5개 권역 10개	5개 권역 20개	보다 다양하고 많은 지역 단체를 선정해 지역 문화 활성화 도모
캠프 참가 인원 축소	회차별 100명 (2회 기준)	회차별 50명 (2회 기준)	비슷하게 진행되는 대형 독서캠프의 틀을 벗어나고, 참가자와 프로그램에 집중하기 위해 참가인원 축소
캠프 지원 대상 조정	청소년, 청년, 가족(3유형)	청소년, 청년 (2유형)	캠프 정체성 확립을 위해 미래의 성장 동력인 청소년·청년 유형에 집중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문화재청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7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총수입은 본예산 대비 39억 2,600만원(7.5%)이 감소한 481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46억 3400만원(7.4%)이 감소하였다.

[2017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결산(A)	2017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36,757	40,459	40,459	34,184	△6,275	△2,573
기금	16,010	11,600	11,600	13,949	2,349	△2,061
합계	52,767	52,059	52,059	48,133	△3,926	△4,634

자료: 문화재청

2017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총지출은 본예산 대비 195억 4,900만원(2.5%)이 감소한 7,695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464억 7,100만원(6.4%)이 증가하였다.

[2017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결산(A)	2017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619,010	666,937	666,937	647,097	△19,840	28,087
기금	104,104	122,197	122,197	122,488	291	18,384
합계	723,114	789,134	789,134	769,585	△19,549	46,471

자료: 문화재청

나. 세입세출 결산

2017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04억 5,900만원이며, 489억 1,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69.9%인 341억 8,400만원을 수납하고 147억 1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2,500백만원을 불납결손하였다.

[2017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40,459	40,459	40,459	47,845	33,952	13,868	25	71.0
지역발전특별회계	0	0	0	1,065	232	833	0	21.8
합계	40,459	40,459	40,459	48,910	34,184	14,701	25	69.9

자료: 문화재청

2017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6,704억 5,100만원이며, 이 중 96.5%인 6,470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104억 2,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9억 2,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7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644,776	644,776	646,665	623,311	10,428	12,926	96.4
지역발전특별회계	22,161	22,161	23,786	23,786	0	0	100
합계	666,937	666,937	670,451	647,097	10,428	12,926	96.5

자료: 문화재청

다. 기금 결산

2017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1,334억 6,300만원이며, 1,542억 6,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522억 5,800만원을 수납하고 20억 2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17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문화재보호기금	133,463	133,463	133,463	154,260	152,258	2,002	0	98.7

자료: 문화재청

2017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액은 1,334억 6,300만원이며 계획 현액은 1,387억 8,000만원이나, 1,522억 5,800만원을 지출하고 33억 8,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9억 4,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7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문화재보호기금	133,463	133,463	138,780	152,258	3,385	2,941	109.7

자료: 문화재청

라. 재무 결산

2017회계연도 말 현재 문화재청의 자산은 8,511억 6,700만원, 부채는 22억 3,700만원으로 순자산은 8,489억 3,0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610억 6,100만원, 일반유형자산 7,761억 9,700만원, 무형자산 121억 8,0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전기 대비 84억 8,800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유동자산 246억 700만원, 무형자산 13억 5,2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21억 6,200만원, 장기충당부채 7,500만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3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다. 이는 유동부채 6억 9,400만원 증가와 장기충당부채 3억 6,300만원 감소에서 기인한다.

[2017회계연도 문화재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851,167	859,655	△8,488	△1.0
Ⅰ. 유동자산	61,061	85,668	△24,607	△28.7
Ⅱ. 투자자산	127	127	-	-
Ⅲ. 일반유형자산	776,197	758,234	17,963	2.4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
Ⅴ. 무형자산	12,180	13,532	△1,352	△10.0
Ⅵ. 기타비유동자산	1,601	2,094	△493	△23.5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부 채	2,237	1,906	331	17.4
Ⅰ. 유동부채	2,162	1,468	694	47.3
Ⅱ. 장기차입부채	0	0	0	0
Ⅲ. 장기충당부채	75	438	△363	△82.9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
순 자 산	848,930	857,749	△8,819	△1.0
Ⅰ. 기본순자산	469,971	469,971	0	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159,903	166,491	△6,588	△4.0
Ⅲ. 순자산 조정	219,056	221,287	△2,231	△1.0

자료: 문화재청

문화재청은 2017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6,301억 5,3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6,601억 1,000만원, 관리운영비 911억 4,900만원, 비배분비용 66억 3,0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99억 3,100만원, 비배분수익 399억 1,800만원, 비교환수익 등 778억 8,8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330억 6,500만원(4.9%) 증가(감소)한 7,080억 4,100만원이며, 이는 프로그램 순원가가 전년도 대비 403억 1,7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8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문화재보존관리프로그램(3,232억 7,300만원)과 문화제국제교류프로그램(596억 5,5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646억 8,300만원과 경비 264억 6,6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대손상각비 11억 100만원과 기타비용 52억 4,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회계연도 문화재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650,179	609,863	40,317	6.6
가. 프로그램 총원가	660,110	624,647	35,463	5.7
나. 프로그램 수익	9,931	14,784	4,853	△32.8
II. 관리운영비	91,149	87,842	3,307	3.8
III. 비배분비용	6,630	28,581	△21,951	△76.8
IV. 비배분수익	39,918	51,310	△11,392	△22.2
V. 재정운영순원가(I+II+III-IV)	708,041	674,976	33,065	4.9
VI. 비교환수익 등	77,888	63,648	14,240	22.4
VII. 재정운영결과(V-VI)	630,153	611,328	18,825	3.1

자료: 문화재청

문화재청의 2017년도 기초순자산은 8,577억 4,9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8,489억 3,000만원으로 기초 대비 88억 1,900만원(1.0%) 감소하였는데, 이는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188억 2,500백만원 증가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793억 1,100만원 감소하였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도 78억 4,600백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7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6,580억 2,5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344억 6,0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22억 3,2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17회계연도 문화재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857,749	760,586	97,163	12.8
II. 재정운영결과	630,153	611,328	18,825	3.1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623,565	631,411	△7,846	△1.2
IV. 조정항목	△2,232	77,079	△79,311	△102.9
V. 기말순자산(I-II+III+IV)	848,930	857,749	△8,81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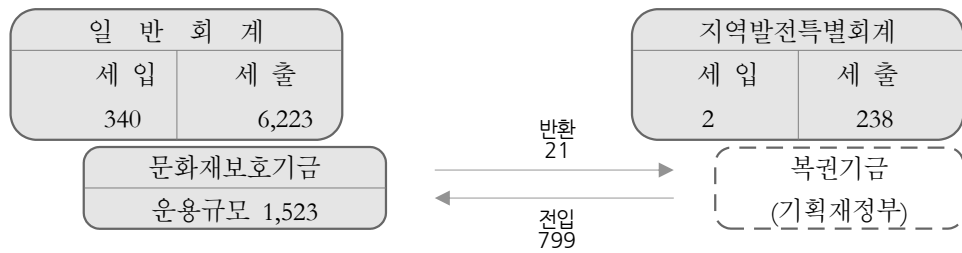
자료: 문화재청

마. 재정 구조

2017회계연도 문화재청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재보호기금이 복권기금으로부터 799억원을 전입받고 21억원을 반환하였다.

[2017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기준, 결산기준

자료: 문화재청

문화재청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유형문화재관리, ② 문화유산 활용진흥 등이 있다.

유형문화재관리사업에서 추진하는 K-Heritage Inn 구축사업의 문화재 훼손가능성을 고려하여 48억원이 감액(97억원→49억원)되었고, 문화유산활용진흥은 내역사업인 미디어파사드의 계획 미흡을 감안하여 13억원이 감액(274억원→261억원)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문화재보수정비사업, ② 백제 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③ 광주 남한산성박물관 건립 등이 있다.

문화재보수정비(총액, 보조)사업은 전국의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100억원이 증액(2,745억원→2,845억원)되었고,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정비 사업을 위하여 35억원이 증액(180억원→215억원)되었으며, 광주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사업은 토지 매입을 위하여 15억원이 증액(0억→15억원) 되었다.

문화재청은 ① 문화유산 보존·전승체계 확립, ② 문화유산·활용 경쟁력 제고, ③ 문화유산분야 국제위상 강화 및 국민참여 확대를 2017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7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총액계상사업인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있어 사업내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사업대상이 명확한 풍납토성정비사업과 고도보존육성사업이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어, 이러한 성격의 사업은 총액계상사업에서 분리·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사업과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 및 관리지원사업에서 추진하는 국회문화재 환수 및 이의 근거 제공을 위한 출처조사 실적이 부진하여 매입경로 다변화와 출처조사 수행방법의 개선 등이 요구된다.

셋째,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사업은 사전계획 미흡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고 사업부지 변경 등으로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시급히 대체 부지를 결정하여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된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입장료 수입의 안정적 징수기반 마련 필요

가. 현 황

입장료 수입¹⁾은 공·농 문화재 입장료 징수에 따른 수입으로서 문화재청 일반 회계의 주요 세입원 중 하나이다. 2017년도 예산액은 154억 6,800만원이고 이 중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대비 63.9%인 98억 8,300만원으로 전액 징수되었다.²⁾

[2017회계연도 입장료 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이체 등 증감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입장료 수입	15,468	0	15,468	9,883	9,883	0	0

자료: 문화재청

나. 분석의견

입장료 수입액 규모의 연간 변동이 심하여 공·농유적관리를 위한 재원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안정적인 징수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입장료 수입은 109억 7,600만원으로 전년 164억 3,400만원 대비 33.2% 감소하였다. 이러한 입장료 수입의 감소원인을 살펴보면, 외국인 관람객 특히 중국인 관람객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인데, 2016년 대비 2017년 외국인 관람객은 약 385만명에서 208만명으로 45.8% 감소하였고 특히 중국인 관람객의 경우 사드배치

강상규 예산분석관(skang@assembly.go.kr, 788-4635)

1) 코드명: 일반회계 14-64-641

2) 2016년의 경우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150억 1,700만원 대비 98.4%인 147억 8,400만원이었다.

등의 문제로 인하여 2016년 268만명에서 2017년 54만명으로 79.7% 감소하였다. 이로 인하여 외국인 입장료 수입도 2016년 76억 6,500만원에서 2017년 37억 7,600만원으로 50.7% 감소하였다.

내국인 관람객의 경우 전년대비 관람인원은 6.7% 증가(919만명→982만명)하였지만 공·능 무료개방 확대,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의한 관람료 면제 등으로 관람료 수입은 전년대비 17.9% 감소(88억원→72억원)하였다.

[공·능 관람인원 및 입장료 수입 추이]

(단위: 천명, 백만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관람인원	내국인	8,099	9,552	9,126	9,199	9,819
	외국인	2,216	2,685	2,407	3,846	2,084
	(중국인)	(1,403)	(1,841)	(1,562)	(2,687)	(544)
	합계	10,315	12,237	11,533	13,044	11,902
	증감율 (외국인)	-	18.6 (21.1)	△5.7 (△10.4)	13.1 (59.7)	△8.8 (△45.8)
관람수입	내국인	9,560	10,615	8,712	8,769	7,200
	외국인	4,944	5,746	4,664	7,665	3,776
	합계	14,504	16,361	13,376	16,434	10,976
	증감율 (외국인)	-	12.8 (16.2)	△18.2 (△18.8)	22.8 (64.3)	△33.2 (△50.7)

자료: 문화재청

2013~2017년간 관람인원과 입장료 수입 추이를 보면, 외국인 관람객의 증감에 따라 연간 변동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과 2017년의 경우 외국인 관람객의 경우 전년대비 각각 10.4%와 45.8% 감소하였는데 특히 2015년 메르스와 2017년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 관람객이 전년대비 각각 15.2%와 79.7%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과 2017년 외국인 관람객 입장료 수입도 전년대비 각각 18.8%와 50.7% 감소하였고 전체 입장료 수입도 각각 18.2%와 33.2%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입장료 수입은 공능 문화재 입장료 징수에 따른 수입으로써 징수액의 90%는

일반회계 세입 그리고 10%는 문화재보호기금의 수입이 된다. 특히 일반회계 세입의 일부는 차차년도 궁능유적관리를 위한 수입대체경비의 재원이 된다.³⁾ 이렇게 문화재 입장료가 궁·능관리를 위한 주요 재원이 되고 있으나 그 수입규모가 최근 외국인 관람객, 특히 중국 관람객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보다 안정적인 입장료 징수를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관람객 유치 및 내국인 유치확대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3) 현재 일반회계 입장료 수입의 약 60%가 궁능유적관리를 위한 수입대체경비로 활용되고 있다.

가. 현 황

문화재 보수정비¹⁾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멸실·훼손방지를 위해 문화재 보수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로 보조(보조율: 30~70%)하는 사업으로, 2017년 예산현액은 2,845억원이며 전액 집행되었다

[2017회계연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문화재 보수정비	284,500	284,500	0	0	284,500	284,500	0	0

자료: 문화재청

문화재 보수정비는 연례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써 대상지역이 전국에 분포되어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재정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한 총액계상사업으로 지정·추진되고 있다.²⁾³⁾ 이에 따라 국회는 총액규모만을 심사하고 세부시행계획은 기획재정부와 문화재청의 협의를 거쳐 확정·추진하고 있다.⁴⁾

강상규 예산분석관(skang@assembly.go.kr, 788-4635)

1) 코드명: 일반회계 2134-701

2) 「국가재정법」

제37조(총액계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3)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2조(총액계상사업) 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4) 동 사업의 운용절차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년도 11월까지 대상사업 신청을 받아 당해 연도 1월중 세부내용이 최종 확정되는 관계로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한인 전년도 5월말까지는 세부내용 확정이 어려운 관계로 내역없이 총액으로만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

2017년 동 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1,371건의 정비를 위하여 2,84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건, %)

	계	국가지정문화재						등록 문화재
		국보	보물	사적	민속	천연기념물	명승	
예산 (건수)	284,500 (1,371)	10,642 (55)	56,061 (398)	167,348 (325)	13,046 (151)	22,873 (296)	7,128 (49)	7,401 (97)
비율	100.0	3.7	19.7	58.8	4.6	8.0	2.5	2.6

자료: 문화재청

나. 분석의견

문화재 보수정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어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상사업과 사업범위 설정의 적절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총액계상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업이 포함·추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성격의 사업은 총액계상사업에서 분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 보수정비의 대상사업은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하여 총액으로만 예산을 편성한 사업인데, 2017년 동 사업에서 추진된 서울시 풍납동 토성정비사업과 고도보존육성사업은 이러한 총액계상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풍납동 토성정비사업은 백제초기 왕성인 위례성터인 풍납토성 주변의 체계적인 발굴·보존정비를 위하여 2017년 4월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동 사업에서 420억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주민토지보상액 5,137억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7~2025년간 매년 420억원 규모로 국고를 통해 지원하기로 한 서울시와의 협의에 따른 것이다. 이런 실정을 고려할 때, 총액계상사업의 지정요건인 사전에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회의 심의 후 기획재정부와 세부시행계획 협의를 거쳐 세부사업을 확정·추진하고 있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세부사업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당해연도 세부사업시행계획 및 전년도 세부사업 집행실적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내 풍납동 토성 관련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예산액
서울	송파구	사적 11	서울 풍납동 토성	토지매입, 토성보수 및 주변환경개선, 보상주택 철거정비활용 (총사업비 3,780억원, 사업기간: 2017~2025)	42,000

자료: 문화재청

또한 경주시,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의 고도보존육성사업에 381억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러한 고도보존육성사업은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및 백제왕도핵심유적정비계획에 바탕을 두고 사업내용 및 사업대상이 이미 확정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사전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총액계상사업의 지정요건인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2017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내 고도보존육성 사업 내역]

(단위: 건, 백만원)

	전체	고도보존육성사업				
		경주	공주	부여	익산	계
사업건수	1,371	12	4	8	3	27
사업비	284,500	33,515	1,516	2,034	1,036	38,101

자료: 문화재청

따라서 풍납동 토성 정비사업이나 고도보존육성사업과 같이 사업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예측가능하고 사업대상이 명확한 사업은 총액계상사업에서 분리하여 일반예산사업으로 편성함으로써 이들 사업 예산규모의 적절성과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국회 심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특히, 고도보존육성사업은 이미 타 세부사업인 고도보존 및 육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동 사업으로 이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⁵⁾

5) 고도보존 및 육성사업은 과거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였던 고도(古都)의지역인 경주, 부여, 익산, 공주지역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 정비하는 것으로 2017년 예산액은 84억 9,900만원이다.

둘째,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 대상과 범위를 보다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예산신청대상사업 목록과 2017년에 실제 추진된 1,371개 세부사업을 보면, 문화재의 보수정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미흡한 다수 사업들이 포함되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해당 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복원사업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필요에 의한 조사, 탐방로와 화장실 등 관람편의시설 설치, 산양문화보존연구센터 건립 등 문화재 보수정비와 연관성이 다소 부족한 사업이 추진되었다.

[2017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내 문화재 보수정비와 연관성이 미흡한 사업 내역(사례)]
(단위: 백만원)

문화재명	사업내용	예산액
부산 금정산성	탐방로정비	693
부천 만화코주부삼국지	영어 영인본 제작 및 배포	23
강릉 임영관 삼문	화장실 신축	140
양구군 산양	산양문화보존연구센터 건립	350
홍천 쾌석리 사사자 삼층석탑	보존처리 및 훼손발생원인 연구	21
단양 적성	관람편의시설 설치	35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

「국가재정법」 제21조⁶⁾에 따라 장(분야)-관(부문)-항(프로그램)-세항(단위사업)-세세항(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 세부사업내용을 경비의 성질에 맞게 해당 비목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하여, 총액계상사업은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총액으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회에서 총

- 6)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①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④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액으로만 심의를 받기 때문에 사업대상과 범위를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업으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사업대상과 범위를 보다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¹⁾은 국외로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재의 환수와 적법·정당하게 반출된 문화재의 우수성 등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2017년 예산현액은 53억 2,800만원이며 이 중 52억 9,200만원이 집행되었다.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 및 관리지원²⁾은 멸실·훼손될 우려가 있는 국외 소재 중요 문화재를 긴급 매입하여 복원절차를 거쳐 지속적인 보호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예산현액은 20억원이며 전액 집행되었다.

[2017회계연도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 국내외 문화재 긴급 매입
및 관리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	5,328	5,328	0	±7	5,328	5,292	0	36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 및 관리지원	2,000	2,000	0	0	2,000	2,000	0	0

자료: 문화재청

나. 분석의견

국외문화재 환수실적 및 국외문화재의 반환을 위한 출처조사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

2013~2017년간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의 환수실적을 보면 경매를 통한 구입 5건, 기증 3건 등 총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문화재청 예산으로 구입

강상규 예산분석관(skang@assembly.go.kr, 788-4635)

1) 코드명: 일반회계 3331-306

2) 코드명: 문화재보호기금 2332-302

한 것은 2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국외문화재 긴급매입을 위한 예산 20억원 중 4억 3,400만원만이 집행되었다.

[2013~2017년간 국외소문화재단 국외문화재 환수실적]

구분	문화재명	환수 방식	금 액	현 소장처
2013	석가삼존도	기증		국립중앙박물관
2014	곽분양행락도	구입 (경매)	71백만원 (문화재청 예산)	국립고궁박물관
2015	팔금강도	구입 (경매)	비공개 (직지사 예산부담)	직지정보박물관
	범어사 칠성도	구입 (경매)	CHF(스위스 프랑) 78,500 범어사 예산 부담	범어사
2016	석천암 지장시왕도	구입 (경매)	비공개 (조계종 예산 부담)	불교중앙박물관
2017	분청사기상감 이선제 묘지	기증		국립광주박물관
	옥천사 나한상	기증		불교중앙박물관 (옥천사)
	강노초상	구입 (경매)	434백만원 (문화재청 예산)	국립중앙박물관

자료: 문화재청

이러한 국외문화재 환수실적과 관련하여 2015~2017년간 국외소재문화재단이 수행한 부당유출이 의심되는 문화재의 반출경로를 밝히기 위한 문헌 등 근거자료를 조사하는 출처조사 실적을 보면 2건의 자체조사와 7건의 연구용역 등 9건에 불과하고, 이러한 9건의 조사에 기반한 환수실적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

3) 2017년 기증받은 ‘분청사기상감 이선제묘지’와 ‘옥천서 나한상’의 경우, 출처조사 연구용역이 아니라 국외문화재 유통조사과정에서 출처를 확인한 후 소장자와의 협의를 거쳐 환수한 것이다.

[2015~2017년간 출처조사 실시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실시 방식	수행기관	과제명	집행 금액	연구내용
2015	연구 용역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 박물관 공문서를 통한 국외문화재 출처조사	47	-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중 ‘고적조사’ 분야 27,054 매에 대한 해제작업 완료 - 문화재 반출 및 피해관련 자료 확보
2015	연구 용역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일제강점기 대구 지역 일본인 문 화재 수집가들의 소장품 출처와 소재 확인 연구	30	- 이치다 지로 수집품 1,056 점, 시라가 주키치 수집품 119점, 스기하라 초타로 수 집품 136점 대상출처조사
2015	직접 수행	재단	야마구치현립 야마구치도서관 소장구 테라우치 문고 조사	70	- 야마구치현립 야마구치도 서관 소장 도서 32종 78 책 기초자료 확보
2016	연구 용역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 박물관 ‘보존’ 공문서를 통한 국외문화재 출처 기초 조사 ※ 4개년 중 3차년도	40	-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중 ‘보존’ 분야 21,558매에 대한 해제작업 완료로 향 후 유출문화재 환수를 위 한 기초자료 구축 - 문화재 반출 및 피해관련 자료 확보
2016	연구 용역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일본 야스쿠니신사 유슈칸 소장 한국 군사문화재 조사 연구	8	- 유슈칸 열품목록(10점) 및 아리마 세이요의 조선역 수군사 및 화포의 기원과 원류에 소개된 유슈칸 소장 조선화포(12점)에 대 한 출처조사
2016	연구 용역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콜랭 드 플랑시 컬렉션 기초 조사: 프랑스 트루아시 립메디아테크 자 료를 중심으로	20	- 미분류 동양 전적 11종 41책 포함 총 542점 실물 서지 조사 및 이미지파일 1,020개 확보

(단위: 백만원)

연도	실시 방식	수행기관	과제명	집행 금액	연구내용
2016	직접 수행	재단	일본소재 한국문 화재 출처정보 기 초자료 조사 등	1	- 야마나카상회 한국문화재 판매도록 수록 사진 118매 확보 및 도요문고 화상자료 327건 검토
2017	연구 용역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일 문화재 연구 포럼 운영 기획 연구	20	- 한일 학술연구교류 프로 그램의 선행연구로서 추 후 진행될 ‘한일 문화재 연구 포럼’의 기획과 이전 한일 역사학자 교류회의 사례분석
2017	연구 용역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국외소재 한국 불교문화재 명문 조사를 통한 출처정보 분석	49	- 국외 소재 불교문화재를 대상으로 명문 정보 조사 · 분석

자료: 문화재청

이러한 실정을 고려할 때, 국외문화재의 환수 방법을 해외 경매 이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매입경로를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특히, 출처조사는 연구용역에 의한 기초조사에 한정하지 말고 실제 불법으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하여 해당 문화재의 보유국에 반환을 요청하는 등 국외문화재의 환수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수행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가. 현 황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¹⁾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의 위례 불교문화재 연구시설(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비용을 지원(국고 70%)하는 사업으로 2017년 예산현액은 54억 8,000만원이며 전액 집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동 사업은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의 진단·보존·복원·연구를 위한 소장자 중심의 전문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6~2019년간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의 10,000m² 규모의 부지에 연면적 13,172m² 연구시설을 설립하는 내용이다.

[2017회계연도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	5,480	5,480	0	0	5,480	5,480	0	0

자료: 문화재청

나. 분석의견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된다.

첫째, 연도 중 사업내용 보완 등의 이유로 설계가 지연되어 시공사 선정과 각종 인·허가 절차 추진이 중단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과정을 보면, 2016년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2017년 실시설계가 착수·추진되었다. 그러나 2017년 11월 대한

강상규 예산분석관(skang@assembly.go.kr, 788-4635)

1) 코드명: 일반회계 3331-304

불교조계종의 사업보완과 설계변경 요구가 제기되어 설계를 포함하여 후속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17년 동 사업 예산 54억 8,000만원 중 설계용역 착수금과 중도금, 기공식 착수금과 완료금 6억 2,000만원만이 집행(실집행률 11.3%)되고 48억 6,000만 원은 이월되었다.

[2017년 불교문화재건립사업 실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예산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율 (B/A)
5,480	5,480	0	5,480	620	4,860	0	11.3

자료: 문화재청

둘째, 사업부지 선정에 있어서 사전계획이 미흡하여 사업부지의 선정이 변경되고 이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는 현재 위례신도시 택지조성이 진행 중으로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이 정비되는 2019년 7월 말 이후에나 사용 가능하다. 특히, 동 사업부지는 종교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위례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 계획 세부지침(2015. 11)’에 따르면 연면적의 50% 이상을 종교시설로 건립하여야 건축 인·허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불교문화재 연구시설은 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불교문화재 연구시설에 대해 건축 인·허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업부지의 변경이 검토되고 있어 사업의 지연과 더불어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위례신도시 조성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되었고 대상지역 및 용도도 이미 정해져 있던 점을 고려할 때,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의 적절성 등은 사전에 확인이 가능했던 사항으로 신규 사업의 추진에 있어 철저한 사전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라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규 사업의 추진에 있어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포함한 면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시급히 대체 부지를 검토·결정하여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된다.

가. 현 황

문화유산 조사연구¹⁾는 문화유산의 조사·기초 연구를 통해 학술적·역사적 실체를 규명하고 관련 기술·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계획현액은 202억 1,900만원이며 이 중 196억 9,300만원이 집행되었다.

동 사업 예산액 중 시험연구비는 국가시험연구기관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일용임금, 재료비, 연구용역비 등 10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 계획현액은 97억 4,200만원이며 이 중 96억 400만원이 집행되었다.

[2017회계연도 문화유산 조사연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문화유산 조사연구	19,056	19,056	1,163	20,219	19,693	0	526
시험연구비	9,748	9,742	0	9,742	9,604	0	138

자료: 문화재청

나. 분석의견

문화유산 조사연구를 위한 인력운영 시 예산집행기준을 위배하여 부적절한 인력 운영이 반복되지 않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10개의 비목에 대해 비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시험연구비 단일 비목으로 편성 및 집행 가능한 경비로서, 비목 간 전용 절차를 생략하여 시험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융통성 있게 집행함으로써 시험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고 있다.

강상규 예산분석관(skang@assembly.go.kr, 788-4635)

1) 코드명: 문화재보호기금 1236-302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시험연구비 :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 정비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다음의 경비	
1. 일용임금(110-04), 2. 일반수용비(210-01), 3. 공공요금및제세(210-02), 4. 피복비(210-03), 5. 임차료(210-07), 6. 유류비(210-08), 7. 시설장비유지비(210-09), 8. 재료비(210-11), 9. 여비(220) 10. 연구용역비(260)	

그런데 문화유산 조사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2017년 시험연구비 집행내역을 보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22명에 대한 인건비 1억 600백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시험연구비를 통한 기간제 근로자 운영 현황]

(단위: 백만원)

	시험연구비	인건비		
		일용직	기간제	계
문화유산 조사연구	9,748	1,610	106	1,716

자료: 문화재청

시험연구비(210-13목)의 통합대상 비목에는 일용임금(110-04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용임금은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이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는 상용임금(110-03목)으로 편성 및 집행하도록 명시하여 구분되어 있으므로, 시험연구비를 통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유산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자체 시험연구수행을 위해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²⁾, 시험연구비를 통해 별도의 보조연구인력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인력의 규모가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2) 현원 190명 중 석박사인력은 106명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5~2017년간 시험연구비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상용임금(110-03목)으로 집행해야 할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3억 2,400만원, 출토 유물보관센터 건립사업 등 해당 건설사업의 건설비(410목)로 집행하여야 할 건설비용 6,600만원,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홍보책자 제작비 및 교육 참석비용 2억 8,600만원을 시험연구비로 부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지적되었다.³⁾

시험연구비를 통한 기간제 근로자 운영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조직·예산상 인건비 운용에 있어서 국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시험연구비를 통한 기간제근로자 운영 등을 포함한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연례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국회의 예산심의결 결과 및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시험연구비 예산을 집행하도록 주의가 요청된다.

3) 국립문화재연구소 감사원 감사(2018. 3. 7. ~ 2018. 3. 21.) 현지조치사항.

가. 현 황

2017년 말 기준 문화재청의 미수채권은 166억 7,9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¹⁾ 이는 2013년 말 153억 8,000만원에 대비하여 12억 9,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문화재청은 미수채권 중 미래에 발생할 손실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데 2017년 말 기준 그 규모는 28억 8,200만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17년 말 기준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17.3%로 하고 있어 미수채권 중 향후 회수불가능 위험이 있는 채권이 전체 미수채권의 17.3%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연도별 문화재청 미수채권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미수채권	15,380	19,058	18,179	15,081	16,679
대손충당금	535	353	592	1,806	2,882
미수채권 잔액	14,845	18,705	17,587	13,275	13,797
대손충당금 설정률	3.5	1.9	3.3	12.0	17.3

자료: 문화재청

나. 분석의견

적정 대손충당금 설정을 통하여 채권가액이 과다하게 재무재표에 계상되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그 자산 가치를 상실하여 국가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강상규 예산분석관(skang@assembly.go.kr, 788-4635)

1) 미수채권은 미수국세, 미수부담금수익, 미수제재금수익,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미수사회보험수익, 미수연금수익, 미수보험수익, 미수보증수익, 미수이자수익, 미수기타수익, 기타의미수금 등으로 구성된다.

를 왜곡하여 표시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²⁾에서는 미수채권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회계편람에서는 기말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추산액의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연령분석법,³⁾ 채권잔액비례법⁴⁾, 대손실적률법⁵⁾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연령분석법에 바탕을 두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채권에 대해서는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미수채권에 대해서는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다. 즉, 발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미수채권 27억 5,2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⁶⁾하고 있으며, 2~5년인 미수채권 16억 2,800만원에 대해서는 약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⁷⁾하고 있다.

2)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미수채권 등의 평가) 미수채권, 장기대여금 또는 단기대여금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한다.

3) 연령분석법은 기말 채권잔액을 경과일수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별로 상이한 대손율을 적용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산하는 방법인데, 이는 오래된 채권일수록 회수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채권의 기간경과일수의 장단기에 따라 대손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이다.

4) 채권잔액비례법은 기말 채권잔액 전체에 대해 일정비율을 회수불능채권예상액으로 추정하고 이를 기말 대손충당금잔액으로 하는 방법이나 채권의 연령과는 관계없이 동일한 대손율을 적용한다.

5) 대손실적률법은 채권에 대한 과거 대손율을 산정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산하는 방법이다.

6) 2017년 대손충당금이 총 28억 8,200만원으로 이는 5년 이상 경과된 미수채권 27억 5,200만원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포함한다.

7) 2017년 총 대손충당금 28억 8,200만원에서 5년 이상 경과된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제외한 잔여 대손충당금은 1억 3,000만원으로 이는 2~5년 미수채권 16억 2,800만원의 0.8%에 해당한다.

[2017년 말 기준 문화재청 미수채권 연령분석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1년 미만	1년~2년	2년~3년	3년~5년	5년 초과	합계
미수제재금수익	202	184	177	242	2,405	3,211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76	1	0	4	64	145
미수이자수익	0	0	0	1	11	12
미수기타수익	10,322	1,506	554	650	185	13,217
기타의미수금	7	0	0	0	87	93
미수채권 합계	10,607	1,691	730	898	2,752	16,679

자료: 문화재청

대손충당금은 채권의 소멸시효와는 관계없이 매출채권 중 기말시점까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정이다. 이는 재무상태표 상의 미수채권의 실질평가액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수채권에 대하여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게 되면, 미수채권가액이 실질평가액보다 높게 되어, 실질자산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미수제재금수익 등을 구성하는 각종 가산금과 변상금 등의 대손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년 이내의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조정하는 등 대손충당금을 적정하게 설정함으로써 해당 채권가액이 과다하게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7-1. 수탁시설 공연사업에서 시설관리 또는 보수 성격의 사업을 집행한 문제

가. 현 황

한국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문화재청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국유재산인 한국의집, 한국문화의집,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3개 시설을 문화재청으로부터 수탁(관리위탁¹⁾)받아 관리하고 있다.

[국유재산 위탁시설 현황]

구분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한국문화의집	한국의집
개관일	'97.11.29(신축)	'03.4.1	'81.2.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 (삼성동112-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2길 12-9 (대치동 944-22)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길 10 (필동2가 80-2)
주요기능	무형문화재 활동지원 및 공연·전시	문화유산교육 상설공연 등	전통음식, 전통공연, 전통문화체험, 전통혼례, 문화상품 보급
관리위탁 계약기간	(최초계약'97.10.30) 2017.1.1~2019.12.31	(최초계약'03.6.14) 2017.1.1~2019.12.31	(최초계약 1980.12.10) 2017.1.1~2019.12.31
관리위탁 면적	토지 2,485.5㎡ 건물 13,478.75㎡ (지하4층, 지상9층)	토지 1,357.8㎡ 건물 1,981.71㎡ (지하1층, 지상4층)	토지 7,156.3㎡ 건물 7,662.95㎡ (한옥 5동, 취선관)
사용허가	토지 2,485.5㎡	토지 1,357.80㎡	토지 6,084.90㎡

윤희호 예산분석관(yoonhh@assembly.go.kr, 788-4683)

1) 「국유재산법」

제29조(관리위탁)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③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 기간, 관리위탁을 받은 재산의 사용료,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분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한국문화의집	한국의집
면적	건물 1,800.42㎡	건물 1,620.12㎡	건물 4,790.59㎡
사용료	무상	기부채납 완료까지 무상	무상
주요시설	· 공연장 (149석) · 전시장 (2실) · 무형문화재입주 (공예12, 예능 8) · 기능보존협회사무실(1)등	· 공연장(236석) · 교육실(6개)	· 공연장(127석)

자료: 한국문화재단

재단은 한국의집, 한국문화의집, 전수교육관의 3개 시설(이하 “수탁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함에 따라 한국문화재단 지원 사업²⁾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2017년 결산 기준으로 재단은 문화재청으로부터 78억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전액 집행하였는데, 내역사업별로 수탁시설과 사업 성질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개 수탁시설에 대한 공연전시, 관리운영, 시설보수 등 사업 성질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 예산이 각각 편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탁시설에 대한 공연·관리·시설보수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대상 수탁시설	사업 성질	예산현액	집행액
한국문화재단 지원	-		7,820	7,820
전수교육관 공연전시사업	전수교육관	공연·전시사업	500	500
한국문화의집 공연사업	한국문화의집	공연사업	600	600
명인명창 상설공연	한국의집	공연사업	100	100
전수교육관 관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사업	1,406	1,406
한국문화의집 관리	한국문화의집	관리운영사업	700	700
국유재산 시설보수	한국의집, 한국문화의집 전수교육관	시설보수사업	1,308	1,308

자료: 문화재청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 코드명: 일반회계 3431-306

나. 분석의견

한국문화재단은 전수교육관 공연전시사업과 한국문화의집 공연사업에서 관리운영 또는 시설보수 사업 성격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는 공연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문화재단 지원 사업은 내역사업별로 공연사업, 관리운영사업 및 시설보수사업으로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며 이는 내역사업의 명칭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으므로 각 내역사업에 목적에 맞게 지출원인행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단이 공연사업에서 시설 관리운영 또는 보수 성격의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일부 나타났는데, 이는 내역사업을 구분한 취지와 사업 목적에 반하는 집행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문화의집 공연사업에서 난방기 교체를 위한 예산 352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한국문화의집 관리 또는 국유재산 시설보수 내역사업에서 집행하는 것이 사업목적에 보다 부합한다.

[공연사업에서 시설 관리운영 또는 보수 성격의 예산을 집행한 예시]

(단위: 천원)

내역사업명	사용목적	집행액
한국문화의집 공연사업	티켓발권 대기공간 등 난방기 교체구입	3,520
	음향실 모니터스피커 거치대 제작구입	462
	극장알림방송 음향시스템 설치 및 마이크 보관함 구입	9,270
	공연장 영상장비(DLP 프로젝트)구입	11,440
	공연장 A형 사다리 구입	528
	공연장 전용 무빙라이트 모터 점검 및 수리교체비	1,452
	공연용 조명기기 수리 및 램프구입	2,419
	공연장 음향장비(앰프) 교체	4,224
	공연장 음향장비(인이어 및 마이크) 교체	6,820
	공연장 무선인터컴 구입	4,598

자료: 한국문화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하여 재단은 한국문화의집 관리 사업 예산으로 승강기 정기점검, 보안 업체 용역료, 전기시설유지보수 등을 위해 집행되었고, 국유재산 시설보수 사업 예

산은 건설비(420) 비목으로써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등 예산 위주로 편성·집행되었다는 의견이다. 특히, 해당 국유재산 시설의 정부위탁사업비 및 부대수입 등 수입 합계를 초과하여 자체재원이 추가부담 지출되는 여건상 공연장비 구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사업예산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연사업 성격의 예산에서 관리운영 또는 시설보수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재단은 위 지출의 성격이 공연프로그램 제작보다는 시설보수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역사업 구분에 맞게 관리운영사업 또는 시설보수사업에 편성·집행하는 등 주의할 필요가 있다.

7-2. 수탁시설의 수입지출을 수지차 예산에 포함한 것의 부적정성 개선 필요

가. 현 황

한국문화재단 지원 사업³⁾은 전수교육관 공연전시, 한국문화의집 공연, 전통 공연 콘텐츠 개발, 전통예술 공연 홍보, 유네스코 무형유산 자문기구 활동, 국유재산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청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예산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17년 결산 기준으로 재단은 문화재청으로부터 78억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전액 집행하였다.

[2017회계연도 한국문화재단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문화재 재단 지원	7,820	7,820	0	0	7,820	7,820	0	0

자료: 문화재청

3) 코드명: 일반회계 3431-306

해당 사업의 예산액은 재단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문화상품실 운영, 기부금, 예술단 운영 등 수입)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는 수지차 보전 방식에 따라 책정된다. 문화재청은 2017년도에 발생할 재단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등 예상되는 지출 339억 4,500만원에서 한국의집 운영, 문화상품실 운영 등에서 발생하는 자체수입분 261억 2,500만원을 제외한 수지차 금액으로 7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다.

[2017년도 한국문화재단 지원 사업의 예결산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결산
수 입	(A) 수입 소계	26,125	20,153
	한국의집 운영	8,518	6,307
	재단 예술단 운영	1,775	1,785
	문화상품실 운영	9,772	8,339
	전수교육관 운영	30	37
	조사연구단 운영	2,250	380
	한국문화의집 관리운영	814	706
	기부금(지정 기부 등)	200	171
	기타(위탁수수료 등)	2,676	2,428
	전년결산잉여금	90	0
지 출	(B) 지출 소계	33,945	27,973
	인건비	8,002	7,559
	경상경비	2,144	1,300
	사업비	23,798	18,534
	(결산잉여금)	-	581
수지차	(B - A)	7,820	7,820
	한국문화재단 지원 사업	7,820	7,820

주: 한국문화재단이 문화재청 등 정부부처로부터 용역사업 등을 수탁받아 집행하는 사업 예산의 경우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집행 잔액은 반납 처리하므로 수지차가 발생할 수 없어 미포함
 자료: 한국문화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함

나. 분석의견

문화재청이 한국의집, 한국문화의집, 전수교육관의 3개 시설(이하 “수탁시설”이라 한다)을 재단에 위탁(관리위탁⁴⁾)하였는데, 재단이 국유재산을 수탁받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을 수지차 예산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방식은 다음의 문제가 있다.

첫째, 문화재청이 수탁시설 관리위탁에 따라 재단에 지급하는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를 수지차 예산에 포함하는 것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등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수지차 보전 금액으로 산정된 예산 78억 2,000만원을 비목별로 보면, 재단이 수탁시설의 관리위탁에 따라 교부받는 내역사업 8개의 예산 49억 1,400만원은 민간위탁사업비(320-02)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민간위탁사업비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 개별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 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으로서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민간경상보조(320-01)와는 차이가 있다.

[한국문화재단 지원 사업의 결산 비목별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목- 세목코드명	목명 (예산현액 계)	예산현액	집행액
한국문화재단 지원			7,820	7,820
재단 경상운영비	320-01	민간경상보조	2,558	2,558
정보화사업		(2,906)	348	348

4) 「국유재산법」

제29조(관리위탁)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③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 기간, 관리위탁을 받은 재산의 사용료,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위: 백만원)

사업명	목- 세목코드명	목명 (예산현액 계)	예산현액	집행액
유네스코 무형유산 자문기구	320-02	민간위탁사업비 (4,914)	100	100
전수교육관 공연전시사업			500	500
한국문화의집 공연사업			600	600
명인명창 상설공연			100	100
전통예술공연 홍보			200	200
전수교육관 관리			1,406	1,406
한국문화의집 관리			700	700
국유재산 시설보수			1,308	1,308

자료: 문화재청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서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 받는 기관이란 예산절감을 위해 기관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서 “민간위탁사업비” 비목은 수지차 보전으로 지원되는 비목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특히,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위탁기관은 위탁사업을 자체 고유사업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수지차 예산에 포함할 경우 구분 계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⁵⁾

둘째, 재단이 국유재산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체 재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법」 등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문화재청장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는 예상수입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문화재청장은 1년 단위로 재단에 지급할 지출과 받을 수입의 차액을 재단에 지급 또는 납입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탁자(재단)에게 지급할 지출(보조금, 위탁사업비)과 수탁에 따른 수입 중 어느 하나가 초과되지 않고 수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⁶⁾

5)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9.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

다. 구분계리 및 잔액 국고 환수

○ 수탁기관은 수탁사업을 자체 고유사업과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집, 한국문화의집, 전수교육관의 3개 시설을 재단이 수탁 받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설운영에 따른 지출이 수입금(공연·관람수입, 대관수입 등) 및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과 위탁사업비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재단은 자체 재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상운영비 지출 부분을 제외하고⁷⁾ 사업비 항목에서 재단이 추가 부담한 비용은 한국의집 7억 3,978만원, 전수교육관 3억 2,161만원, 한국문화의집 8,307만원 등 총 11억 4,446만원으로 나타났다.

재단의 추가 부담 비용이 수탁시설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실적 부진 또는 재단의 방만 경영으로 인한 책임이 아닌, 수탁시설 운영에 필요한 위탁비가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면, 재단의 추가 부담분(11억 4,446만원) 만큼을 문화재청이 적게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유재산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문화재단의 수탁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세부 현황]

(단위: 천원)

수탁시설 위탁사업명	수 입			지 출			
	보조금, 위탁사업비	수입금	계	보조금, 위탁사업비	수입금	재단 부담	계
한국의집 관리위탁	0	8,091,936	8,091,936	0	8,091,936	739,779	8,831,715
전수교육관 관리위탁	1,406,000	37,058	1,443,058	1,406,000	37,058	321,613	1,764,671
한국문화의집 관리위탁	700,000	75,435	775,435	700,000	75,435	83,069	858,504
합계	2,106,000	8,204,429	10,310,429	2,106,000	8,204,429	1,144,461	11,454,890

자료: 한국문화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6)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 등) ① 법 29조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자에게서 받는 사용료는 제29조 및 제67조의8의 사용료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1년을 단위로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할 총지출이 관리수탁자로부터 받은 총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총수입이 총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고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출 및 수입의 범위는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한다.

7) 재단 인건비 등 경상운영비는 국고보조금(320-01)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어 수지차 산정 대상 비목이며, 재단 직원은 수탁시설 관리운영 외에 상품개발 등 자체사업도 수행하고 있어 명확한 구분이 어려우므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특히, 재단은 수탁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자부담 비용(11억 4,446만원)을 고궁 문화상품 수입이나 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 수입 등 다른 사업으로부터 충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실적 개선으로 재단의 상품수입(자체수입)이 증가하면 수지차 보전 방식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오히려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문화재단의 전체 수입·지출 세부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수입			지출				수지차 (A-B)
		보조금, 위탁 사업비	수입금	계(A)	보조금, 위탁 사업비	수입금	재단 부담	계(B)	
국 고 보 조 금	경상운영비	2,558	0	2,558	2,558	0	564	3,122	△564
	정보화사업	348	0	348	348	0	0	348	0
	전수교육관 공연전시	500	6	506	500	6	0	506	0
	한국문화의집 공연	600	74	674	600	74	0	674	0
	한국의 명인명창	100	0	100	100	0	0	100	0
	전통예술공연 홍보	200	0	200	200	0	0	200	0
	유네스코 무형유산 자문기구 활동	100	0	100	100	0	0	100	0
	한국문화의집 관리위탁	0	8,092	8,092	0	8,092	740	8,832	△740
	전수교육관 관리위탁	1,406	37	1,443	1,406	37	322	1,765	△322
	한국문화의집 관리위탁	700	75	775	700	75	83	859	△83
	국유재산 시설보수	1,308	0	1,308	1,308	0	0	1,308	0
	합계(A)	7,820	8,284	16,104	7,820	8,284	1,708	17,812	△1,708
	3개 수탁시설 계	2,106	8,204	10,310	2,106	8,204	1,144	11,455	△1,144
자 체	문화상품실 운영	0	8,339	8,339	0	7,863	0	7,863	476
	조사연구단 운영	0	380	380	0	300	0	300	80
	한국전통공연건축학교 운영	0	631	631	0	466	0	466	164
	기부금	0	171	171	0	140	0	140	31
	기타(위탁수수료 등)	1,992	356	2,348	583	227	0	810	1,538
	합계(B)	1,992	9,877	11,869	583	8,997	0	9,580	2,289
계	A+B	9,812	18,161	27,973	8,403	17,281	1,708	27,392	581

주: 한국문화재단이 문화재청 등 정부부처로부터 용역사업 등을 수탁받아 집행하는 사업 예산의 경우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집행 잔액은 반납 처리하므로 수지차가 발생할 수 없어 미포함
자료: 한국문화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재단에 지급하는 수지차 예산에 수탁시설의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지출을 포함하는 것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른 수지차 규정에 반하거나 「국유재산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집 필

총괄 | 이승재 예산분석실장

심의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정승환 예산분석총괄과장
박혜진 산업예산분석과장
이동훈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정연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수옥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박홍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김려진 예산분석관
강상규 예산분석관
윤희호 예산분석관
이동엽 예산분석관
이은경 예산분석관

지원 | 이가현 행정실무원
박미현 행정실무원

결산분석시리즈 II

2017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18년 8월
발행인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편집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경일칼라콤(주)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084-7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8